

【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

예 산 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민자사업한도액안

검 토 보 고 서

【 예 산 안 】

일 반 회 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기 금 운 용 계 획 안 】

고 용 보 험 기 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 금 채 권 보 장 기 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 문 위 원

【 목 차 】

I .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개요 .. 1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1
가. 총괄 현황	1
나. 세입예산안	5
다. 세출예산안	6
라. 기금운용계획안	8
마. 2025년도 신규사업 및 종료사업	10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1
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11
나. 일반회계	11
(1) 세입예산안	11
(2) 세출예산안	12
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3
(1) 세출예산안	13
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4
(1) 세입예산안	14
(2) 세출예산안	15

3. 기금운용계획안	17
가. 고용보험기금	17
(1) 수입계획안	17
(2) 지출계획안	18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9
(1) 수입계획안	19
(2) 지출계획안	20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21
(1) 수입계획안	21
(2) 지출계획안	22
라. 임금채권보장기금	23
(1) 수입계획안	23
(2) 지출계획안	24
마. 근로복지진흥기금	25
(1) 수입계획안	25
(2) 지출계획안	26
4.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7

II. 검토의견 28

[기획조정실] 28

(1)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ODA)(일반회계, 3050-302) 28

 <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구축지원 사업의 사업수행 체계 수정 필요 > ... 30

(2)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일반회계, 3051-308) 36

 < 일반수용비의 적정액 편성 필요 > 37

[고용정책실] 44

(1) 고용보험기금 총괄 44

 <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지출액 급증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필요 > ... 47

(2) 고용영향평가(일반회계, 1045-301) 52

 < 산업전환 고용안정 영향평가와 고용상태 영향조사의 통합 필요 > ... 53

(3)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일반회계, 1234-300) 59

 < 청년도전지원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청년층의 참여 확대 노력 필요 > ... 63

(4) 자영업자 실업급여(고용보험기금, 1292-350) 67

 < 사업 안내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자영업자 가입 독려 필요 > ... 67

(5) 지역고용정책협의회 운영지원(고용보험기금, 7076-234) 71

 < 일반회계 기본경비를 통한 집행 필요 > 72

[청년고용정책관 · 통합고용정책국] 78

(1)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일반회계, 1032-303) 78

 <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미취업 졸업생 적극적 발굴 및 사업대상에
 지역청년 포함 필요 > 81

(2)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일반회계, 1051-305) 86

 <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지원단가 등 조정 필요 > 87

 <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및 육성패키지: 지원 확대에 따른
 관리방안 마련 필요 > 90

(3) 공정채용문화확산(일반회계, 1051-307) 95

 < 중소기업 채용관리솔루션 활용지원 사업 사업 성격에 맞는 비목 편성 필요 > 96

(4) 청년미래플러스(일반회계, 1051-308) 102

 < 통폐합된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 있는 운영 필요 > 104

(5)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일반회계, 1331-300) 109

 < 국가 사무 위탁의 경우 민간위탁사업비목 계상 필요 > 112

(6) 중장년인턴제(일반회계, 1336-305) 115

 < 성과관리체계 마련 필요 > 117

[직업능력정책국] 121

(1) 내일배움카드(일반)(일반회계, 1131-300) 121

 <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의 중도탈락률 감소 및 고용유지율 제고 노력 필요 > .. 122

(2)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135-308) 127

 < 차별성 있는 외국인근로자 한국어훈련 사업 추진 필요 > ... 128

< 뿌리산업특화 교육센터 구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철저한 준비 필요 > …	131
(3)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고용보험기금, 1152-350) ……	135
<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혁신형 기업훈련’ 사업 계획안 편성 > ……	136
(4)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고용보험기금, 1155-350) ……	140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사업장훈련 사업의 철저한 준비 필요 > …	141
[노동 정책실] ……	144
(1) 상생협력 확산지원(일반회계, 2031-301) ……	144
< 사업수요 제고 및 걱정 컨설팅 단가 설정 필요 > ……	145
(2) 노동약자지원(일반회계, 2031-303) ……	149
< 분쟁조정협의회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성공수당의 합리적 집행기준 마련 필요 > …	150
<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사업으로의 통합 추진 필요 > …	161
(3) 근로조건개선지원(일반회계, 3031-302) ……	167
< 권리구제지원팀 노동권익지원관 역량 확보 방안 마련 > ……	168
(4) 대지급금 지급(임금채권보장기금, 3051-300) ……	175
< 대지급금 지급 여력 확보 필요 > ……	175
(5) 생활안정자금(용자)(근로복지진흥기금, 3062-306) ……	181
< 용자제도 개편에 따른 취약계층 불이익 최소화 필요 > ……	181
[산업안전보건본부] ……	185
(1) 산재병원 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051-350) ……	185
< 울산병원 신축 관련 정보화 사업 지연 방지 필요 > ……	186

(2) 연구기관 및 케어센터 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052-356) …	189
< 역학조사 전문 인력 확충 필요 > …	190
< 태백케어센터 입소율 제고 필요 > …	196
(3)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일반회계, 4135-300) …	201
< 수사지원 차량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 필요 > …	202
(4)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1-350) …	207
< 스마트안전장비 보급 확산사업: 적합성평가등 정부 인증제도에 대한 전수 조사 필요 > …	208
< 건강일터조성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사업 수요 증가 대 비와 사전 수요조사·예측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사업 준비 필요 > …	222
(5) 업종별 재해예방(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2-350) …	230
< 기존사업과 유사사업 간 중복 편성된 신규사업의 추진 여부 검토 등 > …	232
(6) 안전보건문화정착(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4-350) …	240
< 외국인 근로자 서포터즈 사업 추진체계 수정 필요 > …	241

[노동위원회] … 248

(1) 노동위원회인건비(일반회계, 7002-104) …	248
< 심판사건 조사관 증원 필요 > …	248
(2) 노동위원회 전문성강화(일반회계, 7039-309) …	252
< ADR 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교육생 자부담 확대 필요 > …	253

Ⅰ.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압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개요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가. 총괄 현황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3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으로는 고용보험기금(고보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산재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장애인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임채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근복기금)이 있음.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지출¹⁾은 35조 3,661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836억원(5.0%) 증가하였음.

예산지출은 5조 7,639억원으로 전년 대비 512억원($\Delta 0.9\%$) 감소하였고, 기금지출은 29조 6,02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7,348억원(6.2%) 증가하였음. 세부적으로 예산지출은 전년 대비 일반회계에서 253억원(0.5%)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에서 765억($\Delta 11.2\%$)이 감소하였음.

1) 기금전출금 및 기금여유자금(적립금) 등을 제외한 지출을 말함.

기금지출은 전년 대비 고보기금에서 1조 4,058억원(8.6%), 산재기금에서 2,023억원(2.1%), 장애인기금에서 319억원(3.5%), 임채기금에서 854억원(15.7%), 근로복지기금에서 96억(5.0%) 증가하였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억원, %)

회계·기금별	2024년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 총지출(a+b)	336,825	353,661	16,836	5.0
- 예산지출(a)	58,152	57,639	△512	△0.9
· 일반회계	51,306	51,559	253	0.5
· 특별회계	6,846	6,080	△765	△11.2
- 기금지출(b)	278,673	296,022	17,348	6.2
· 고용보험	164,058	178,116	14,058	8.6
· 산재보험	98,222	100,245	2,023	2.1
· 장애인	9,053	9,372	319	3.5
· 임금채권	5,431	6,285	854	15.7
· 근로복지	1,908	2,004	96	5.0
■ 총 계	534,238	611,241	77,003	14.4

고용노동부 소관 회계·기금간 재원 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고보기금으로 5,500억원, 산재기금으로 213억원, 임채기금으로 0.82억원을 전출함.

고보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1조 3,842억원의 예수원금과 1,206억원의 예수이자를 상환함.

산재기금의 경우 공자기금으로 4조 8,500억원을 예탁하고, 4조 8,501억원의 예탁원금 및 2,122억원의 예탁이자를 상환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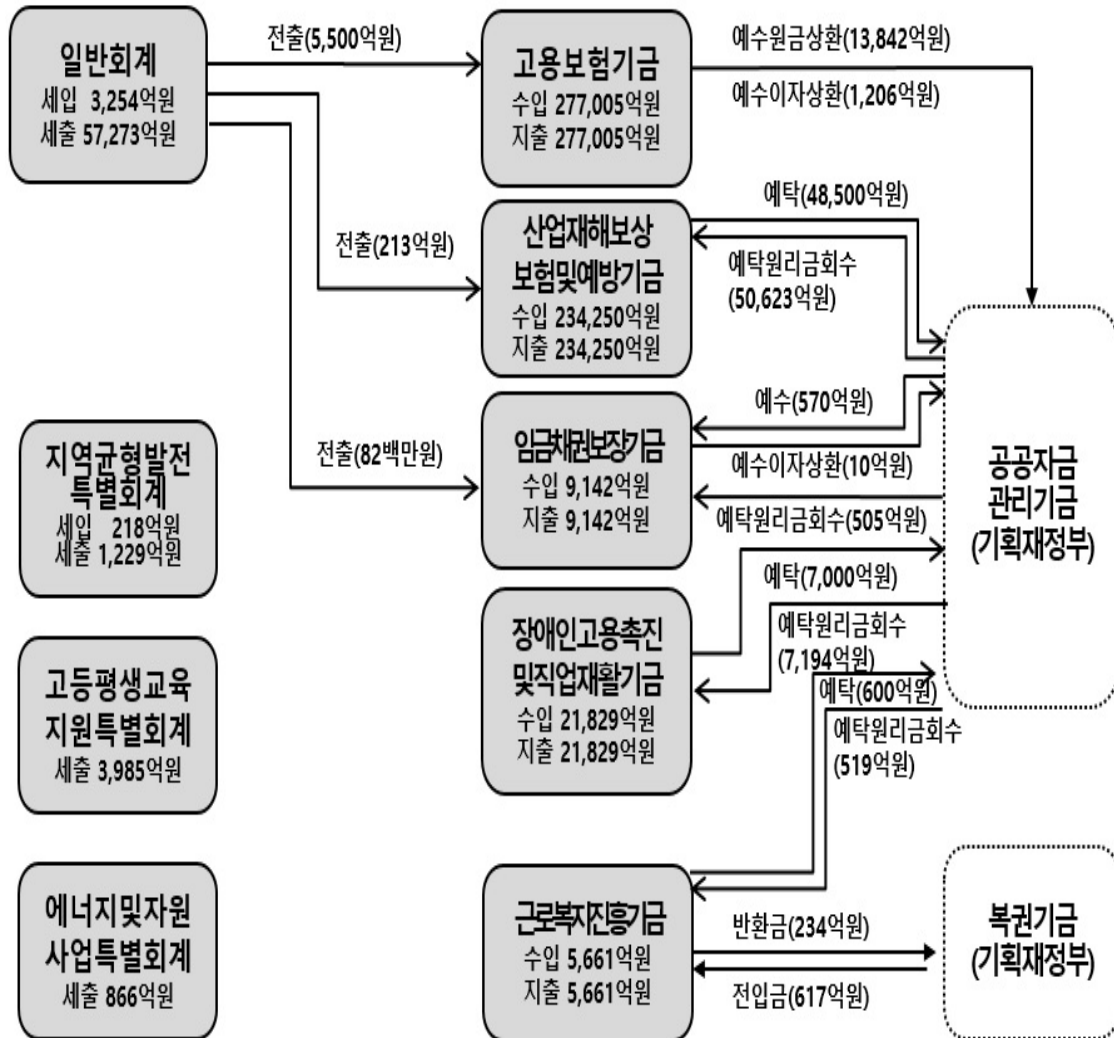
장애인기금의 경우 공자기금으로 7,000억원을 예탁하고, 7,000억원의 예탁원금 및 194억원의 예탁이자를 상환받음.

임채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570억원의 예수금을 받고 10억원의 예수이자를 상환함

근복기금의 경우 공자기금으로 600억원을 예탁하고 519억원의 원리금을 상환받음. 복권기금으로는 234억원을 전출하고, 617억원을 전입받는 것으로 나타남.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회계 · 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 자료: 고용노동부(총계 기준)

나. 세입예산안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3,472억 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억 6,000만원(1.4%) 증가하였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253억 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8,000만원(0.6%) 증가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18억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8,000만원(16.4%) 증가하였음.

[2025년도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4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합 계	342,259	347,219	4,960	1.4
일 반 회 계	323,517	325,397	1,880	0.6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8,742	21,822	3,080	16.4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	-	-

다. 세출예산안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계 기준으로 6조 3,353억 3,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88억 100만원(1.6%) 증가하였음.

[2025년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회계·기금별	2024년 본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예산 총계	6,236,530	6,335,331	98,801	1.6
(총지출)	5,815,148	5,763,949	△51,199	△0.9
◦ 일반회계 총계	5,552,020	5,727,318	175,298	3.2
(총지출)	5,130,638	5,155,936	25,298	0.5
◦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89,566	86,620	△2,946	△3.3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83,887	122,902	△60,985	△33.2
◦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411,057	398,491	△12,566	△3.1

* 3개 특별회계는 기금전출금이 없으므로 총계와 총지출이 동일함.

회계별 세출예산안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계는 5조 7,273억 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52억 9,800만원(3.2%) 증가하였음.

일반회계 총지출은 5조 1,559억 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2억 9,800만원(0.5%) 증가하였음.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은 866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4,600만원(△3.3%) 감소하였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1,229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9억 8,500만원(△33.2%) 감소하였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3,984억 9,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5억 6,600만원(△3.1%) 감소하였음.

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총규모는 54조 7,888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조 6,015억 1,400만원(16.1%) 증가하였음.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단위 : 백만원, %)

기 금	2024년 계 획(A)	2025년도 계 획안(B)	증 감 (B-A)	증 감 률
계	47,187,294	54,788,808	7,601,514	16.1
고보기금	23,413,642	27,700,504	4,286,862	18.3
산재기금	20,295,013	23,425,018	3,130,005	15.4
장고기금	2,004,757	2,182,936	178,179	8.9
임채기금	972,809	914,227	△58,582	△6.0
근복지금	501,073	566,123	65,050	13.0

기금별 지출계획안 현황을 살펴보면, 고용보험기금은 27조 7,005억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조 2,868억 6,200만원(18.3%) 증가하였음.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23조 4,250억 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조 1,300억 500만원(15.4%) 증가하였음.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은 2조 1,829억 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81억 7,900만원(8.9%) 증가하였음.

임금채권보장기금은 9,142억 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85억 8,200만원 (△6.0%) 감소하였음.

근로복지진흥기금은 5,661억 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50억 5000만원 (13.0%) 증가하였음.

【 참고 】 고용부 소관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기획재정부가 운용·관리하는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 중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 지출계획안은

총 112억원으로, 2024년도 계획 대비 △173억원(△60.6%) 감소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 지출계획안 개요]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계획		2025 계획안 (B)	증감 (B-A)	(B-A)/A
	당초(A)	수정			
▪ 합계	28,489	28,489	11,219	△17,270	△60.6
· 산업·일자리전환분석센터	1,134	1,134	1,134	전년동	전년동
· 산업·일자리전환지원센터	5,893	5,893	5,593	△300	△5.1
·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	3,742	3,742	3,742	전년동	전년동
· 산업·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2,500	2,500	750	△1,750	△70
· 고용상태 영향조사	220	220	-	순감	순감
· 탄소중립기술인력양성 (폴리텍)	15,000	15,000	-	순감	순감

* 총계 기준

마. 2025년도 신규사업 및 2024년도 종료 사업

2025년도에는 청년미래플러스(20억), 노동약자지원(159억 8,900만원) 등 4개 세부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사회적기업 육성(지특),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등 6개 세부사업이 2024년에 종료될 예정임.

[2025년도 신규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신규사업	
사업명	2025년 예산안
□ 일반회계	62,385
◦ 청년미래플러스	2,000
◦ 중장년 인턴제	3,640
◦ 노동약자지원	15,989
◦ 일터혁신상생컨설팅	40,756
□ 임금채권보장기금	969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969
총 계(총지출)	63,354(62,385)

[2024년도 종료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종료사업	
사업명	2024년 예산
□ 일반회계	47,342
◦ 노동시장 법제도 현장 안착 지원	43,984
◦ 고용상차별개선지원	3,358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2,689
◦ 사회적기업육성(지특)	47,665
◦ 사회적기업육성(제주)	2,370
◦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12,654
□ 임금채권보장기금	100,000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100,000
□ 근로복지진흥기금	2,436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2,436
총 계(총지출)	212,467(112,467)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에너지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고등·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등 3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나. 일반회계

(1) 세입예산안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253억 9,700만원
으로 전년 대비 18억 8,000만원(0.6%) 증가하였음.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내역별	2024년 본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 일반회계	323,517	325,397	1,880	0.6
○ 기타재산수입 및 이자수입	1,866	3,366	1,500	80.4
○ 과태료	47,482	50,243	2,761	5.8
○ 징계부과금	191	170	△21	△11.0
○ 과징금	2,275	3,600	1,325	58.2
○ 위약금 및 가산금	274	274	-	-
○ 기타경상이전수입	271,279	267,594	△3,685	△1.4
○ 면허료 및 수수료	11	11	-	-
○ 기타잡수입	139	139	-	-

(2) 세출예산안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조 7,273억 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52억 9,800만원(3.2%) 증가하였음.

주요내역은 전년 대비 직업능력개발에서 110억 7,200만원(△1.2%), 고용안전망확충에서 513억 4,800만원(△2.8%), 고용평등증진에서 377억 5,400만원(△45.2%)이 감소하였고, 고용창출에서 487억 6,500만원(3.2%), 노사정책에서 438억 100만원(72.0%),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에서 9억 9,800만원(1.6%), 산업재해예방에서 16억 4,800만원(72.2%), 고용노동행정지원에서 299억 5,600만원(4.9%),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에서 3억 400만원(1.1%),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에서 1,500억원(35.6%)이 증가하였음.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본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 감 (B-A)	증감률
합 계	5,552,020	5,727,318	175,298	3.2
□ 고용창출	1,531,584	1,580,349	48,765	3.2
□ 직업능력개발	932,436	921,364	△11,072	△1.2
□ 고용안전망확충	1,816,210	1,764,862	△51,348	△2.8
□ 고용평등증진	83,502	45,748	△37,754	△45.2
□ 노사정책	60,808	104,609	43,801	72.0
□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62,340	63,338	998	1.6
□ 산업재해예방	2,282	3,930	1,648	72.2
□ 고용노동행정지원	613,943	643,899	29,956	4.9
□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	27,533	27,837	304	1.1
□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421,382	571,382	150,000	35.6

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 세출예산안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866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4,600만원 감액하였음.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 예산 대비 진폐위로금에서 31억 300만원(△3.6%), 진폐근로자지원에서 1억 900만원(△8.9%) 감소하였고, 진폐건강진단에서 2억 6,600만원(17.6%) 증가하였음.

[2025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본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 진폐근로자보호	89,566	86,620	△2,946	△3.3
○ 진폐위로금	86,828	83,725	△3,103	△3.6
○ 진폐건강진단	1,510	1,776	266	17.6
○ 진폐근로자지원	1,228	1,119	△109	△8.9

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18억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8,000만원 증가하였음.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본 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 감 (B-A)	증감률
○ 기타재산이전수입 (지역지원계정)	779	851	72	9.2
○ 과징금 (지역지원계정)	3	30	27	900.0
○ 기타경상이전수입 (지역지원계정)	17,122	18,412	1,290	7.5
○ 기타재산이자수입 (제주특별자치도계정)	33	24	△9	△27.3
○ 기타경상이전수입 (제주특별자치도계정)	805	2,505	1,700	211.2
계	18,742	21,822	3,080	16.4

(2) 세출예산안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229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9억 8,500만원 감소하였음.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사회적기업육성(지역지원계정)에서 476억 6,500만원(순감),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지역지원계정)에서 126억 5,400만원(순감), 사회적기업육성(제주특별자치도계정)에서 23억 7,000만원(순감), 국민취업지원제도(제주특별자치도계정)에서 4,500만원($\Delta 0.5\%$)이 감소하였고,

전년 대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지역지원계정)에서 15억 7,200만원(1.5%), 직업안정기관운영(제주특별자치도계정)에서 2,900만원(3.0%), 내일배움카드운영지원(제주특별자치도계정)에서 200만원(1.9%), 제주노동위원회지원(제주특별자치도계정)에서 4,100만원(3.0%), 제주고용센터업무지원(제주특별자치도계정)에서 1억 500만원(3.0%) 증액하였음.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본 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합 계	183,887	122,902	$\Delta 60,985$	$\Delta 33.2$
□ 지역지원계정	166,611	107,864	$\Delta 58,747$	$\Delta 35.3$
○ 사회적기업육성(지특)	47,665	-	$\Delta 47,665$	순감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106,292	107,864	1,572	1.5
○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12,654	-	$\Delta 12,654$	순감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7,276	15,038	△2,238	△13.0
○ 사회적기업육성(제주)	2,370	-	△2,370	순감
○ 직업안정기관운영(지특)	981	1,010	29	3.0
○ 내일배움카드운영지원(지특)	104	106	2	1.9
○ 국민취업지원제도(지특)	8,955	8,910	△45	△0.5
○ 제주노동위원회지원	1,373	1,414	41	3.0
○ 제주고용센터업무지원	3,493	3,598	105	3.0

3. 기금운용계획안

가. 고용보험기금

(1) 수입계획안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 수입 계획안은 27조 7,005억 400만원으로 2024년도 당초 계획 대비 4조 2,868억 6,200만원(18.3%) 증가하였음.

이 중 여유자금회수(5조 8,436억 8,800만원)와 정부내부수입(5,500억원)을 제외한 수입 계획안은 21조 3,068억 1,600만원으로 2024년도 당초 계획 대비 2조 8,822억 8,400만원(15.6%) 증가하였음.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계획(A)	2025년도 계획안(B)	증 감 (B-A)	증감률
○ 자체수입	18,424,532	21,306,816	2,882,284	15.6
사회보장기여금	17,748,202	20,607,249	2,859,047	16.1
재산수입	339,158	360,446	21,288	6.3
융자금회수	104,294	104,294	-	0.0
기타	232,878	234,827	1,949	0.8
○ 정부내부수입	400,000	550,000	150,000	37.5
일반회계전입금	400,000	550,000	150,000	37.5
기금예수금	-	-	-	-
○ 여유자금회수	4,589,110	5,843,688	1,254,578	27.3
합 계	23,413,642	27,700,504	4,286,862	18.3

(2) 지출계획안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 지출계획안은 27조 7,005억 400만원으로 2024년도 당초 계획 대비 4조 2,868억 6,200만원(18.3%) 증가하였음.

이 중 여유자금운용(8조 3,841억 6,500만원)과 기금간거래(예수원금 상환 1조 3,841억 5,700만원, 예수이자 1,206억 3,200만원)를 제외한 지출 계획안은 17조 8,115억 5,000만원으로 2024년도 당초 계획 대비 1조 4,057억 1,800만원(8.6%) 증가하였음.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 당초 계획 대비 고용창출에서 1,007억원 ($\Delta 30.8\%$), 직업능력개발에서 2,312억원($\Delta 14.2\%$)감소하였으며, 고용평등 증진에서 1조 6,731억원(57.6%), 고용노동행정지원에서 13억원(1.1%)이 증가하였음.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계 획(A)	2025년도 계 획안(B)	증 감 (B-A)	증 감 률
○ 고용창출	326,609	225,884	$\Delta 100,725$	$\Delta 30.8$
○ 직업능력개발	1,628,382	1,397,202	$\Delta 231,180$	$\Delta 14.2$
○ 고용안전망확충	11,429,432	11,492,722	63,290	0.6
○ 고용평등증진	2,904,898	4,577,951	1,673,053	57.6
○ 고용노동행정지원	116,511	117,791	1,280	1.1
○ 기금간거래	1,164,122	1,504,789	340,667	29.3
○ 여유자금운용	5,843,688	8,384,165	2,540,477	43.5
합 계	23,413,642	27,700,504	4,286,862	18.3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 수입계획안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수입계획안은 23조 4,250억 1,800만원으로 2024년도 당초 계획 대비 3조 1,300억 500만원(15.4%) 증가하였음.

이 중 여유자금회수(7조 1,555억 7,200만원)와 정부내부수입(5조 836억 4,900만원)을 제외한 수입계획안은 11조 1,857억 9,700만원으로 2024년도 당초 계획 대비 4,477억 2,900만원(4.2%) 증가하였음.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계획(A)	2025년도 계획안(B)	증 감 (B-A)	증감률
○ 사회보장기여금(분담금)	9,418,508	9,834,968	416,460	4.4
○ 재산수입	992,855	988,677	△4,178	△0.4
○ 경상이전수입	123,558	123,154	△404	△0.3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3,278	13,278	-	-
○ 관유물매각대	-	-	-	-
○ 용자원금회수	189,869	225,720	35,851	18.9
○ 여유자금회수	7,889,483	7,155,572	△733,911	△9.3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667,462	5,083,649	3,416,187	204.9
합 계	20,295,013	23,425,018	3,130,005	15.4

(2) 지출계획안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지출계획안은 23조 4,250억 1,800만원으로 2024년도 당초 계획 대비 3조 1,300억 500만원(15.4%) 증가하였음.

이 중 여유자금운용(8조 5,505억 2,700만원)과 기금간거래(공자기금예탁 4조 8,500억원)를 제외한 지출계획안은 10조 244억 9,100만원으로 2024년도 당초 계획 대비 2,022억 4,900만원(2.1%) 증가하였음.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 당초 계획 대비 산재보험에서 1,765억 9,300만원(2.2%), 산재예방에서 145억 1,200만원(1.1%)이 증가하였음.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계획(A)	2025년도 계획안(B)	증 감 (B-A)	증감률
○ 산재보험	8,099,762	8,276,355	176,593	2.2
○ 산재예방	1,285,544	1,300,056	14,512	1.1
○ 고용노동행정지원	436,936	448,080	11,144	2.6
○ 기금간거래(예탁금)	3,300,000	4,850,000	1,550,000	47.0
○ 여유자금운용	7,172,771	8,550,527	1,377,756	19.2
합 계	20,295,013	23,425,018	3,130,005	15.4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 수입계획안

2025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입계획안은 2조 1,829억 3,600만원으로 2024년도 당초 계획 대비 1,781억 7,900만원(8.9%) 증가하였음.

이 중 정부내부수입(7,193억 6,600만원)과 여유자금회수(5,001억 600만원)를 제외한 수입계획안은 9,634억 6,400만원으로 2024년도 당초 계획 대비 782억 7,600만원(8.8%) 증가하였음.

[2025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계 획(A)	2025년도 계 획안(B)	증 감 (B-A)	증감률
○ 자체수입	885,188	963,464	78,276	8.8
재산수입	22,912	23,032	120	0.5
경상이전수입	857,419	933,855	76,436	8.9
용자원금회수	4,857	6,577	1,720	35.4
○ 정부내부수입	617,890	719,366	101,476	16.4
공자기금예탁	600,000	700,000	100,000	16.7
공자기금이자	17,890	19,366	1,476	8.3
○ 여유자금회수	501,679	500,106	△1,573	△0.3
합 계	2,004,757	2,182,936	178,179	8.9

(2) 지출계획안

2025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기금 지출계획안은 2조 1,829억 3,600만원으로 2024년도 당초 계획 대비 1,781억 7,900만원(8.9%) 증가하였음.

이 중 여유자금운용(5,457억 4,000만원)과 기금간거래(공자기금예탁 7,000억원)를 제외한 지출계획안은 9,371억 9,600만원으로 2024년도 당초 계획 대비 318억 4,800만원(3.5%) 증가하였음.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 당초 계획 대비 장애인고용증진에서 299억 8,000만원(3.7%)이 증가하였음.

[2025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계 획 (A)	2025년도 계 획 안(B)	증 감 (B-A)	증 감 륜
○ 장애인고용증진	821,270	851,250	29,980	3.7
○ 고용노동행정지원	84,078	85,946	1,868	2.2
○ 기금간거래(예탁금)	600,000	700,000	100,000	16.7
○ 여유자금운용	499,409	545,740	46,331	9.3
합 계	2,004,757	2,182,936	178,179	8.9

라. 임금채권보장기금

(1) 수입계획안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계획안은 9,142억 2,700만원으로 2024년도 당초 계획 대비 585억 8,200만원(△6.0%) 감소하였음.

이 중 정부내부수입 및 여유자금회수 1,884억 9,600만원을 제외한 수입계획안은 7,257억 3,100만원으로 2024년 당초 계획 대비 379억 9,900만원(5.5%) 증가하였음.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계 획(A)	2025년도 계 획안(B)	증 감 (B-A)	증감률
○ 자체수입	687,732	725,731	37,999	5.5
재산수입	32,395	22,342	△10,053	△31.0
경상이전수입	620,870	629,630	8,760	1.4
융자금회수	34,467	73,759	39,292	114.0
○ 정부내부수입	103,610	107,554	3,944	3.8
일반회계전입금	82	82	0	0.0
공자금회수	100,000	50,000	△50,000	△50.0
공자이자회수	3,528	472	△3,056	△86.6
기금예수금	0	57,000	57,000	순증
○ 여유자금회수	181,467	80,942	△100,525	△55.4
합 계	972,809	914,227	△58,582	△6.0

(2) 지출계획안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지출계획안은 9,142억 2,700만원으로 2024년도 당초 계획 대비 585억 8,200만원(△6.0%) 감소하였음.

이 중 여유자금운용(2,847억 6,100만원)과 기금간거래(예수이자 9억 6,900만원)를 제외한 지출계획안은 6,284억 9,700만원으로 2024년도 당초 계획 대비 853억 6,400만원(15.7%) 증가하였음.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 당초 계획 대비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에서 847억 7,500만원(16.1%), 고용노동행정지원에서 5억 8,900만원(3.5%)이 증가하였음.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계 획(A)	2025년도 계 획안(B)	증 감 (B-A)	증감율
○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526,432	611,207	84,775	16.1
○ 고용노동행정지원	16,701	17,290	589	3.5
○ 기금간거래	100,000	969	△99,031	△99.0
○ 여유자금운용	329,676	284,761	△44,915	△13.6
합 계	972,809	914,227	△58,582	△6.0

마. 근로복지진흥기금

(1) 수입계획안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수입계획안은 5,661억 2,300만원으로 2024년도 당초 계획 대비 650억 5,000만원(13.0%) 증가하였음.

이 중 정부예금회수 및 정부내부수입 3,569억 5,700만원을 제외한 수입계획안은 2,091억 6,600만원으로 2024년 당초 계획 대비 72억 6,100만원(3.4%) 감소하였음.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계 획(A)	2025년도 계 획안(B)	증 감 (B-A)	증감률
○ 재산수입	6,944	9,146	2,202	31.7
○ 경상이전수입	10,923	12,223	1,300	11.9
○ 채화및용역판매수입	13,116	13,072	△44	△0.3
○ 관유물매각대	84	-	순감	순감
○ 용자원금회수	185,360	174,725	△10,635	△5.7
○ 정부예금회수	133,781	212,177	78,396	58.6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50,865	144,780	△6,085	△4.0
합 계	501,073	566,123	65,050	13.0

(2) 지출계획안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출계획안은 5,661억 2,300만원으로 2024년도 당초 계획 대비 650억 5,000만원(13.0%) 증가하였음.

이 중 기금간거래, 계정간거래, 여유자금운용 3,656억 9,200만원을 제외한 지출계획안은 2,004억 3,100만원으로 24년 당초 계획 대비 96억 900만원(5.0%) 증가하였음.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 당초 계획 대비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에서 94억 9,200만원(5.4%), 고용노동행정지원에서 1억 1,700만원(0.7%)이 증가하였음.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계 획(A)	2025년도 계 획안(B)	증 감 (B-A)	증감률
○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174,442	183,934	9,492	5.4
○ 고용노동 행정지원	16,380	16,497	117	0.7
○ 고용노동행정지원(차입금이자)	-	-	-	-
○ 기금간거래(전출금)	9,714	23,448	13,734	141.4
○ 기금간거래(예탁금)	50,000	60,000	10,000	20.0
○ 계정간거래(전출금)	35,352	31,215	△4,137	△11.7
○ 여유자금운용	215,185	251,029	35,844	16.7
○ 차입금원금상환	-	-	-	-
합 계	501,073	566,123	65,050	13.0

4.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개요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995억원으로 전년대비 995억원 순증하여 편성되었음.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구 분	2024년(A)	2025년(B)	증 감(B-A)
한도액안	-	995억원	995억원 (순증)
내역	-	한국폴리텍대학 경북권(427) 충청권(371) 경남권(197)	-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하여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대신 시설운영권을 획득하며, 정부에서 시설을 약정기간(일반적으로 20년) 동안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그 대가로 원리금 상환의 성격인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함.

2025년도 한도액안은 폴리텍 대학의 경북권(포항·영주캠퍼스), 충청권(바이오·청주캠퍼스), 경남권(울산캠퍼스)의 기숙사, 복합관 등 시설 건설을 위한 BTL사업의 한도액임.

II. 검토의견

[기획조정실]

(1)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ODA)(일반회계, 3050-302)

<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ODA)’ 사업(2012년 ~, 직접·출연)은 개도국에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산업안전·고용서비스 등 고용노동분야의 정책발전경험 공유·전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서, 캄보디아, 스리랑카, 베트남, 라오스 등 아세안 국가에 대해 고용노동분야 법·제도 및 전자정부시스템 구축과 직업훈련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여 한국형 정책모델을 확산시키고, 관련 시스템 진출기반을 확대하는 등 고용노동정책의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101억 7,500만원) 대비 1억 5,000만원(1.5%) 증액한 103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고용정책·기술훈련, 노동기준, 산업안전, 사회적 경제 등의 분야에서 정책연구, 초청연수, 기술자문, 포럼 개최 등의 형식으로 수행되는 한 - ILO 협력사업 국제분담금이 26억 800만원 증액된 데 따른 것임.

[2025년도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집행액 (’24.7)			
■ 개도국 고용노동 분야 개발협력	4,753	10,175	6,984	10,325	150	1.5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강화	2,407	5,671	2,530	3,803	△1,868	△32.9
· 다자금융기구 및 지역협의체를 통한 고용노동정책 교류	110	110	293	243	△50	△17
· 한-ILO 협력사업	2,236	4,211	4,211	6,279	2,608	49

* 자료: 고용노동부

세부사업 중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강화’ 내역사업은 개도국에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산업안전·고용서비스 등 고용노동분야의 정책발전경험 공유·전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서, 캄보디아, 스리랑카, 베트남, 라오스 등 아세안 국가에 대해 고용노동분야 법·제도 및 전자정부시스템 구축과 직업훈련 및 산업안전 보건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음.

해당 내역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직접 수행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연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음.

〈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구축지원 사업의 사업수행 체계 수정 필요 〉

해당 내역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 사업’은 우리나라의 정책 발전경험 공유를 통하여 개도국의 고용노동분야 제도의 개선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파견하고 개도국의 관련 정책 담당자 등을 초청하여 고용노동 분야의 법령 제·개정, 근로기준 개선, 산업안전, 직업 훈련 및 능력개발, 고용서비스 개선 등 우리나라의 고용노동 정책 발전 경험을 공유·전수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기반으로 정책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사업대상국이 정책개선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지식공유형 원조’ 사업임.

동 사업은 「’12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ODA) 신규사업 추진계획」 수립 이후 매년 베트남, 필리핀, 몽골,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라오스, 스리랑카, 페루 등에 고용·노동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산업안전 및 직업훈련 분야 제도 수립 및 개선 등을 위하여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여 조사를 하고, 관련자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정책담당자들을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여 왔음.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 사업 추진현황]

연 도	사업대상국(자문분야)
'24~'26	우즈벡(노동법), 인도네시아(산업안전분야)
'23~'25	캄보디아(노동법/제도)
'22~'24	캄보디아(산재재활), 라오스(노동법)
'21~'23	캄보디아(산업안전분야)
'18~'20	라오스(직업능력개발분야), 스리랑카(고용서비스), 페루(고용서비스)
'17	라오스(직업훈련분야), 스리랑카(ICT 기반 진로지도), 페루(고용센터 운영역량강화)
'16	베트남(직업훈련분야), 캄보디아(직업훈련분야)
'15	베트남(고용센터 운영 모델 구축), 몽골(산안법 하위규정 개정), 캄보디아(근로기준 개선)
'14	베트남(고용법 하위법령 제정), 몽골(산안법 개정), 우즈벡(직훈분야 마스터플랜)
'13	베트남(고용법 제정), 몽골(인력수급전망시스템 구축), 미얀마(산안법 제정)
'12	베트남(고용법 제정), 필리핀(산업안전보건분야), 스리랑카(직업능력개발분야)

*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에는 2023년부터 실시된 캄보디아 노동법 관련 정책자문 최종안을 도출하고 2024년부터 실시된 우즈베키스탄 노동법 관련 정책자문과 인도네시아 산업안전보건법 분야 정책자문에 필요한 전문가 현지 파견이나 담당 공무원 초청 사업 등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2024년과 같이 캄보디아와 우즈베키스탄 노동법 관련 정책자문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수행하고, 인도네시아 산업안전보건 분야 정책자문사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수행할 예정임.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직접 수행하는 정책자문사업의 경우 다음의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3개의 정책자문사업 모두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정부가 제공하는 원조사업이고, 사업 예산이 전문가 인건비와 전문가·행정지원인력 현지 출장을 위한 국외여비 및 통·번역비, 수원국 정책담당자 초청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등으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의 내용 또한 정책자문분야만 다를 뿐 ‘사전 자료조사-현지 파견을 통한 실태조사 및 수원국 담당자 의견청취-최종 자문의견 도출 및 수원국 제출’로서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수행하는 인도네시아 산업안전보건 분야 정책자문사업 예산이 출연금(350-02)으로 편성된 것과 달리 고용노동부가 직접 수행하는 캄보디아와 우즈베키스탄의 노동법 관련 정책자문은 일반연구비(260-01)로 편성되었음.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일반연구비는 국가로부터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점, 동 사업의 결과물로서 연구보고서가 없는 점과,²⁾ 해당 사업의 일반연구비 3억원 7,000만원 중 7,000만원이 타 ODA 사업의 사전 타당성이나 사업 종료 후 평가를 위한 연구를 위한 예산인 점을 고려한다면, ODA 사업의 예산을 일반연구비로 편성하여 집행한 것은 예산안 편성 지침을 위반한 것임.

2) 실질적인 사업시행 주체인 노사발전재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추진과정을 기록한 최종보고서로 연구보고서를 갈음하였음

둘째, 예산안에는 동 사업을 고용노동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이 등이 사업을 수행하였음. 그런데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다년도 사업에 대하여 매년 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노사발전재단을 정책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는 형식적이고도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침으로써 관련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기도 하였음.³⁾

셋째, 동 사업은 자문을 총괄하는 책임자(Project Manager)를 중심으로 2가지 분야별 전문가가 주축이 되어 수행되는데 지금까지 수행된 사업의 총괄책임자 모두와 분야별 전문가의 상당수가 전직 고용노동부 직원이었음. 고용노동부 출신 공무원이 우리나라 고용 정책의 전문가로서 동 사업의 총괄 책임자로서의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고용 정책이나 노동 관련 법률 전문가는 대학, 연구소, 관련 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도 존재하고 이러한 다양한 기관 출신의 총괄 책임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는 점은 고용노동부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사업추진체계에 비추어볼 때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넷째, 동 사업은 지식전달과 정책자문을 통해 수원국의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경제·사회 발전을 이룩한다는 중장기

3) 캄보디아와 라오스 노동법 관련 정책자문 3개년 사업의 경우 각각 2022년과 2023년에는 형식적인 일반경쟁 입찰을 통하여 노사발전재단을 사업수행자로 선정하였고, 2024년에는 수의로 노사발전재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사업시행 초기인 2014년과 2015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해당 사업을 위탁받아 노사발전재단이나 한국폴리텍 등에 재위탁하기도 하였음.

적인 목표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기에 제도 개선에 대한 수원국 정부의 의지나 사업 추진 당시의 정치적 상황,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여건의 성숙 등 지원이 종료된 이후 상황이 사업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침. 그러나 동 사업은 종료 후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결과 분석을 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소규모 사업으로서 성과 평가 또한 선정된 일부 사업에 실시하였으나⁴⁾ 평가의 근거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워 해당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등 사업의 성과가 모호하다는 점에서도 동 사업을 지속 추진할 유인은 없는 것으로 보임.

2010년부터 매년 8% 가까이 ODA 예산이 증가하면서 외교부와 코이카 중심으로 수행되던 무상원조 사업이 다수의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으로 분산되었고, 최근 ODA와 무관한 정부 부처의 소규모 ODA사업의 비효율과 비전문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꼭 필요한 곳에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무상원조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⁵⁾

따라서 실제로 직접 수행하지 않으면서 수행 업체 선정을 위하여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예산 편성 및 집행 관행과 전 고용노동부 직원 출신이 중심이 된 사업 수행을 지양하고, 전문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원조 사업 수행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제고하

4) 국제고용개발원에서 2022년에 실시한 ‘고용노동 분야 ODA 사업평가연구’ 참조

5) 아시아경제, 『36조원 쓴 ODA, 7만개 사업 '난립'...예산 나눠먹기의 역사』 (2023. 10. 25)

연합뉴스, 『안철수의원, "ODA 거버넌스, 외교부-KOICA 중심으로 바꿔 효율성 높여야"』 (2024. 10. 7)

세계일보, 『정부 “韓 ODA, ‘긍정평가’”라지만...소규모 사업 난립 문제 여전』 (2024. 5. 21)

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을 단계적으로 모두 산하 기관의 출연사업이나 위탁·보조 사업으로⁶⁾ 사업추진체계를 변경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고용노동부는 2024년 노사발전재단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면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8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5호 마목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진행하였음. 따라서 해당 사업을 위탁사업으로 변경하여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하거나, 고용노동부 보조사업으로서 노사발전재단이 직접 사업 시행 주체가 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2)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일반회계, 3051-308)

<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2002년~) 사업은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 따라 고용허가를 받고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를 관리하고, 외국인고용사업장을 지도·감독 하며,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에게 신속한 고충 해결을 위한 전화상담(콜센터)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외국인근로자센터의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근로자용 공공주거시설 건립 자본 보조사업 예산 3억원이 신규 편성되는 등 전년(79억 3,400만원) 대비 15억 2,400만원(19.2%) 증액한 94억 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내역사업별 예산안을 보면, ‘외국인취업자관리’ 사업에 53억 3,600만원, ‘외국인력상담센터’ 사업에 20억 2,200만원, ‘외국인근로자지역정착지원’ 사업에 18억원, ‘외국인근로자 공공주거시설 지원’ 사업에 3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2025년도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집행액 ('23.7)			
■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4,321	7,934	3,528	9,458	1,524	19.2
· 외국인취업자관리	2,590	4,163	1,920	5,336	1,173	28.2
· 외국인력상담센터	1,731	1,971	803	2,022	51	2.6
· 외국인근로자지역정착지원	-	1,800	805	1,800	-	-
· 외국인근로자 공공주거시설 지원	-	-	-	300	300	-

* 자료: 고용노동부

〈 일반수용비의 적정액 편성 필요〉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외국인취업자관리(2004년 ~, 직접)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운영과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을 안내·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을 공고하거나 안내책자나 취업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하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사업장을 지도·점검하는 사업임.

해당 내역사업의 예산은 총 53억 3,600만원으로 2024년 예산 대비 28.2%(11억 7,300만원)의 큰 폭으로 증가하여 세부사업 예산 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증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배포 안내 책자 등의 발간 비용,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위한 여비, 지방관서에 배치되는 통역원과 고충상담원 인건비가 증액되었고, 사업장 변경 관련 분쟁 예방·지원 강화를 위해 신설된 전문가지원단⁷⁾ 운영비용 등이 새로 편성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함.

[외국인취업자관리 내역 사업 예산안 증액 내역]

(단위 : 백만원)

내역 예산안 세부 내역	2024년	2025년	증액
매뉴얼, 법령집, 리플릿, 안내책자 제작 등	95	124	29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여비	67	180	113
사업장 변경 관련 전문가 지원단 현장 조사(수당 및 여비)	-	80 ⁸⁾	순증
사업장 변경 소위원회 운영(수당)	-	140 ⁹⁾	순증
지방관서 통역원 배치(사례비)	1,819	2,094 ¹⁰⁾	275
외국인근로자 등 고충상담 지원(인건비)	1,767	2,205 ¹¹⁾	439
외국인력 수요분석(일반연구비)	-	100	순증

* 자료: 고용노동부

7) 사업장변경 분쟁 관련 변경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노사갈등 조정 등 역할 수행, 필요 시 사업장변경 소위원회 의견 진술을 위하여 공인노무사 165명으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방관서에 지원단 구성 명단 배포 하였으며(2024. 9. 30), 외국인근로자 입국 초기(6개월 이내) 사업주나 외국인근로자 신청 또는 업무 담당자 필요시 직권으로 지원요청할 예정임

8) 400건×건당 20(수당+여비)만원으로 산출된 금액

9) 200건×위원7명×10만원으로 산출된 금액

10) 20,000원×11시간×52주×61개소×3명으로 산출된 금액

11) 2024년에는 고충상담인력 채용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9개월 분을 편성하였고, 2025년

예산과목별로 보면, 지방관서 고용센터 통역원 사례비, 외국인력제도 안내를 위한 자료 제작과 외국인력결정위원회 결정사항 등 각종 정책 공고, 관련 회의 운영을 위한 참석 수당 등에 소요되는¹²⁾ 비용인 일반수용비가 동 내역사업 예산의 절반 정도인 26억 2,4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24년 대비 5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가장 큰 금액이 증가하였음.

이러한 큰 폭의 일반수용비의 증액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해당 수용비는 2022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1억 3,600만원을 감액하고,¹³⁾ 다시 4,000만원을 이·전용하였음에도 9,600만원이 불용되었고,

[2022년 일반수용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금액	변경된 예산과목	이·전용 등 사유
자체전용 (‘21.5.11.)	20	260-02	외국인력 활용 관련 수요조사
세목조정 (‘22.12.23.)	20	210-14	‘22년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만족도 조사

* 자료: 고용노동부

2023년에 4차례의 자체전용과 3차례의 세목조정을 통해 총 1억 3,600만

12)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p.811 참고

13) 코로나-19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에서 24억 100만원에서 22억 6,500만원으로 감액함

원이 국외여비나 일반용역비, 연구용역비로 집행되고, 다른 세부사업의 사업추진비로 집행되어야 했던 국외 출장 공식일정용 및 외빈 선물비 2,552만 8,000원이 일반수용비에서 집행되었음에도 5,639만원이 불용되었으며,

[2023년 일반수용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금액	변경된 예산과목	이·전용 등 사유
자체전용 (‘23.1.18.)	10	260-02	외국인력 수급 관련 노동시장 영향 분석 연구용역
자체전용 (‘23.4.27.)	20	220-02	중앙아시아 외국인력, 직업훈련 분야 협력 논의
자체전용 (‘23.6.15.)	10	220-02	베트남 국외출장(VIP 방배일정 장관 공식수행원 동행)
세목조정 (‘23.8.7.)	8	210-14	외국인 가사인력 활용 관련 현장 수요 확인 용역 계약
자체전용 (‘23.10.26)	30	220-02	지방관서 외국인력팀 지도점검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부족분
세목조정 (‘23.10.26)	38	210-14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만족도 조사 및 고용허가제 만족도 조사 용역
세목조정 (‘23.12.15)	20	210-14	2023회계연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민간경상보조금 회계정산

* 자료: 고용노동부

2024년에는 7월 현재 이미 1억 4,100만원을 세목조정하여 일반용역비 등에 집행하고도, 집행잔액이 9억 1,900만원에 달하여 상당액의 불용이 예상된다.

[2024년 일반수용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금액	변경된 예산내역	이·전용 등 사유
세목조정 (‘24.2.17)	44	210-14	고용허가제 업무담당자 교육연수 용역 지출
세목조정 (‘24.2.27)	42	210-15	폐지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행정재산 유지 비용
세목조정 (‘24.3.18)	10	210-14	다국어상담원 응시자 채용 컨설팅
세목조정 (‘24.3.18)	46	210-15	다국어상담원 주말상담 운영에 따른 경비용역 예산 필요

* 자료: 고용노동부

이렇게 본예산에서 1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을 감액조정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상당액의 불용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수용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데 그 원인이 있음. 정부는 “전년도 결산 결과, 일반수용비를 타 비목으로 이·전용하였거나 불용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소요 수준으로 조정·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¹⁴⁾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예산 편성과 다른 집행 관행은 내역사업별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예산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도 지양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동 예산안에는 사업장변경 소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 1억 4,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해당 예산액은 위원 7명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10만원을 기준으로 연 200회를 실시한다는 계획으

14) 「2025년도예산안 편성 및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사업유형별·목별 매뉴얼)」 p.217

로 산출된 것임. 그런데 사업장변경 소위원회는 지역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에 설치,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한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에¹⁵⁾ 따라 2015년부터 운영되어 온 것으로¹⁶⁾ 올해까지 권익보호협의회 운영 예산에서 부족함 없이 집행되고

15) 고용노동부훈령 제163호, 2015. 9. 9., 일부개정

16)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지역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에 관한 사항
2. 삭제
3.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간 갈등의 해소 방안
4.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방안
5. 그 밖에 지역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관서의 고용허가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③ 협의회는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안건을 명시하여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⑤ 협의회의에는 제4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둔다

제8조(소위원회) ① 제5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한다.

-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단체 및 기관에서 고용허가제 또는 외국인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관서의 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변경 신청 사유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간 주장의 불일치,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사업장변경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여 소위원회를 통하여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고시 중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소집된 회의는 제5조제3항 후단에 따른 협의회 개최에 갈음한다.
- ⑤ 지방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사업장변경에 관한 업무 처리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제3조제3항 및 제4항, 제5조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는 소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다만, 고용노동부는 제8조를 2024년 6월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공인노무사의 지원등을 규정한 제5항 등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

제8조(사업장변경 소위원회) ① 협의회의에는 제4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사업장변경 소위원회를 둔다.

- ② 사업장변경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장이 사업장변경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 ③ 사업장변경 소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단체 및 기관에서 고

있음에도 사업장변경 소위원회를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를 1억 4,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으로 신규 사업처럼 추가한 것은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이자 이중 예산편성으로 볼 여지도 있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다른 과목으로의 이·전용이 비교적 용이한 일반수용비를 과다 계상하여 편성 내역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현행 예산에도 반영된 내역을 신규 사업처럼 중복 계상한 부분을 실제 소요되는 적정한 금액으로 편성함으로써 예산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용허가제 또는 외국인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관서의 장이 위촉한다.

④ 사업장변경 소위원회 위원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변경 신청 사유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을 명시하여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제6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한 경우로서,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 주장의 불일치,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사업장 변경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3.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제라목에 따라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타당성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

⑤ 사업장변경 소위원회는 사업장변경 사유 관련 이견 발생 시 공인노무사를 통해 사업장 현장 조사(사업주, 근로자, 관계자 면담, 증빙자료 수집·조사 등)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업장변경 소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연 1회에 한하여 제5조제3항에 따른 정기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갈음한다.

⑦ 지방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업장변경에 관한 업무 처리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제3조제3항 및 제4항, 제5조제4항, 제5조제5항, 제7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는 사업장변경 소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고용정책실]

(1) 고용보험기금 총괄

< 고용보험기금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모성보호육아지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임.

기금의 주요수입은 피보험자(사업주 및 근로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고용주부담금 및 피고용자분담금), 적립금의 투자 등에서 발생하는 기금운용수익 등이고, 주요 지출은 실업급여,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및 기금운용비 등임.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의 수입 및 지출 계획안은 전년(23조 4,136억 4,200만원) 대비 4조 2,868억 6,200만원(18.3%) 증액된 27조 7,005억 400백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4년(당초)	2025년(계 획)
수입액(여유자금 운용분 포함)	234,136	277,005
수입액	188,245	218,568
자체수입	177,482	206,072
재산수입	3,395	3,604
기타	3,368	3,391
일반회계 전입금	4,000	5,500
공자기금 예수금	-	-
여유자금 회수	45,891	58,437
지출액(여유자금 운용분 포함)	234,136	277,005
지출액	175,700	193,163
사업비	162,893	176,938
기금운영비	1,165	1,178
공자기금원금상환	10,000	13,842
공자기금이자상환	1,641	1,206
여유자금 예치	58,437	83,842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은 적용 근로자 및 보험사업의 특성에 따라 ①임금근로자 실업급여 계정, ②임금근로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 ③자영업자 실업급여 계정, ④자영업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음.

[고용보험기금의 계정]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①실업급여	②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③실업급여	④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임금근로자 계정에 포함됨

실업급여 계정을 통해 지출되는 사업은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모성보호육아지원, 실업크레딧지원 등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에서 지출하는 사업은 고용유지지원금, 내일배움카드(고보),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등임.

[계정별 주요 사업의 내용 및 목적]

실업급여 계정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재취업활동을 전제로 이직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 및 노동시장 복귀 지원	고용 유지지원금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과 고용안정에 기여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급여 수급 중 조기에 재취업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조기 재취업 촉진	내일배움카드 (고보)	급격한 기술발전 적응과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

모성보호 육아지원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 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 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배 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의 지 급을 통해 모성을 보호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채용예 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해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기업의 생 산성 제고
실업크레딧 지원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 급자 중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 산입하려는 자 중 일정 요건 충족 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실업자 노후 소득 보장 및 사회보험 사각 지대 해소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	기업이 청년 등을 먼저 채용 한 뒤 기업에서의 현장훈련과 학교에서의 이론교육을 통해 일학습병행 자격취득까지 연 계하는 교육 훈련 제도

〈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지출액 급증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필요 〉

실업급여 제정을 통해 지출되는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근로기
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
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임.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2025년도 계획액은 전년(2조 4,968억 3,000
만원) 대비 1조 5,256억 2,400만원(61.1%) 증액된 4조 224억 5,400만원
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100
		당초(A)	2024. 7. 집행액			
■ 모성보호육아지원	2,261,495	2,496,830	2,496,830	4,022,454	1,525,624	61.1
· 출산전후휴가급여	326,290	347,012	347,012	352,497	5,485	1.6
· 유산사산휴가급여	1,647	1,858	1,858	1,859	1	0.1
· 육아휴직급여	1,796,995	1,986,864	1,986,864	3,402,970	1,416,106	71.3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130,324	149,048	149,048	233,521	84,473	56.7
· 배우자출산휴가급여	6,240	8,375	8,375	24,213	15,838	189.1
· 난임치료휴가급여	-	3,673	3,673	7,394	3,721	101.3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이 2025년도 계획액이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 사업의 증액에 따른 것인데, 특히 육아휴직급여 사업 계획액이 전년 대비 1조 4,161억 600만원 증가하였음.

이와 같은 큰 폭의 증액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주요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육아휴직급여의 지원수준을 현행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되고, 상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최초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250만원,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20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160만원으로 상향될 예

정임. 또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됨.¹⁷⁾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육아휴직의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현행 수준에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될 예정임. 모성보호육아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024년 9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되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도 2024년 10월 10일부터 2024년 11월 19일까지 진행됨.

[2025년도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주요 개편 내용]

구 분	내 용
육아휴직	(최대 휴가기간) 1년 → 1년+6개월(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시 최대 6개월 연장 사용 가능) (급여지급수준) 통상임금의 80% → 통상임금의 100%(첫 6개월) (급여상한액) 월 150만원 → 1개월~3개월 250만원, 4개월~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사용기간)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2 (급여지급수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주당 최초 10시간까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을 월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최대 5일 → 최대 20일* * 배우자 출산휴가의 휴가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17) 현행법상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이고,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함.

한편, 「고용보험법」 제5조에 따라 국가는 매년 고용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하고¹⁸⁾, 이에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전입금이 편성되고 있음. 최근 10년간 전입금 편성 현황을 보면, 2016년 700억원에서 2025년 5,500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음.

그런데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지출액 대비 전입금 비율은 2025년도에 13.7%에 불과하고, 전년도(16%) 대비 2.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모성보호육아지원 지출 및 일반회계 전입금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실업급여 계정지출 (A)	모성보호 육아지원 지출(B)	모성보호 육아지원 지출비율 (B/A)	모성보호육아지원		일반회계 전입금 (C)	전입금 비율 (C/B)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주1)}	육아휴직 급여 등 ^{주2)}		
2016	58,557	8,840	15.1	2,480	6,360	700	7.9
2017	62,858	9,356	14.9	2,434	6,922	900	9.6
2018	79,157	11,041	13.9	2,493	8,547	900	8.2
2019	98,558	13,500	15.1	2,700	10,800	1,400	10.4
2020	138,860	15,614	11.2	2,942	12,672	1,800	11.5
2021	144,138	16,850	11.7	2,978	13,872	2,200	13.1
2022	141,325	20,772	14.7	3,126	17,646	3,000	14.4
2023	143,307	22,615	15.8	3,342	19,273	3,000	13.3
2024	141,712	24,968	17.6	3,609	21,359	4,000	16.0
2025	157,775	40,225	25.5	3,860	36,365	5,500	13.7

* 주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

2)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자료: 고용노동부

18) 「고용보험법」 제5조(국고의 부담) ①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재원이 되는 실업급여 계정의 경우 예상치 못한 고용 불안정 확산 시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하여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국가의 지원이 전제되어야 원활한 집행이 가능하고, 국가는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으므로¹⁹⁾, 일반회계전입금이 충분히 편성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원활한 집행과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일반회계전입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9)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에 해당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고용영향평가(일반회계, 1045-301)

<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

‘고용영향평가’(2011년~, 법정민간대행)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사업, 법·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원(28.9%) 증액한 13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고용영향평가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A)	집행액 (‘24.7)			
■ 고용영향평가사업	3,371	1,039	727	1,339	300	28.9
· 고용영향평가사업	3,371	1,039	727	1,279	240	23.1
· 산업전환 고용안정영향평가	-	-	-	60	60	순증

* 자료: 고용노동부

〈 산업전환 고용안정 영향평가와 고용상태 영향조사의 통합 필요 〉

고용노동부는 2025년 ‘고용영향평가’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산업전환 고용안정 영향평가’ 사업을 신규로 6,000만원 편성하였음.

산업전환 고용안정 영향평가는 2023년 10월 제정되어 2024년 4월부터 시행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이라 함) 제8조²⁰⁾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동법에 따른 ‘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동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것임.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일자리 위협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영향평가는 동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20)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고용영향 사전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조사·평가(이하 “고용영향 사전평가”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고용영향 사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별·지역별·직업별·직무별 인력 수요의 전망 및 인력 수요 변화 모니터링
2.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직무 등의 분석 및 전환가능한 직무 등의 발굴과 해당 직무의 요구 역량 분석
3. 산업전환에 따라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별·지역별 예상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분석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고용영향 사전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재출연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민간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고용영향 사전평가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고 할 것임.

다만, 산업전환 고용안정 영향평가는 고용노동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함)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고용상태 영향조사’와 그 목적 및 대상 등이 유사함.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등의 목적으로 2021년 9월 제정되어 2022년 3월부터 시행 중인 법률로, 동법 제47조²¹⁾는 정부로 하여금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사업전환 및 구조적 실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용상태의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를 구체화한 동법 시행령 제48조²²⁾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2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사업전환 및 구조적 실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업의 발생 등 고용상태의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재교육, 재취업 및 전직(轉職) 등을 지원하거나 생활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8조(고용상태 영향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실업의 발생 등 고용상태의 영향을 5년마다 조사해야 한다. 다만,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업전환 및 구조적 실업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의 주민 및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다

하여금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실업의 발생 등 고용상태의 영향을 5년마다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기후대응기금의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2023년과 2024년에 4억 7,000만원과 2억 2,000만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하여 2023년에는 석탄화력, 자동차, 철강산업의 고용상태 영향조사를 실시하였고, 2024년에는 석유화학, 건축산업의 고용상태 영향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25년 예산은 탄소중립기본법이 동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한 규정에 근거하여 편성하지 아니한 상황임.

산업전환 고용안정 영향평가와 고용상태 영향조사는 그 근거가 각각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전환 고용안정 영향평가의 경우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용상태 영향조사의 경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실업의 발생 등 고용상태 영향’을 조사하는 것으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바 조사의 대상과 내용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실업자에 대한 생계 지원
3.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또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산업전환 고용안정 영향평가와 고용상태 영향조사 비교]

구 분	산업전환 고용안정 영향평가	고용상태 영향조사
목 적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실업의 발생 등 고용상태 영향을 조사
근 거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탄소중립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주 기	5년(정기), 필요시(수시)	5년(정기), 필요시(수시)
법규상 평가·조사 내용	①산업별·지역별·직업별·직무별 인력 수요의 전망 및 인력 수요 변화 모니터링 ②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직무 등의 분석 및 전환가능한 직무 등의 발굴과 해당 직무의 요구 역량 분석 ③산업전환에 따라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별·지역별 예상 피해규모 등에 관한 분석	①조사 대상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조사계획 수립 ②조사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평가·조사 결과의 활용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평가 결과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고용정책 심의회를 통하여 결정된 산업·업종에 대한 고용안정 등 지원대책 수립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
2025년 예산안	6천만원	미편성 (차기 정기조사 2028년 진행예정, 2023년 4억 7천만원 / 2024년 2억 2천만원)
재 원	일반회계	기후대응기금

자료 :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이와 같이 유사한 내용의 두 평가·조사 사업이 이원화되어 추진되는 경우 평가·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인 대책 마련과 관련한 절차 또한 별도로 이원화되어 이루어질 것이므로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임.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두 사업이 일정 부분 연관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선행 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는 등 상호 보완·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23년과 2024년에 고용상태 영향조사를 통해 ‘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바 있으므로 2025년 산업전환 고용안정 영향평가의 경우 ‘디지털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같이 고용상태 영향조사를 통해 탄소중립과 관련한 분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산업전환 고용안정 영향평가를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분야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경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의 제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할 것임.

또한 고용상태 영향조사를 실시하였던 기후대응기금의 ‘산업·일자리 전환지원’ 세부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전환고용안정법에 따른 ‘산업전환’ 개념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바 해당 사업이 산업전환고용안정법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사업²³⁾에 부합한다고 보이

23)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① 정부는 산업전환으로 고용안정이 요청되는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 직무전환 및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근로자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3. 근로자 전직 및 재취업
4.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생계안정
5.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채용
6.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7. 노사관계 발전 및 동반성장 증진
8. 근로자의 창업 촉진
9. 그 밖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며, 산업전환 고용안정 영향평가를 해당 사업을 통해 실시하여 사업의 내용에 반영하는 것이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의 목적과 정부 재원 집행의 효율성·효과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임.

[산업·일자리 전환지원 사업 주요 내용]

내역사업명	사업 주요 내용	2025년 계획안
산업·일자리전환분석센터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자리변동이 예정되거나 진행중인 산업·업종을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 인센티브 등 개발	11억 3,400만원
산업·일자리전환지원센터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에 재직자의 직무전환 및 신속한 재취업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 연계 등 컨설팅 제공	55억 9,300만원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직무 재배치 등을 위해 재배치(전환) 훈련 및 전직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지원	37억 4,200만원
산업·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7억 5,000만원

즉,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두 평가·조사 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해당 평가·조사를 현재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평가·조사와 지원을 연계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²⁴⁾

24) 고용노동부는 ①산업전환 고용안정 영향평가의 범위가 고용상태 영향조사보다 더 포괄적이고, ②산업전환 고용안정 영향평가는 고용노동부 주관 일반회계로, 고용상태 영향조사는 기획재정부 주관 기후대응기금으로 각각 운용중이며, ③2025년 기후대응기금에 고용상태 영향조사 예산 미반영으로 2025년 조사가 불가능하고, ④2021년 제정 탄소중립기본법 상 5년 주기의 고용상태 영향조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음에도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제정 시 산업전환 고용안정 영향평가를 신설한 이유는 산업전환에 대한 고용대책은 5년 주기의 조사로는 적시 대응이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두 평가·조사가 차이가 있으며, 2025년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3)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일반회계, 1234-300)

<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2021년~, 직접)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본예산 기준, 9,425억 1,500만원) 대비 968억 600만원(△10.3%) 감액된 8,457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100
		본예산 (A)	2024. 7. 집행액			
■ 국민취업지원제도	925,569	942,515	592,291	845,709	△96,806	△10.3
· I 유형	756,592	762,373	495,712	714,087	△48,286	△6.3
· II 유형	93,573	103,193	53,215	130,657	27,464	26.6
· 일경험프로그램	74,189	75,984	42,544	-	△75,984	(순감)
· 전산망 강화	1,215	965	820	965	0	(전년동)

* 고용노동부는 ‘일경험프로그램’ 사업을 2025년도부터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일반회계, 1051-305)’ 사업과 ‘중장년 인턴제(일반회계, 1336-305)’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예정임

** 자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2020년 6월 9일 제정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2021. 1. 1. 시행)에 근거하여 시행 중임.

동 사업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이 결합된 I 유형, 취업지원서비스에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II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됨.

I 유형 내역사업은 15세 이상 69세 이하인 구직자 중 소득이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사람(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 5억원 이하)을 대상으로, 취업경험의 여부에 따라 세부유형을 결정하여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최대 6개월)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II유형 내역사업은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층,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35세 이상 69세 이하의 중장년층, 결혼이민자 등 특정계층²⁵⁾에 대하여 취업활동비용²⁶⁾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25)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家主, 국가유공자, 노무제공자, 건설일용직, 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애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26) 취업활동비용은 ①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②훈련참여지원수당, ③참여장려수당으로 구분됨. ①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5~25만원이 지급되고, ②훈련참여지원수당은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씩 월 최대 284,000원이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되며, ③참여장려수당은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서 집중 취업상담(최소 30분 이상) 또는 취업알선을 실시한 방문 수급자에게 교통비 등 실비 차원에서 월 1회 2만원을 최대 3회에 한하여 지급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별 지원대상 및 요건 비교]

구분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I 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 발 형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청년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5억원 이하	무관
II 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특정계층		15~69세	소득요건 없음	재산요건 없음	무관
	청년층		15~34세	소득요건 없음	재산요건 없음	무관
	중장년층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요건 없음	무관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 유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고, 2025년부터는 II 유형 청년 참여자가 1개월 이상 훈련 참여 후 빈일자리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 시 훈련수당(월 20만원 최대 120만원) 및 취업성공수당(40만원)을 지급하는 ‘빈일자리 청년수당’을 지급할 예정임.

한편, I 유형 참여자 및 II 유형 조건부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창업할 경우(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함) 지급하

던 ‘조기취업성공수당’은 2025년도부터 폐지됨.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세부 사업 변화]

구 분	취업성공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빈일자리 청년수당
대상자	I·II유형 중 가구 단위 중위 소득 60% 이하 또는 II유형 중 특정계층참여자	I 유형 참여자 및 II유형 조건부수급자	청년 참여자
지급요건	다음의 ①소득요건과 ②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①소득요건: 신청 당시의 가구단위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II유형 특정계층은 소득 무관 ②근로조건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을 동시에 충족하는 일자리 취업(단, 주 30시간 이상의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 취업자에게도 지급) (창업) 사업자 등록 + 사업영위를 위한 전용공간 확보 및 매출 발생 등 (노무제공자) 월 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다음의 ①조기취업요건 및 ②취업·창업의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①조기취업요건 (I 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부터 구직촉진수당 4회차 지정일까지 취업·창업 (II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부터 3개월 이내 취업·창업 ②근로조건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동시에 충족하는 일자리 취업(단, 주 30시간 이상의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 취업자에게도 적용) (창업) 사업자 등록 + 사업영위를 위한 전용공간 확보 및 매출 발생 등 (노무제공자) 월 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①1개월 이상 직업훈련 참여 ②제조업(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10대 업종*의 빈 일자리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무 * '23년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TF 선정
지급수준	6개월 근무 시 50만원, 1년 근무 시 100만 지급	(I 유형) 기 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수당의 50% 지급 (II유형 조건부수급자) 50만원을 1회 지급	훈련수당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지급
비 고	2025년도 계속 추진	2025년도 폐지	2025년도 신설

〈 청년도전지원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청년층의 참여 확대 노력 필요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연계가 가능함.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구직의사가 있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의사가 없던 청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음.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임.

구체적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지원한 청년은 밀착상담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회복 및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청년도전프로그램과 청년도전프로그램의 내용을 확대하여 참여자 특성에 맞는 외부기관 연계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는 청년도전⁺(플러스)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50만원 이상의 참여수당, 20만원의 이수 인센티브 및 50만원의 취업 인센티브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됨. 청년도전프로그램은 5주 이상, 청년도전⁺프로그램은 15주 이상의 기간 동안 운영됨.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도전지원사업의 비교]

구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목적	○ <u>구직의사가 있으나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u> ,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취업취약계층의 <u>노동시장 진입 촉진</u>	○ <u>구직단념청년</u>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u>자신감 회복</u> 및 <u>구직의욕 고취</u>
지원대상	○ I 유형: <u>중위소득 60%, 재산 4억원 이하 15~69세 구직자</u>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재산 5억원 이하) ○ II 유형: <u>중위소득 100% 이하 15~69세 구직자</u> (청년, 특정계층의 경우 소득 무관)	○ <u>소득·재산 무관</u>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보조종료아동),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지역특화청년 등
지원내용	○ <u>취업지원서비스 지원</u> - (공통) 심층상담, 직업심리검사를 기반으로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른 구직활동*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맞춤형 <u>취업지원 서비스 제공</u> * 취업알선, 이력서 작성·면접 코칭 등 ** 심리·진로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일경험, 금융·복지 연계 등 - (II 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15~20만원, 훈련참여 지원수당 월 28.4만원 × 최대 6개월 - (공통) 중위소득 60% 이하 참여자 취업 후 근속(6·12개월)시 <u>취업성공수당 150만원</u> ○ <u>생활안정지원</u> - (I 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50~90만원 × 최대 6개월	○ <u>자신감회복 서비스 지원</u> - (청년도전) 밀착상담을 기반으로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구성·운영 - (청년도전*) 도전프로그램 내용을 확대하여 참여자의 특성 및 요구에 맞는 외부기관 연계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기반의 자율활동 운영 - (청년도전 참여수당) 50만원 - (청년도전* 참여수당) 참여수당 ^{중기} 150만원, ^{장기} 250만원, 이수 인센티브 ^{공통} 20만원, 취업 후 3개월 근속시 ^{공통} 50만원
지원기간	○ 수급자격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 부터취업지원서비스 <u>1년</u> (6개월 연장가능), 사후관리 <u>3개월</u> (1개월 연장가능)	○ 청년도전: 최소 <u>5주</u> ○ 청년도전*: (중기)최소 <u>15주</u> , (장기)최소 <u>25주</u>

*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2021~20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현황을 살펴보면, 연계율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계율이 2021년 37.2%에서 2023년 16.6%으로 하락하였음.

[2021~20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목표인원	5,000	7,000	8,000
	참여인원	3,287	5,795	7,147
	이수인원(A)	2,764	4,929	6,389
국민취업 지원제도	목표인원	640,000	600,000	470,000
	참여인원	418,243	281,800	296,049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인원(B)		1,028	1,531	1,058
연계율(%) (=B/A×100)		37.2	31.1	16.6

*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재편집

고용노동부의 사업 간 연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의 수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특히,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민취업지원제도²⁷⁾와 청년도전지원사업 모두 청년층의 목표 참여인원을 전년도 대비 각각 28,000명, 3,000명 상향하였으므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독려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해서는 두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7) II유형 청년층 참여자 기준

[2025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도전지원사업의 목표인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청년층 참여자: ('24) 40,000명 → ('25) 68,000명 (28,000명 ↑)
-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 참여자: ('24) 9,000명 → ('25) 12,000명 (3,000명 ↑)

*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층 참여자를 확대하기로 계획하고 있는데,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4) 자영업자 실업급여(고용보험기금, 1292-350)

< 사업 개요 및 계획안 내역 >

‘자영업자 실업급여’ 사업(2013년~, 직접)은 비자발적 폐업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걱정된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당초 기준, 175억 4,100만원) 대비 9억 300만원(5.1%) 증액된 184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자영업자 실업급여 사업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100
		당초(A)	2024. 7. 집행액			
■ 자영업자 실업급여	16,784	17,541	11,264	18,444	903	5.1
· 자문수당	17	23	9	23	0	(전년동)
· 보험금	16,768	17,518	11,255	18,421	903	5.1

* 자료: 고용노동부

< 사업 안내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자영업자 가입 독려 필요 >

동 사업은 임의가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입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 중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²⁸⁾, 농어업경영정보²⁹⁾를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람임.

28)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한함.

29) 농어업경영정보는 농업경영체의 경우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를 의미하고,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고,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의 사유로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해 지급하며, 기초일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함.

2025년도 동 사업은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을 위하여 보험금 비목(320-04)으로 184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원 인원은 3,499명으로 전년도(3,372명) 대비 127명(3.8%) 증가한 수치임.

[2025년도 자영업자 실업급여 보험료 비목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비 목	계획액	산출근거
보험료(320-04)	18,421	3,499명 ¹⁾ ×52,645원 ²⁾ ×100일 ³⁾

* 주 1) 수급자 수

2) 급여일액

3) 수급일 수

**자료: 고용노동부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수는 2020년 30,629명에서 2024년 7월 52,180명으로 70.4% 증가하였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영업자 수는 2020년 1,495명에서 2024년 7월 2,527명으로 69% 증가하였음.

어업경영체의 경우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 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를 뜻함.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7.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수	30,629	36,859	42,643	47,604	52,180
실업급여 수급 자영업자 수	1,495	2,056	2,575	3,248	2,527
실업급여 지급액	7,212	9,932	12,383	16,768	11,255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수와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영업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에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실업급여 지급인원을 확대 편성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봄.

다만,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보다 많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가 중요한 이유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가 자영업자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임.

고용노동부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제도 홍보’ 사업(고용보험기금, 7078-280)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제도 홍보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집행액	집행내역
2021	440	• 가입안내문 제작, 리플릿 제작 • 우편요금, DM 발송 등
2022	440	• 가입안내문 제작, 리플릿 제작 • 우편요금, DM 발송 등
2023	418	• 가입안내문 제작, 리플릿 제작 • 우편요금, DM 발송 등

* 자료: 고용노동부

그럼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적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의 가입이 저조한 주요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의 업종, 매출, 고용인원 등의 특징을 분석하여 가입률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5) 지역고용정책협의회 운영지원(고용보험기금, 7076-234)

< 사업 개요 및 계획안 내역 >

‘지역고용정책협의회 운영지원’(2007년~, 직접)은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고용촉진 대책의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고용노동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지역고용정책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5년 계획안은 2024년과 동일한 1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지역고용 정책협의회 운영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계획액 (A)	집행액 (‘24.7)			
■ 지역고용정책협의회 운영지원	164	161	87	161	0	(전년동)

* 자료: 고용노동부

〈 일반회계 기본경비를 통한 집행 필요 〉

동 사업의 지원 대상인 ‘지역고용정책협의회’는 별도의 근거규정에 따라 조직된 협의회는 아니며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담당자와 고용노동부 지방청 지역협력과 업무담당자 등 약 550여명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음.

동 사업 예산은 일반수용비(210-01목) 9,500만원, 사업추진비(240-01목) 4,900만원, 임차료(210-07목) 1,500만원, 국내여비(220-01목) 2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회의 개최를 위한 운영비 및 사업추진비 등의 비용임.

고용노동부는 동 예산을 통해 본부 지역고용정책협의회를 연 3회가량 개최하고 있는바 243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관서 지역협력부서 담당자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³⁰⁾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일자리사업 및 고용정책 주요 운영 방향과 고용노동부의 지역일자리사업 관련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음.

3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의2(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인력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2. 지역 내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3. 지역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현황 조사
4.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 관련 자원 배분 및 조정
5.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연계와 평가
6. 해당 지역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력양성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및 예산 반영 의견 제시
7. 그 밖에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22~2024.9. 연도별 본부 지역고용정책협의회 개최 내역]

연도	일자	주요내용	회의방식
2022	3.15.	- '22년 일자리대상 추진계획 안내 - 지역 일자리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교육·컨설팅 사업 안내 등	화상
	5.26.	- 「지역고용 2.0」 등 지역고용정책의 향후 추진방향 안내 - 지역일자리 MAP 등 추진과제 안내 등	대면
	10.7.	- 지역 일자리사업의 향후 추진방향과 지자체 우수사례 안내·설명 - 「지역일자리 MAP」 가상시연 등	대면
2023	3.17.	- '23년도 지역고용정책 방향 안내 -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안내 - '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추진계획 안내 등	대면
	11.3.	- 지역고용정책 우수사례 공유 - '24년 지역 일자리사업 주요 운영 방향 설명 - '23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집행관리 방향 설명 등	대면
	12.4.	- 청년 자문단 지역간담회 - 산업별(조선업, 뿌리, 반도체, 농업, 관광) 성과 공유회 - '24년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방향 공유 등	대면
2024	3.14.	- 지역일자리 MAP 시연·설명 - 지역별 주요 일자리사업 추진방향 공유 - '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추진계획 안내 등	대면

*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한편, 고용노동부는 동 예산 중 일부를 고용노동부 지방청으로 재배정하여 지역별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개최하고 있는데, 2023년 175회, 2024년 9월까지 191회의 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 및 고용노동부 지방청 담당자 약 10여명 내외 규모로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4년 9월말 기준 지역별 실무협의회 개최 개요]

지방청명	주요 내용	개최 횟수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 2024년 청년성장 프로젝트 및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공모 관련 협의 - 2024년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컨설팅 - 청년도전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일정 공유 - 고용노동부 정책 참여 및 협업 공유 -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논의 및 고용노동정책 홍보 - 서울지역 관광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논의 등	52회
충북지방 고용노동청	- 2024년 상반기 뿌리산업 관련 사업추진 실적 점검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 중간점검 주요 이슈 점검 - 2024년 경기 중부권역 기업지원 정책설명회 개최 -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관련 컨설팅지원 간담회 -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지원사업 관련 논의 - 반월산업단지 등 제조업 인력부족 해소 위한 외국인 이주 민 고용 활성화 방안 논의 등	32회
부산지방 고용노동청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 지침 설명 및 추진실적 공유 - 협력사 상생협력 지원사업 현황 공유 및 상생협약 초안작성을 위한 주체별 역할 논의 - 경남조선업플러스 사업 실적보고 - 청년도전지원사업 협업 논의 - 울산지역 외국인 근로자 안정화를 위한 실태조사 현황 보고 - 울산지역 조선업, 자동차산업 관련 주요 이슈 논의	70회
대구지방 고용노동청	- 2024년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추진성과 및 계획 공유 - 경북 주요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간담회 - 지역산업맞춤형사업 지침 안내 - 지역일자리상황 공유 등	7회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 지역 일자리사업 설계 및 계획서 작성 방법 교육 - 지역산업맞춤형사업 중간평가 결과 피드백 - 청년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 청년고용창출 추진실적 점검 - 지역산업 특성 반영한 22개시군 일자리 추진실적 보고 및 평가 등	14회
대전지방 고용노동청	- 2024년 일자리대상 시·도 평가 - 2024년 충남·대전·세종 일자리 코어 협의체 회의 - 2024년 지역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및 상반기 점검결과 공유 - 2024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관련 업무협의 - 보령화력 5,6호기 폐지 관련 고용안정 지원 대책 논의 등	16회

* 주: 협의회 건별 개최내역 중 주요 내용을 발췌·정리함.

**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 공유 및 의견 청취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다만, 동 사업은 법률 등에 근거하여 구성된 협의회 또는 위원회 등의 법률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아닌, 지자체 및 지방청의 관련 사업 담당자들 간의 임의적 업무 협의 성격의 비용으로서, 별도의 세부사업을 통한 사업비 편성이 적절한지, 또한 이를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동 사업의 협의회 개최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본부 및 지역 협의회 모두 고용노동부가 일반회계 또는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하여 자치단체에 보조하여 추진 중인 사업³¹⁾의 집행을 위한 협의회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해당 지역별 고용 관련 현안과 관련한 현황 공유 및 대책 논의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 협의 비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 예산 내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부족분이 있는 경우 또는 일반적인 고용노동부 정책에 대한 설명회 등을 위한 경비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실·국 또는 고용노동부 본부의 기본경비³²⁾ 예산

31)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지역발전특별회계, 2025년 예산안 1,078억 6,400만원), 일자리 대책지원 및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일반회계, 2025년 예산안 33억 6,000만원),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일반회계, 2025년 예산안 2,978억 9,400만원) 등

32)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기본경비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각 부서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위해 자율적으로 내역을 결정하여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을 통해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또한 특정 지역의 고용 관련 현안과 관련한 현황 공유 등의 업무 협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고용 현안을 총괄하고 있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개별적으로 기본경비가 편성³³⁾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특히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 예산을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집행하고 있는바, 그 근거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4조³⁴⁾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서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들고 있음.

그러나 동법 시행령은 법률에 따른 지원의 내용에 대하여 ‘사업 비용의 전부나 일부’로 규정하고 있는바³⁵⁾ 이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 직접사업비 지원의 근거이며 부수적인 협의 비용을 별도로 편성할 근거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고용보험기금이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수입으로 하고 있고 핵심 사

경비’로 정의하고 있음.

33) 2025년 각 지방청별 기본경비 예산안은 서울 19억 300만원, 부산 16억 7,400만원, 대구 11억 2,000만원, 중부 27억 4,700만원, 광주 12억 100만원, 대전 11억 6,600만원 등임.

34) 「고용보험법」 제34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가 그 지역에서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5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단체가 지역 내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내용, 지원의 요건·내용·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업이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등 보험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기금 사업이 아닌 일반회계 또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추진을 위한 부수적인 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동 사업을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따라서 이를 종합할 때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 예산을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추진하되, 협의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하고 그 외 비용은 기본경비를 통해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청년고용정책관 · 통합고용정책국]

(1)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일반회계, 1032-303)

<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사업(2015년~, 출연·보조)은 대학 내 취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고교 재학생, 대학 재학생, 졸업생, 지역청년에 대해 진로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 인식을 전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2030 자문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90억 8,300만원(34.9%) 증가한 1,122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회계연도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 (B)	증감 (B-A)	(B-A)/A
		본예산 (A)	집행액 (‘24.7)			
■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40,563	83,147	81,132	112,230	29,083	34.9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40,272	82,801	81,037	111,884	29,083	35.1
· 2030 자문단 운영	67	67	12	67	-	-
· 운영비	224	279	83	279	-	-

* 자료: 고용노동부

내역사업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은 대학 내 취업 지원 인프라를 통해 재학단계부터 진로상담·설계, 취업 역량 강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 지역청년까지 취업지원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내내역사업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과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졸업생 특화프로그램(신규)으로 구성됨.

동 사업의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90억 8,300만원(35.1%) 증가한 1,118억 8,400만원 편성되었음.

[2025회계연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24.7)		2025년 예산안 (B)	증감 (B-A)	(B-A)/A
		본예산 (A)	집행액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40,272	82,801	81,037	111,884	29,083	35.1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31,703	37,664	37,145	36,464	△1,200	△3.2
·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8,569	38,937	37,916	46,320	7,383	19.0
·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	6,200	5,976	9,100	2,900	46.8
·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	-	-	20,000	20,000	(순증)

* 자료: 고용노동부

[2024년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주요내용]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학 내 취업지원 기능·인프라를 통합한 청년 친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재학·졸업생·지역청년 대상 취업상담, 취업지원 프로그램*, 기업 매칭,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등 제공

* 자기소개서 컨설팅, 모의면접, 현직자 멘토링, 기업탐방 등

** 지역 청년 중심 지역·산업 및 대학 특성을 반영한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1:1 상담을 기반으로 저학년은 직업·진로 탐색과 설계(희망직업 포트폴리오), 고학년은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및 훈련·일경험 연계 등 취업역량 향상 지원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직업계고 등 고교생까지 맞춤형 서비스 확대('24년 직업계고 160여개교 대상 서비스 개시)

* 진로탐색·설계, 취업활동계획 수립, 고교생 특화 취업프로그램 운영, 기업 탐방, 매칭 지원 등

□ 지원 사항

- (지원 대상)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 (지원 규모)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21개교,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53개교,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20개교

* 자료: 고용노동부

<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미취업 졸업생 적극적 발굴 및 사업대상 에 지역청년 포함 필요 >

2025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은 졸업 후 미취업자를 발굴하고 1:1 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졸업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근 기업의 수시·경력직 채용 확대와 일경험 등 구체적인 직무 역할을 가진 청년에 대한 선호 경향을 반영하여 졸업생들의 취업준비를 돕고 취업 준비기간의 장기화를 예방하려는 목적임.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사업 주요내용]

- 사업목적: 졸업 후 미취업 청년들을 발굴하여 적극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
→졸업 후 취업소요기간 단축 등 장기 니트화 방지
- 사업대상 : 미취업 졸업생
- 사업내용 : 부처(교육부 등) 간 정보연계를 통해 고용서비스 제공 사전 동의한 졸업생의 취업 현황 조회 후 미취업자 발굴,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졸업생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고용복지⁺센터까지 연계

* 미취업자 1:1컨설팅, 졸업생에게 직무 관련 과제를 부여하고 현직자 피드백 등

동 사업은 부처(교육부 등) 간 정보 연계를 통해 고용서비스 제공에 사전 동의한 학생에게 졸업 이후 2년까지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으로,

대학 장학금 신청(장학재단) 시('25년 1학기~) 개인정보 제공 및 고용서비스 수집에 대해 동의한 학생의 정보를 연계하여 졸업 이후에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고용전산망 조회를 통해 취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미취업 졸업생에게 서비스 안내 및 참여 의사를 확인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적극 연계할 계획임.³⁶⁾

2025년에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20개교를 통해 졸업생 6만명에 대해 지원할 예정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운영 예산 200억원이 반영되었음.

[2025년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24) 0 → ('24) 20,000백만원(신규)

- (보조, 일반형) 80백만원 × 60개교=4,800백만원
- (보조, 거점형) 200백만원 × 60개교=12,000백만원
- (출연) 전산망 개선 3,000백만원
- (홍보비) 200백만원

기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도 재학생 외 졸업생·지역청년 등에게 서비스를 개방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 중인 취업상담 및 취업프로그램에는 재학생의 참여율이 높은 상황임.³⁷⁾ 이에 고용노동부는 새롭게 졸업생을 발굴하여 적극적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임.³⁸⁾

36)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구축(25년)을 통한 미취업 청년 대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은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음.

[권역별 시범대학 선정 현황]

서울	경기	부산·경남	대구·경북	충청	전라
건국대, 성신여대	단국대	동의대	대구가톨릭대, 계명대	배재대	전주대

37) 졸업생 취업상담 참여자수: ('23) 1,524,578건 중 122,105건(8%)

졸업생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수: ('23) 1,257,251건 중 44,498건(3.5%)(‘24.8월)

⇒ 전체 참여자 수 880,292건 중 68,956건(7.8%)

38) '23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예산 실행률 98%

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예산('23년 실집행률 98%)으로는 추가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별도로 편성함으로써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재학생 지원 편중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2025년 1학기 대학 장학금 신청 시부터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및 고용서비스 수집에 대한 동의 절차는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바 2025년 사업수행을 위한 미취업 졸업생 발굴에는 정보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내년도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졸업생 취업현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야할 것으로 보임.

한편, 2023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상별 참여 인원 현황을 보면, 졸업생과 지역청년 모두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고,

[2023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대상별 참여 인원]

구분	취업지원 프로그램			기업 발굴·매칭		
	(명)	졸업생 (비율)	지역 청년 (비율)	(명)	졸업생 (비율)	지역 청년 (비율)
합계	1,311,034	45,837 (3.5%)	108,499 (8.3%)	93,387	18,543 (19.9%)	35,042 (37.5%)

* 자료: 고용노동부

2023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아도 재학생 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비해 졸업생 및 지역청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비율이 현저히 낮음.

[2023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지원대상	재학생 (비율)	졸업생 (비율)	지역 청년 (비율)
취업지원 프로그램(중)	1,156,698 (88.2%)	45,837 (3.5%)	108,499 (8.3%)

* 자료: 고용노동부

이러한 운영 현황을 고려하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은 졸업생 뿐만 아니라 지역청년의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졸업생 대상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면접, 자기소개서 작성, 직무 관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바,³⁹⁾ 해당 수요에 맞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역청년의 수요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지역청년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

39) I.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수요조사 결과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사례(건국대)]
 ○ 2024학년도 2학기 현직자 동문선배 간담회 프로그램 운영 전 4학년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사전조사 설문 실시
 ○ 전체 응답자 182명 중 졸업생 응답자 약 40명의 경우 면접 관련 프로그램(면접특강, 모의면접, AI면접 등), 자기소개서 작성 프로그램(특강, 자소서 작성 등), 직무 관련 프로그램(직무 컨설팅, 현직자 직무 특강 등), 1:1 취업상담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미취업 졸업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대학생플러스센터 프로그램 참여율이 낮은 지역청년도 동 사업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일반회계, 1051-305)

<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사업(2006년~, 직접·출연·보조)은 노동시장 진입 이전 단계의 청년층에 대하여 진로지도, 일경험 및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직무를 경험하고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청년 취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37억 8,100만원(22.0%) 증가한 2,978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회계연도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 (B)	증감 (B-A)	(B-A)/A
		본예산 (A)	집행액 (‘24.7)			
■ 청년취업진로및일경험지원	117,280	244,113	179,989	297,894	53,781	22.0

* 자료: 고용노동부

내역사업인 ‘청년도전지원’ 사업(2021년~, 지자체 경상보조)은 지자체와 협업하여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취업역량강화 등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실업초기 청년 조기개입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니트(NEET)⁴⁰⁾상태로 전환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40)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상태도 아닌 사람을 지칭(Not in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억 2,000만원(1%) 증가한 716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청년도전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산현액 (A)	집행액 ('24.7)			
· 청년도전지원	34,858	70,933	64,428	71,653	720	1.0

* 자료: 고용노동부

<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지원단가 등 조정 필요 >

청년도전지원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성장프로그램’ 사업은 청년카페 운영과 직장적응프로그램 제공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2024년)을 청년카페 운영 사업으로 재편성한 것으로,⁴¹⁾

지자체 운영기관(지자체·민간 컨소시엄 가능)이 미취업 청년 등의 구직단념을 예방하기 위해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한 청년고용정책 연계를 지원하는 청년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임.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41) 직장적응 지원사업은 별도의 내역사업으로 분리

[2025년도 성장프로그램 사업 내용]

(성장프로그램) 청년카페 운영 → 미취업 청년 등의 구직단념 예방 위해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 지원하는 지역사회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필요한 청년고용정책** 연계(정책 게이트웨이로 활용)

* ① (인프라 제공) 청년 초기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② (프로그램 제공)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제공

③ (후속지원) 관련 청년고용정책을 촘촘히 연계 지원하고, 참여자 취업상태 등 관리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자료: 고용노동부

현재 14개 광역자치단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국 63개소의 청년카페를 운영 중에 있음.

[지역별 청년카페 운영 현황]

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63	1	1	1	2	8	1	2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	19	7	2	11	6	1

*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도 성장프로그램 사업예산 산출내역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전년도에 편성됐던 심리상담 지원은 폐지하였고 프로그램사업비는 변경된 국고보조율(70%→80%)⁴²⁾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2억원

(14.3%) 증액하였음.

[성장프로그램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카페운영) 22,400백만원 ①프로그램 사업비(154억원) = 1인당 월 44만원<월 20시간 기준>×5만명 ×0.7 ②심리상담 지원(70억원) = 1회(10만 원)×10회×1만명× 0.7	성장프로그램 17,600백만원 - 프로그램사업비 50,000명×44만원 ×0.8

한편, 2024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의 9월 기준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집행률은 77.6%이나, 실집행률이 32.8%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청년카페의 경우 목표인원 대비 참여율 또한 63.3%로 저조함.

[청년성장프로젝트 예산집행 현황(2024.9 기준)]

(단위: 백만원, 명, %, 2024. 9월말 기준)

구 분	예 산			인 원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목표인원	참여인원	참여율
총 계*	25,100	8,240	32.8	57,000	39,433	69.2
청년카페	19,400	4,894	25.2	52,000	32,913	63.3
직장적응 지원 사업	4,400	2,451	55.7	5,000	6,520	130.4

* 집행률은 77.6%로 後 집행되는 보조금 사업의 특성상 실집행률과 차이가 있음
 ** 예산 총계는 운영비 포함
 *** 자료: 고용노동부

42)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장기실업 지역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과의 유기적 연계 강화 등을 위해 자치단체 보조율을 '24년 국비 70%에서 '25년 80%로 변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2025년 사업지원 목표인원과 프로그램 지원단가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는바, 동 사업의 집행상황을 고려할 때 목표인원 및 프로그램 지원단가 산정이 합리적인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프로그램 지원 단가는 월 20시간 기준 44만원(지방비 포함)으로 책정되어있는데, 본 사업이 청년 대상 인프라 및 초기상담을 포함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지자체별로 청년카페 운영에 소요되는 단가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사업실적을 고려하여 목표인원 및 프로그램 사업비 평균단가를 면밀하게 재산정하고 이를 통해 사업예산의 절감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⁴³⁾

〈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및 육성패키지: 지원 확대에 따른 관리방안 마련 필요 〉

내역사업인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및 육성패키지’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정보제공, 인재에 대한 투자 확산을 위해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 인재육성 실적 등을 두루 갖춘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임.

43)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목표인원의 경우는 청년카페의 경우 10.18. 기준 목표인원 대비 참여인원 비율이 72.3%로, 현 추세 고려 시 12월까지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2025년에는 기초자치단체도 단독으로 사업 참여가 가능하여 신청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입장임.

*참여율: (9월말) 63.3% → (10.18.기준) 72.3%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억 2,500만원(235.5%) 증가한 23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및 육성패키지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24.7월말)		2025년 예산안 (B)	증감 (B-A)	(B-A)/A
		본예산 (A)	집행액			
· ^{가칭}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및 육성 패키지	790	690	483	2,315	1,625	235.5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양질의 일자리 정보제공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발표하여 지원하여왔으나,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한 청년 인지도가 낮고 선정기업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기존 ‘청년친화강소기업’ 사업을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일자리의 질뿐만 아니라 기업경쟁력도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및 육성패키지’ 사업으로 개편하여 2025년 예산안에 반영하였음.

해당 사업에 따라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고용장려금 등 고용노동부 지원제도 우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우대 등 기존 지원 혜택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참여 시 우대, 연수지원 등 혜택을 지원받게 됨.

또한 선정기업 500여 개소 중 250여 개소에는 근무환경 개선에 기 투자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으로('25년 정부예산안: 기타보전금 (310-04) 15억원), 기업 규모에 따라 300~7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임.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및 육성패키지 사업 주요 개편 내용]

구분	주요 개편내용									
선정규모/ 유효기간	○ 533개소/3년('24) → 500여 개소/3년('25)									
선정기준	○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기준 토대로 중기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선정요건 등 추가·보완 ❶(결격요건) 임금체불(명단공개), 부당해고(확정),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처벌 뿐만 아니라 국세·지방세 체납, 취업규칙 미신고 및 채용절차법 위반 시 선정 배제 ❷(선정지표) 일생활균형, 청년고용 등 청년친화 심사지표를 토대로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률, 교육훈련 등 기업경쟁력 관련 심사지표 추가									
지원내용	○ (지원내용) 고용안정장려금 등 고용부 지원제도 우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등 혜택* 뿐만 아니라, 중기부 혜택** 동시 제공 * ▲일학습병행학습기업 선정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 ▲병역지정업체 지정 ▲신한은행 특별협약 보증 우대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참여 시 우대, 연수지원, 일자리창출기업 기술보증우대 등 - 또한, 선정기업 중 평가 상위 250여개 기업에는 근무환경 개선 비용 추가 지원									
<table><tr><th>기업 규모</th><th>기업 투자비용 대비 지원비율</th><th>지원금액</th></tr><tr><td>100인 미만</td><td>70/100</td><td>최대 700만원</td></tr><tr><td>100인 이상</td><td>50/100</td><td>최대 300만원</td></tr></table>		기업 규모	기업 투자비용 대비 지원비율	지원금액	100인 미만	70/100	최대 700만원	100인 이상	50/100	최대 300만원
기업 규모	기업 투자비용 대비 지원비율	지원금액								
100인 미만	70/100	최대 700만원								
100인 이상	50/100	최대 300만원								

*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고용노동부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하여 결격사유 발생 기업 등은 선정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취소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선정 건수	선정취소 건수
2020년도	1,280	4
2021년도	1,222	5
2022년도	1,214	5
2023년도	1,000	3
2024년도	533	2

* 자료: 고용노동부

선정취소 사유는 주로 폐업·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고용보험 소멸, 산재사망사고 발생, 부당해고 등 사회적 물의 발생 등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취소 사유]

(단위: 개소)

구분	취소사유	건수
2020년도	고용보험 소멸(인수합병, 폐업)	2
	산재 사망사고 발생	2
2021년도	고용보험 소멸(인수합병, 법인설립)	5
2022년도	산재 사망사고 발생	1
	고용보험 소멸(인수합병)	3
	사회적 물의(부당해고 확정)	1
2023년도	지방공기업	1
	고용보험 소멸(인수합병)	1
	사회적 물의(부당해고 판정)	1
2024년도	고용보험 소멸(인수합병, 폐업)	2
합 계		19

*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에 신규편성되는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사업은 선정요건에 기업경쟁력이 추가되고 선정기업에 대한 우대혜택이 더욱 확대되는바, 선정기업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해 보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에 대한 환수 규정을 마련하는 등 선정 기업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기업선정 및 사후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히 해야할 것으로 보임.

(3) 공정채용문화확산(일반회계, 1051-307)

<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

‘공정채용문화확산’ 사업(2022년~, 직접·출연)은 능력중심의 공정채용문화가 민간부문에 자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정·투명한 채용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채용절차법 운영 업무(점검, 제재 부과 등) 전산화를 추진하는 사업임.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8억 5,700만원(50.7%) 감소한 27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회계연도 공정채용문화확산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B)	증감 (B-A)	(B-A)/A
		본예산 (A)	집행액 (‘24.7)			
■ 공정채용문화확산	3,901	5,631	3,821	2,774	△2,857	△50.7
· 공정채용인프라구축	3,771	3,821	3,821	2,600	△1,221	△32.0
·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운영	130	1,810	0	174	△1,636	△90.4

* 자료: 고용노동부

〈 중소기업 채용관리솔루션 활용지원 사업: 사업 성격에 맞는 비목 편성 필요 〉

내역사업 중 ‘공정채용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은 능력중심의 공정 채용 문화가 민간에 자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과 청년을 위한 공정채용 여건 조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6억원으로 편성되었음.

[공정채용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예산안 편성 내역]

공정채용 인프라 구축 지원: 2,600백만원

- 중소기업 채용관리솔루션 활용지원 사업(신규): 1,700백만원
- 기업교육사업: 400백만원
- 공정채용운영실태조사: 240백만원
 - * 공정채용실태조사 40백만원
 - * 공공·민간 모니터링 200백만원
- 공정채용 문화확산지원: 260백만원
 - * 공정채용 문화확산 홍보: 200백만원
 - * 공정채용 매뉴얼 개편 및 활용지원: 60백만원

* 자료: 고용노동부

내내역사업 중 2025년 신규사업인 ‘중소기업 채용관리 솔루션 활용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채용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채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채용관리 솔루션(이하 ‘ATS⁴⁴⁾’)⁴⁵⁾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사업비 17억원은 전액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편성되었음.

44) Applicant Tracking System

45) AI 등을 통한 채용업무 프로세스 전산화 시스템(Applicant Tracking System); (주요기능) 지원서 관리, 이력서 스크리닝, 채용일정 관리·안내, 평가 보고서 생성 등

지원대상은 ATS를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 운영기관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서비스 제공기업⁴⁶⁾의 ATS를 도입한 중소기업 4,000개소에 대해 지원 한도[50만원(자부담 20%)] 내 솔루션을 자유로이 활용하도록 할 계획임.

[중소기업 채용관리솔루션 활용지원 사업예산안 편성근거]

◎ 중소기업 채용관리솔루션 활용지원 사업(신규): 17억원

(내역) 4,000개소(전체 중소기업 8만개소의 5%) X 50만원 X 0.8(자부담 0.2) + 운영비 100백만원

* 자료: 고용노동부

ATS는 지원자 접수, 개인정보 관리, 면접 일정 관리 등 일련의 채용과정을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관리해 주는 서비스로, 이를 통해 채용절차법을 준수한 채용 데이터 관리, 채용일정 변경·채용결과 자동 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감감이 채용관행, 고지 없는 채용광고 내용 변경 등 청년 구직자 피해사례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ATS 이용이 저조한 편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및 구직자 보호를 위해 ATS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⁴⁷⁾

46) ATS 상 채용 관련 법령 위반 방지 기능 + 구직자 친화적 채용방식 도입 시 선정

47) ATS 산업의 규모는 21년 기준 23.5억 달러 수준으로, 30년까지 평균 6.9% 성장하여 42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Polaris, '22.), 미국의 경우 채용 효율화를 위해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상당수의 기업이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고(500대 기업의 90%, 중소기업의 20%가 ATS를 주기적으로 활용), 유럽은 GDPR(EU 개인정보보호규정) 등을 준수하면서 도입중임. 특히 영·독·프 등 주요국가의 도입률이 높음.(출처: 고용노동부)

[ATS의 구직자 대상 주요 제공 서비스]

- ① (채용 관련 법령 준수) ATS를 사용 시 개인정보 관련 채용서류 자동 파기 등 채용 법령 자동 준수 가능
 - * ▲ 채용절차법 제11조: 보관기관 도과 후 구직자의 채용서류 파기 의무(시정명령, 과태료)
 -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 파기 의무(과태료)
- ② (채용과정 안내) 접수사실, 채용일정·채용결과 등 채용과정 및 변경사항을 구직자들에 자동으로 고지 → 채용절차법 준수* 및 구직자들의 알권리 보장 가능
 - * ▲ 채용절차법 제8조: 구직자에 채용일정·지연 사실, 채용과정 변경 등 고지의무
 - ▲ 채용절차법 제10조: 채용대상자 확정 시 채용여부 고지 의무
- ③ (채용정보 제공)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인재상·업무내용·복지 등 안내 → 구직자의 지원여부 결정에 도움, 청년 이직 방지 가능
 - * 잡코리아 설문('22년): ▲ 첫 직장에서 퇴사한 사유: '적성에 맞지않는 직무'가 1위(26.3%)
 - ▲ 첫 직장에 계속 다니는 이유: '직무가 적성에 맞아서'가 1위(28.9%)

*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동 사업은 ATS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임. 즉,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정책상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동 사업예산을 “국가의 사무”를 민간에게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민간위탁사업비’⁴⁸⁾로 편성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임.

첫째, 민간위탁사업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는 개별 법령에 의해 국가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하는 사업 방식으로, 국가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가 있

48)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민간위탁사업비’는 국가사무를 민간의 명의·책임하 행사(민간위탁)시 비용임.

어야 함. 그러나 동 사업은 그러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고용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제3호⁴⁹⁾를 근거로 본 사업을 편성하였다는 입장이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로 구인자 및 구직자의 권리·의무 사항을 정한 것이고 「고용정책기본법」은 고용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가의 시책 수립 근거를 정한 것으로, 본 사업에 대한 국가의 사무 및 민간위탁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둘째, 동 사업의 목적은 채용절차법 준수 및 구직자 보호를 위해 ATS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향후 사업의 효과 및 활성화 상황에 따라 사업 존속 여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러나 동 사업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보조사업연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외부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⁵⁰⁾

49)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 ① 국가는 민간 고용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고용서비스 전문가의 양성
2. 공공부문과 민간의 고용 관련 정보망의 연계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고용서비스 제공사업 중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과 그 사업의 위탁
4. 우수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인증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해당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

셋째, 보조사업 성격의 사업을 민간위탁사업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위탁계약에 의하여 집행관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부정 사용 등에 대한 제재 수준이 낮아지거나 사후평가·정산 등의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⁵¹⁾은 보조금의 부정청구·부정사용 시에는 5년 이내의 보조사업 참여 제한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정산업무에 있어서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⁵²⁾에 따라 일정기간 내 정산절차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위탁사업의 경우에는 근거법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위탁계약 체결 시 손해배상 등 제재조항을 명문화하도록 하고 있으나,⁵³⁾ 사업수행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령상 의

도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1)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1.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부정청구 및 부정사용시 반환을 명함)

52) 제27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6조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3. (생략)

53)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

무위반에 비하여 그 제재수준이 미약할 우려가 있음.⁵⁴⁾

이 외에도 동 사업을 민간위탁사업 방식으로 수행할 경우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운영기관 선정업무 및 집행관리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음.⁵⁵⁾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신규사업인 중소기업 채용관리솔루션 활용지원 사업을 사업의 성격에 맞게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운영기관 선정 및 집행을 철저히 하고, 객관적인 외부평가를 통해 내실있게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임.

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54) 「국가계약법」에 따른 제재조치는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 이상) 환수, 사업비 환수, 지체상금(물품 구매의 경우 1천분의 0.75) 부과 등이며, 계약 위반 시 위탁 참여제한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임.[법 제12조(계약보증금), 제26조(지체상금),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55)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조금관리정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선정 및 자격확인 등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출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이력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급부금 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급부금의 수급 이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5. 「국가재정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

6.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

7. 그 밖에 보조사업의 효과적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청년미래플러스(일반회계, 1051-308)

<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

‘청년미래플러스’ 사업(신규, 보조)은 산업별 협회 또는 산업별 인적 자원개발위원회(이하 ‘ISC’⁵⁶⁾)가 회원사인 대·중견기업과 협업하여 구직청년의 취업 및 재직청년의 산업 내 성장까지 청년고용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에는 2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5회계연도 청년미래플러스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B)	증감 (B-A)	(B-A)/A
		본예산 (A)	집행액 (‘24.7)			
■ 청년미래플러스	-	-	-	2,000	2,000	(순증)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해당 산업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 또는 청년 신입직원(만 15~34세 이하)으로, ①구직청년에게는 산업특화 실무중심의 컨설팅, 직무교육, 멘토링 등 산업 특성에 따라 유연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과 구인기업 매칭 등 취업 연계를, ②재직청년에게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맞춤형 OJT, 멘토링, 경력설계를 지원하여 산업 내 (중간)관리자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⁵⁶⁾ Industrial Skills Council

동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수행될 예정이며, 2025년도 예산안은 3개 업종별 프로그램 운영비 19억 5,000만원과 일반수용비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청년 미래플러스 사업예산안 편성근거]

◎ 청년 미래플러스 : ('24) - → ('25요구) 20억원

(내역) 업종별 3개 프로그램(3개 프로그램×650백만원=1,950백만원), 일반수용비(50백만원)

* 자료: 고용노동부

세부 운영방안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망산업의 ISC 또는 산업별 협회를 운영기관으로 공모·선정하고, 운영기관은 산업별 수요와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자율 구성하며, 청년은 본인에게 필요한 단계를 선택하여 이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임.

〈 통폐합된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 있는 운영 필요 〉

2025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청년 미래플러스 사업은 특정 산업별 협회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함으로써 ①구직청년 대상 IT, 바이오, 자동차 등 특정 산업(직무)에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및 회원사 기업 취업 연계, ②재직청년 대상 경력 설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이 ‘산업 단위’의 경력형성·개발,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청년 취업 지원 사업과 차별성 있다는 입장임.

-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취업 준비 청년 대상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에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과 청년일경험지원 사업이 있음.

[현행 고용노동부 소관 청년 대상 취업 지원 사업 요약]

세부사업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1032-303)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1051-305)
내역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청년일경험지원
사업목적	대학의 분절된 취업지원 기능 및 인프라를 통합·연계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청년 친화 고용서비스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	능력중심 채용 트렌드 확산에 맞춰 청년의 직무 관련 경험 및 경력 기회를 제공하여 실효적 직무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 달성
사업대상	고교생, 대학 재학생, 졸업생, 지역청년	미취업 청년
사업내용	고교생, 대학 재학생, 졸업생 대상 맞춤형 진로설계, 훈련·일경험 등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청년의 선호를 반영한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지원형, 기업탐방형)
지원내용	선정대학에 인건비, 프로그램비, 운영 경비 지원	청년: 참여수당 기업: 운영·관리비 운영기관: 프로그램 운영비 등

그런데 동 사업은 과거 고용노동부가 실시했던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민간보조, ’20~’23년)⁵⁷⁾과 사업수행주체(산업별 협·단체)와 내용(산업계·기업의 수요를 직접 반영한 과정 운영), 수혜자(청년 구직자 및 재직자) 등이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보임.

[청년 대상 취업 지원 사업 비교]

구분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청년미래플러스
사업목적	청년층(청년 구직자, 재직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산업계·기업 수요를 반영한 훈련을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산업별 협회(또는 ISC)가 회원사와 협업하여 구직청년의 취업 지원 및 재직청년의 산업 내 성장 지원
수행주체	한국기술교육대 등 8개 기관(’23년 기준) ⁵⁸⁾	산업별 협회(또는 ISC)
정책대상	구직자 및 재직자 - 청년 참여 비율(구직 70%, 재직 50% 이상)	구직청년 및 재직청년
훈련내용	해당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고 산업계·기업의 수요를 직접 반영한 과정 운영 및 다양한 훈련방식 도입	산업 수요와 특성에 맞는 구직청년 취업지원 및 재직청년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기관 주도로 자유롭게 설계·운영
지원내용	(훈련비용) 공동훈련센터에 대해 훈련비용(실비) 지원 (인프라지원금) 산업별 협·단체 및 공동훈련센터에 대해 지원 - 산업별 협·단체: 운영비 및 프로그램 개발비 - 공동훈련센터: 운영비 및 시설·장비비	(기관당 사업비) 인건비, 프로그램비, 기타운영비 등

57) 산업계 주도로 업종·산업별 협·단체 등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청년 구직자·재직자 중심의 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공동훈련센터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1153-350)’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실시(∼’23년)]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사업은 지원기준·운영방식의 유사성과 정책방향을 고려해 기존 6개 유형⁵⁹⁾의 다른 내역사업과 함께 2024년부터 2개 유형(산업맞춤형, 하이테크형)의 내역사업으로 통합·단순화되었음.

그 중 ‘산업맞춤형’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①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협력을 위한 훈련 수요조사, 직무분석 등을 통해 맞춤형 훈련과정을 운영하거나, ②정부부처가 관련 협회 등과 정부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수행 주체나 훈련 대상, 지원 내용은 기존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사업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가 기존의 내역사업을 통합·단순화한 것은 사업수행주체와 내용, 수혜자 등이 유사한 사업을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함에 따른 중복 소지를 해소하고 재정 지출의 비효율 발생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을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통합된 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별개의 세부사업으로 다시 진행하는 것은 재정 지출의 비효율을

58) < 산업단 선정현황('23.1.1.기준) >

연번	산업분야	사업단	
		산업별 협·단체	산업형 공동훈련센터
1	정보기술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	한국소프트웨어기술훈련원
2	관광·레저	한국 MICE협회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
3	스마트제조	한국산업지능화협회	아주대학교
4	디자인·문화콘텐츠	한국디자인진흥원(디자인ISC)	홍익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5	금형, 금속가공 등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뿌리ISC)	한국산업기술협회
6	자동차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7	정보통신	벤처기업협회	한국폴리텍 서울정수캠퍼스
8	정보기술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한국IT교육재단

59)대중소상생, 전략분야, 미래유망분야맞춤, 지역산업맞춤, K-디지털 플랫폼,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더욱이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사업의 2023년도 결산 내역을 보면, 실집행률이 67.4%로 사업실적 또한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2023회계연도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목	세 목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이월액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예산 현액	집행액 (C)			
320	01	한국산업인 력공단	3,200		3,200	2,157	3,200	2,157	-	1,043	67.4

*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청년미래플러스 사업은 직접훈련보다는 경력형성·개발 상담·멘토링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을 산업단위로 제공할 계획으로, 최근 청년들의 잦은 이직과 경력설계에 대한 높은 수요를 고려할 때 청년들에게 해당 업종·직무에 정착하여 경력을 형성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동 사업은 구직청년 취업지원 및 재직청년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기관 주도로 자유롭게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인바, 과거 통·폐합된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사업의 사업단과 운영기관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의 유사·중복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사업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운영기관 선발시

프로그램 평가 기준을 정립하여 ‘청년미래플러스’ 사업이 기존 사업과 차별화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5)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일반회계, 1331-300)

<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사업(1995년~, 직접)은 남녀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하도록 장려하고,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등 피해근로자에 대한 심층 상담서비스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며, 기업의 여성고용 수준에 대한 평가, 개선지도 및 고용평등에 대한 연구, 조사,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여성고용의 양적, 질적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600만원(4.8%) 증가한 18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회계연도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 A
		본예산 (A)	집행액 (’24.7)			
■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2,470	1,790	1,148	1,876	86	4.8
· 남녀고용평등강조 기간 운영	107	100	100	100	0	(전년동)
· 고용평등상담지원	1,215	551	199	762	211	38.3
·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177	-	-	-	-	-
· 고용평등업무지원	25	12	6	12	0	(전년동)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지원	946	1,127	843	1,002	△125	△11.1

* 자료: 고용노동부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지원 사업 개요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법령에서 정하는 공공기관·단체의 장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에게 직종·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과 남녀근로자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면서,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규모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는 그 이행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3회 연속 고용기준에 미달한 사업주 등의 경우는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남녀고용평등법」 제4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규모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는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단체의 장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⑤ (생략)

제17조의4(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① 제17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는 그 이행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생략)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에 3회 연속하여 제17조의3제1항의 기준에 미달한 사업주로서 제17조의4제5항의 이행촉구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의 사망·기업의 소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4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제출의무 등의 부과대상 사업) ① 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사업의 경우에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제1호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전년도에 매월 고용한 월평균 근로자 수의 연간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算定)한다.

내역사업인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지원’ 사업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기업의 여성고용 수준에 대한 평가, 개선지도 및 고용평등에 대한 연구, 조사, 교육, 홍보 등을 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2,500만원(11.1%) 감소한 10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고용노동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⁶⁰⁾ 및 「노사발전재단에 위탁·보조하는 사업 고시」⁶¹⁾에 따라 노사발전재단⁶²⁾과 매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국가 사무 위탁의 경우 민간위탁사업비목 계상 필요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의 근거 법률인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대한 국가와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①사업주가 제출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업무와 ②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연구·교육·홍보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⁶³⁾

60)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61) 제2조(위탁·보조사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사발전재단에 위탁·보조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고용상 성차별·성희롱 예방 및 남녀고용평등 촉진 지원에 관한 사업

62)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 ① 국가는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설립한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노사 주도의 자율적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63) 제17조의4(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① 제17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는 그 이행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⑤ (생략)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생략)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연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개별법령에 의해 국가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으로 계상하여야 함.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수탁기관인 노사발전재단과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지원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예산을 일반용역비(210-14)목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임.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민간위탁의 기준,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계약의 체결, 지휘·감독, 사무편람, 처리 상황의 감사 등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해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민간수탁기관에 시정조치 및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가 가능함.⁶⁴⁾

64)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에, 일반용역비(210-14)는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비목임.

따라서 법령을 근거로 국가 사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일반용역계약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위탁기관에게는 계약서상 부여된 과업수행 의무에 대한 감독·검사의 권한만 있을 뿐 수행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및 위법·부당한 사무처리 과정에 대한 감사·시정조치 등의 권한이 없어 국가 역할의 일부를 수행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약화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률에서 규정된 국가의 사무를 위탁하는 적극 고용개선 조치지원 사업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여, 사업예산의 비목을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6) 중장년인턴제(일반회계, 1336-305)

〈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

‘중장년 인턴제’ 사업(2025년~, 직접)은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중장년층에게 다양한 직무의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직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동 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중 중장년층 지원대상 사업이 이관되어 온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36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회계연도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A)	집행액 (’24.7)			
■ 중장년 인턴제	-	-	-	3,640	3,640	(순증)

* 자료: 고용노동부

중장년 인턴제는 중장년층 중 주된 일자리를 퇴직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등 인턴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을 선정하여 참여기업에서 제공하는 1~3개월 간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하는 것으로, 참여자에게는 월 최대 150만원의 참여수당이, 참여기업에게는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의 프로그램 운영수당이 지원됨.

[중장년 인턴제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중장년층에게 다양한 직무의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구직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가능성을 제고
- 직무교육을 포함하는 인턴형을 중심으로 운영

□ 참여 유형

- (인턴형) 1~3개월 간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하여 제공
 - 전체 인턴제 운영시간의 일정 비율*은 반드시 교육시간으로 운영
- * 300인 미만 기업: 10% 이상 ~ 20% 이하, 300인 이상 기업: 20% 이상 ~ 30% 이하

□ 참여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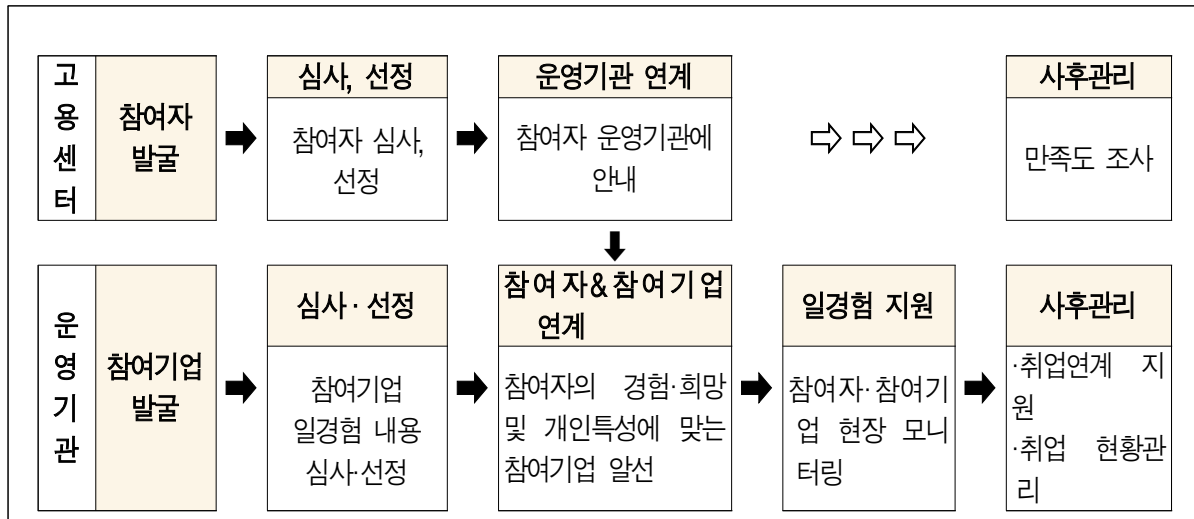
- (참여자) 중장년층 중 주된 일자리를 퇴직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여 인턴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
 - *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점에서 구직의지, 구직장애요인, 구직역량 등을 진단
 - 다만, 진단 결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일경험을 희망하고 인턴제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인 기업 등
 - 임금채불·고용보험료 체납·중대재해 사업주 등 참여 불가

□ 지원 내용

- (인턴형) ①참여자: 참여수당 월 최대 150만원,
②참여기업: 프로그램 운영수당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

* 자료: 고용노동부

[중장년 인턴제 지원 프로세스]



* 자료: 고용노동부

< 성과관리체계 마련 필요 >

동 사업의 전신인 일경험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I·II유형⁶⁵⁾과 함께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역사업⁶⁶⁾으로 수행되어 왔음.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제도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수 등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평가를 하여 왔는데, 실적 산정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I·II유형의 취업자 수와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의 수혜자 수만을 반영하고 있고 일경험프로그램의 사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별도의 성과지표는 관리하지 않고 있음.

65) 동 사업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이 결합된 I 유형, 취업지원서비스에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II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됨.

66) 세부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1234-300)는 세 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①국민취업제도 I 유형, ②국민취업제도 II 유형, ③일경험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20~24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3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천명)	목표	-	-	15,640	15,710	15,867	'22년 피보험자 목표치대비 1.8% 상향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고용보험전산망
	실적	-	-	-	-	-			
	달성도	-	-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 (%)	목표	-	-	56	56	-	최근 3년 목표치(취업성공패 키지 포함)를 참고	국민취업지원제 도 I·II유형 취업자 수 ÷ 종료자 수	취업지원전산망 (국취)
	실적	-	-	54.4	(58.6)	-			
	달성도	-	-	97.2	(104.6)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수 (명)	목표	-	423,000	470,000	376,000	-	수급자를 대상으로 추정되 그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IAP 수급률(94%) 등을 참고하여 목표치 설정	국민취업지원제 도 I유형 총 수혜자 수	취업지원전산망 (국취)
	실적	-	324,427	207,258	212,873	-			
	달성도	-	76.7	44.1	56.6	-			

*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도 예산안에는 일경험프로그램 중 중장년 재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중장년 인턴제’ 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중장년 인턴제의 경우도 성과지표는 중장년 인턴제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와 관련성이 적은 “30~40대 여성고용률”로 설정되어 있어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중장년 인턴제 '21~'25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30~40대 여성고용률 (단위: %)	목표	신규	신규	63.8	67.0	67.1	'24년 목표치(67.0%)보다 0.1%p 상향 설정	(30~40대 여성취업자 수/ 30~40대 여성 생산인구 × 10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실적	62.8	64.5	66.9	-	-			
	달성도	-	-	104.9	-	-			

*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재정당국의 ‘1프로그램 1성과목표’ 방침⁶⁷⁾에 따라 동일 프로그램(고용평등증진) 내 예산 비중이 크고 국정과제와 연관된 ‘일·가정양립지원’ 사업의 “30~40대 여성고용률”을 프로그램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중장년 인턴제 사업은 사업예산의 대부분이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참여자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사업의 지속 여부와 방식, 적정규모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더욱 면밀히 분석·평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67) 기획재정부는 거시적·전략적 성과목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4년 성과계획서부터는 ‘1프로그램 1성과지표’를 원칙으로 세움..

-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효과를 포괄적·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정량지표로 설정하되, 프로그램 내 예산비중이 큰 사업, 국정과제 연관사업 등 사업단위의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단위 성과지표를 프로그램 성과지표로 설정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음

[2025년도 중장년 인턴제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사업예산 : 3,640백만원

○ 기타보전금(310-04) : 3,320백만원

가. 참여자 수당 2,621백만원

- 지원단가 150만원×910명×2.4개월(평균 수료기간)×0.8(수료율)

나. 프로그램 운영 수당 699백만원

- 지원단가 40만원×910명×2.4개월(평균 수료기간)×0.8(수료율)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20백만원

가. 위탁기관 기본금 91백만원

- 지원단가 10만원×910명

나. 위탁기관 과정 관리비 29백만원

- 지원단가 5만원×910명×0.8(2개월이상비율)×0.8(수료율)

○ 운영비 : 200백만원

- 일반수용비 50백만원(지침제작 등), 공공요금및제세 50백만원(참여자 재해보상보험 등), 일반용역비 50백만원(홍보,교육 등), 사업출연금 50백만원(전산 개발 및 유지)

*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중장년층의 직무능력 향상, 재취업을 제고 등 중장년 인턴제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 효과를 보다 면밀히 측정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한 환류체계를 마련하여 내실있게 사업 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직업능력정책국]

(1) 내일배움카드(일반)(일반회계, 1131-300)

<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1998년~,)은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본예산 기준, 5,849억 600만원) 대비 47억 4,500만원(△0.8%) 감액된 5,801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B)	증감 (B-A)	$\frac{(B-A)}{A} \times 100$
		본예산(A)	집행액 (‘24.7)			
▪ 내일배움카드(일반)	460,033	584,906	342,872	580,161	△4,745	△0.8
· K-하이테크 플러스 사업	-	-	-	498,116	498,116	(순증)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369,114	473,188	282,251	478,116	4,928	1.0
-첨단산업·디지털 기초역량훈련	-	-	-	20,000	20,000	(순증)
· 돌봄서비스훈련	-	35,000	7,613	33,100	△1,900	△5.4
· 일반고 특화훈련	47,202	49,230	26,695	45,557	△3,673	△7.5
· 평생크레딧	30,215	25,000	20,895	-	△25,000	(순감)
·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11,430	-	3,959	-	-	-
· 신기술 인력수급 분석 지원	900	1,000	1,000	900	△100	△10.0
· 운영비 등	1,173	1,488	459	2,488	1,000	67.2

* 자료: 고용노동부

〈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의 중도탈락률 감소 및 고용유지율 제고 노력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 재학생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내역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본예산 기준, 492억 3,000만원) 대비 36억 7,300만원(△7.5%) 감액된 455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B)	증 감 (B-A)	(B-A)/A ×100
		본예산(A)	집행액 (‘24.7)			
■ 내일배움카드(일반)	460,033	584,906	342,872	580,161	△4,745	△0.8
· 일반고 특화훈련	47,202	49,230	26,695	45,557	△3,673	△7.5

* 자료: 고용노동부

동 내역사업은 일반고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1,156~1,300시간(약 10개월) 범위 내에서 직종별 전공교육, 창의적 체험활동⁶⁸⁾을 실시하여 훈련비 전액과 월 최대 20만원의 훈련장려금을 지원함.

동 내역사업의 절차를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재학생 대상 훈련 수요를 조사한 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훈련과정을 심사·선정한 다음

68) 직업기초프로그램, 노동인권교육,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와 훈련장려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됨.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절차]

지원 대상	일반고 3학년 재학생
훈련 과정	직종별 전공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약 10개월) * 직업기초프로그램, 노동인권교육,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지원 내용	훈련비 전액, 훈련장려금(월 최대 20만원)
지원 절차	일반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훈련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적합 훈련 과정 선정 및 훈련비 지급 재학생 대상 훈련 수요조사 ⇒ 훈련과정 심사·선정 ⇒ 훈련생 모집·배정 ⇒ 훈련 실시 ⇒ 훈련비 등 지급 시·도 교육청 고용부·심평원 시·도 교육청 훈련생 훈련기관 고용센터

그런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동 내역사업의 중도탈락률과 고용유지율을 살펴보면, 중도탈락률은 10% 안팎으로 나타나고, 6개월 고용유지율은 39~53% 수준이며, 1년 고용유지율은 25~38% 수준으로 나타남.

[2018~2022년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의 훈련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참여자 수 ¹⁾	8,634	8,332	7,110	6,917	6,815
중도탈락자 수 ²⁾	904	831	761	652	788
수료자 수 ³⁾	6,614	10,456	2,640	10,270	6,009
취업자 수 ⁴⁾	4,137	5,852	1,385	5,623	3,278
중도탈락률(%) ⁵⁾	10.5	10.0	10.7	9.4	11.6
수료율(%) ⁶⁾	90.3	90.9	89.3	90.4	90.4
취업률(%) ⁷⁾	63.6	61.7	63.2	70.4	71.0
고용유지율(6개월)(%) ⁸⁾	38.5	45.1	52.8	48.6	49.4
고용유지율(1년)(%)	25.5	31.0	33.5	33.7	38.3

* 주 1) 참여자 수: 훈련시작일 기준, 훈련실시인원

2) 중도탈락자 수: 훈련시작일 기준, 중도탈락인원

3) 수료자 수: 훈련종료일 기준, 수료인원

4) 취업자 수: 수료자 기준, 수료 후 취업훈련생 수

5) 중도탈락률(%): (중도탈락자 수/참여자 수)×100

6) 수료율(%): [수료자 수/(참여자 수-조기취업훈련생 수)]×100

7) 취업률(%): [수료 후 취업훈련생 수/(수료자 수-훈련 시작 당시 실업자가 아닌 자-수료 후 불가피한 사유로 취업하지 못하는 자)]×100

8) 고용유지율(%) (고용유지자 수/취업자 수)×100

** 자료: 고용노동부

중도탈락률이 10%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훈련 수요조사 단계에서 동 내역사업의 목적 및 훈련기간 등 사업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진로 계획이 명확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학생이 참여한 것이 원인 중 하나라고 보여짐.

사업 참여 도중 진로 변경으로 중도탈락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라 다른 학생의 참여기회가 제한될 수 있고, 동 내역사업

의 훈련 기간이 10개월로 긴 만큼 학교와 교육청이 재학생을 대상으로 충분한 진로상담을 바탕으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또한, 취업률(62~71%)에 비해 고용유지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6개월 기준 38~53%, 1년 기준 25~38%), 2018~2022년 내일배움카드 사업의 6개월 고용유지율이 60%를 상회하고, 1년 고용유지율이 47~50% 수준인 것과 대비됨.

[내일배움카드 사업의 훈련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참여자 수 ¹⁾	386,283	461,356	718,113	1,054,414	940,067
중도탈락자 수 ²⁾	25,605	19,754	72,046	97,345	85,172
수료자 수 ³⁾	348,308	388,092	611,513	925,116	895,927
취업자 수 ⁴⁾	126,898	103,937	153,108	254,579	229,675
중도탈락률(%) ⁵⁾	6.6	4.3	10.0	9.2	9.1
수료율(%) ⁶⁾	90.2	87.7	90.1	91.4	91.5
취업률(%) ⁷⁾	56.1	55.9	54.2	54.1	51.6
고용유지률(6개월) ⁸⁾	62.1	62.9	59.9	61.3	62.6
고용유지율(1년)	48.9	49.9	46.9	47.8	50.0

* 참고: 내일배움카드(일반), 내일배움카드(고보) 내 직업능력개발훈련(K-디지털 기초역량 사업 제외) 참여자 기준

** 주 1) 참여자 수: 훈련시작일 기준, 훈련실시인원

2) 중도탈락자 수: 훈련시작일 기준, 중도탈락인원

3) 수료자 수: 훈련종료일 기준, 수료인원

4) 취업자 수: 수료자 기준, 수료 후 취업훈련생 수

5) 중도탈락률(%): (중도탈락자 수/참여자 수)×100

6) 수료율(%): [수료자 수/(참여자 수-조기취업훈련생 수)]×100

7) 취업률(%): [수료 후 취업훈련생 수/(수료자 수-훈련 시작 당시 실업자가 아닌 자-수료 후 불가피한 사유로 취업하지 못하는 자)]×100

8) 고용유지율(%) (고용유지자 수/취업자 수)×100

*** 자료: 고용노동부

이는 취업에 성공한 재학생이 직장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보여짐. 졸업 후 곧바로 직장 생활을 할 경우 학생 신분으로서의 생활과 큰 괴리가 발생하여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훈련 과정에 직장 적응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고, 사후관리 및 지원이 동반될 필요가 있음.

요컨대 고용노동부는 훈련 수요조사 단계에서 충분한 사업설명을 통해 취업 의지가 분명한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참여자가 취업 후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참여자의 수요에 맞는 취업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135-308)

〈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사업(1998년~, 출연)은 국가 기간산업 발전에 필요한 산업현장 수요 중심의 기술·기능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하여 한국폴리텍대학에 훈련인프라 구축과 경상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본예산 기준, 3,178억 7,300만원) 대비 102억 6,800만원(△3.2%) 감액된 3,076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B)	증감 (B-A)	(B-A)/A ×100
		본예산(A)	집행액 (‘24.7)			
■ 한국폴리텍대학운영 지원	273,527	317,873	223,398	307,605	△10,268	△3.2
· 인력개발사업	107,005	105,725	67,000	92,588	△13,137	△12.4
· 시설확충사업	22,280	46,200	37,000	41,092	△5,108	△11.1
· 정보전산화	3,771	3,921	3,300	4,779	858	21.9
· 경상경비	186,781	200,605	138,602	205,226	4,621	2.3
· 자체수입	△46,310	△38,578	△22,504	△36,080	2,498	△6.5

* 자료: 고용노동부

< 차별성 있는 외국인근로자 한국어훈련 사업 추진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인력개발사업’은 교직원 직무교육을 위한 능력개발사업, 대학안내, 학위과정 운영, 학과 신설·개편 등 한국폴리텍 대학의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2025년 예산안은 전년(본예산 기준, 1,057억 2,500만원) 대비 131억 3,700만원(△12.4%) 감액된 925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인력개발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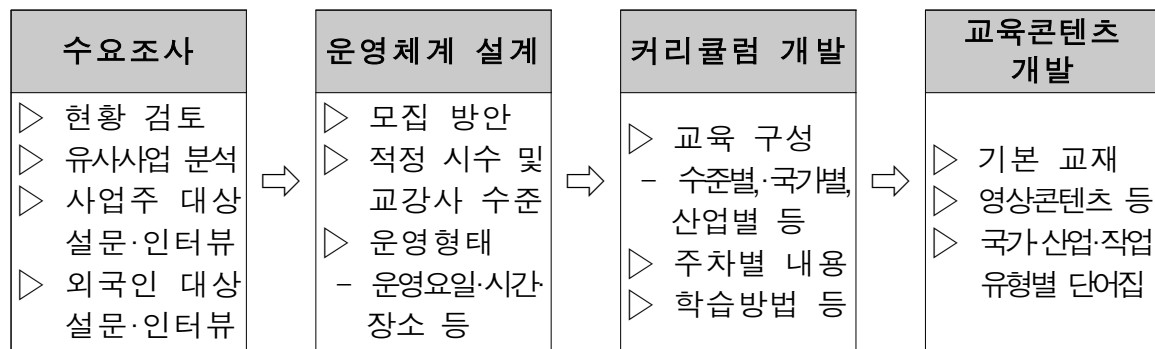
사업명	2023년 결산 [실집행액]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B)	증감 (B-A)	(B-A)/A ×100
		본예산(A)	집행액 (‘24.7) [실집행액]			
■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273,527 [264,338]	317,873	223,398 [144,337]	307,605	△10,268	△3.2
· 인력개발사업	107,005 [106,781]	105,725	67,000 [27,319]	92,588	△13,137	△12.4
- 교직원능력개발	2,863 [2,699]	2,697	1,700 [1,445]	2,697	-	-
- 대학안내	1,125 [1,125]	1,013	950 [829]	1,013	-	-
- 다기능기술자	19,089 [19,052]	18,191	14,500 [11,568]	17,749	△442	△2.4
- 전공심화과정	1,328 [1,328]	1,224	850 [728]	1,148	△76	△6.2
- 학과신설 및 개편	65,450 [65,449]	65,450	39,000 [3,790]	45,250	△20,200	△30.9
- 꿈드림공작소	17,150 [17,128]	17,150	10,000 [8,959]	15,163	△1,987	△11.6
- 외국인근로자 한국어훈련	-	-	-	568	568	(순증)
- 뿌리산업특화 교육센터 구축	-	-	-	9,000	9,000	(순증)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외국인근로자 한국어훈련’ 사업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역량향상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5억 6,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이 사업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산업별 한국어 맞춤형 커리큘럼 및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50명 규모의 시범운영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임.

[외국인근로자 한국어훈련 사업의 개발 절차(안)]



*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동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사업(고용보험기금, 1152-350)의 내내역사업인 ‘장기유급휴가훈련’ 중 ‘외국인력 특화훈련’과 사업의 목적·취지가 유사할 수 있으므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작·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장기유급휴가훈련’은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반장기유급휴가훈련’과 비전문취업(E-9) 사증(비자)을 받은 외국

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력 특화훈련’ 사업으로 나뉘어짐.

이 중 ‘외국인력 특화훈련’ 사업은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입국 초기부터 직무훈련과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여 산업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한국어 및 문화교육,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 직무기초 훈련 등이 이루어짐.

외국인근로자 한국어훈련 사업과 외국인력 특화훈련 사업을 비교하면, 전자는 외국인,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훈련만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전자와 후자 모두 외국인 등을 지원하여 직업능력개발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외국인근로자 한국어 훈련과 외국인력 특화훈련 사업의 비교]

구분	외국인근로자 한국어훈련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사업)	외국인력 특화훈련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사업)
사업 목적	한국어 교육을 통한 이주민의 초기 적응 및 정착 지원	외국인근로자 입국 초기부터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직무교육 등을 바탕으로 적응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훈련 대상	외국인,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 이주민	E-9 외국인근로자
훈련 내용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산업별 맞춤형 한국어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한국어 및 문화교육, 노동관계법 교육, 직무기초 훈련
훈련 기간 및 시기	240시간(약 4개월) 내외 예상	1~8주

* 참고: E-9 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주에게 인계되고, 사업주도 외국인근로자 인수 시 취업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주 교육(외국인근로자 고용관 및 권익보호 사항 등)을 받아야 함. 외국인력 특화훈련은 입국 시 받는 교육과 별개 사업임.

**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재편집

외국인력 특화훈련 사업이 2024년에 신설되어 운영 초기이므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라는 점과 외국어근로자 한국어훈련 사업도 2025년 신규 편성된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두 사업에서 시행하는 한국어훈련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방식으로 인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 및 한국폴리텍대학은 중소기업의 면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훈련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차별성 있게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뿌리산업특화 교육센터 구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철저한 준비 필요 〉

인력개발사업의 내내역사업인 ‘뿌리산업특화 교육센터 구축’ 사업은 한국폴리텍대학 거점캠퍼스별로 ‘뿌리산업교육센터’를 구축하려는 신규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9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뿌리산업특화 교육센터 구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실집행액]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B)	증감 (B-A)	(B-A)/A ×100
		본예산(A)	집행액 (‘24.7) [실집행액]			
■ 한국폴리텍대학운영 지원	273,527 [264,338]	317,873	223,398 [144,337]	307,605	△10,268	△3.2
· 인력개발사업	107,005 [106,781]	105,725	67,000 [27,319]	92,588	△13,137	△12.4
- 뿌리산업특화 교육센터 구축	-	-	-	9,000	9,000	(신규)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한국폴리텍대학 거점캠퍼스에 뿌리산업교육센터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기존의 학과·직종별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직자를 대상으로 학과·직종 구분 없이 지역 뿌리산업⁶⁹⁾의 수요에 맞춰 훈련을 진행할 예정임. 지역 산업체 등의 요구에 따라 훈련 기간을 4주에서 6개월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교육내용도 이에 맞추어 구성할 계획임.

[뿌리산업특화 교육센터 구축 사업의 내용]

구 분	기존 훈련방식	뿌리산업특화 교육센터 구축 사업
훈련 대상	구직자, 재직자, 채용예정자 등 다양	구직자
훈련 과정	학과·직종별로 구분	학과·직종 구분 없이 지역 산업체의 수요에 따라 포괄적으로 운영
훈련 기간	10~12개월 내외	4주~6개월 등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설정
운영 방식	학과별로 교원이 수업, 학과관리	구성된 교육과정에 맞게 유연한 수업

* 자료: 고용노동부의 제출자료를 편집

2025년도에는 우선 남인천캠퍼스, 포항캠퍼스, 순천캠퍼스에 뿌리산업교육센터를 구축할 계획으로⁷⁰⁾, 각 캠퍼스별로 장비비 25억원, 시설비 5억원이 편성되었음.

69) 뿌리산업에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이 포함되고, 보다 자세한 뿌리산업의 범위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70) 남인천캠퍼스: 남동(기계, 금속), 부평주안(자동차, 물류)
 포항캠퍼스: 포항(광물, 기계, 금속), 블루밸리(기계, 자동차, 선박부품)
 순천캠퍼스: 광양(비금속, 철강, 기계), 여수석유화학(석유화학)

[2025년도 뿌리산업특화 교육센터 구축 사업 예산 편성 내역]

- 뿌리산업특화 교육센터 구축: 9,000백만원
 - 남인천캠퍼스: 장비비 2,500백만원 + 시설비 500백만원
 - 포항캠퍼스: 장비비 2,500백만원 + 시설비 500백만원
 - 순천캠퍼스: 장비비 2,500백만원 + 시설비 500백만원

* 자료: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뿌리산업의 빈일자리 수는 2023년 3~10월 평균 2.5만 개 수준으로⁷¹⁾, 산업 현장의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뿌리산업특화 교육센터를 구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짐.

그런데 동 사업은 유연하고 탄력적인 운영 방침 등 개괄적인 내용을 제외하고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2025년 시설·장비 구축 후 본격적인 훈련이 시행되기까지 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훈련과정이 지역 산업체의 수요에 기반하여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교육과정이 빈번히 변경되면 구직자는 목표 설정이나 학습 계획 수립이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훈련교사 및 교수진이 새로운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고 보여짐.

따라서 고용노동부 및 한국폴리텍대학은 학생 및 교수진의 혼란이

7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12.29. “'23년 3차례 정부대책 발표, 빈일자리 수 8개월 연속 감소”

발생하지 않고 지역 산업체의 수요에 맞추어 안정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음.

(3)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고용보험기금, 1152-350)

〈 사업 개요 및 계획안 내역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사업(1995년~, 직접/보조/출연)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2025년도 계획액은 전년(당초 기준, 3,568억 2,800만원) 대비 511억 5,800만원(△14.3%) 감액된 3,056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사업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100
		당초(A)	2024. 7. 집행액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398,365	356,828	260,225	305,670	△51,158	△14.3
· 일반훈련	349,147	303,884	223,045	195,424	△108,460	△35.7
· 혁신형 기업훈련	-	-	-	53,867	53,867	(순증)
· 현장맞춤형체계적 훈련	23,764	32,271	24,294	35,706	3,435	10.6
· 지역산업맞춤형훈련	-	19,041	11,254	19,041	0	(전년동)
· 지역산업특화훈련	23,896	-	-	-	-	-
· 운영비	1,558	1,632	1,632	1,632	0	(전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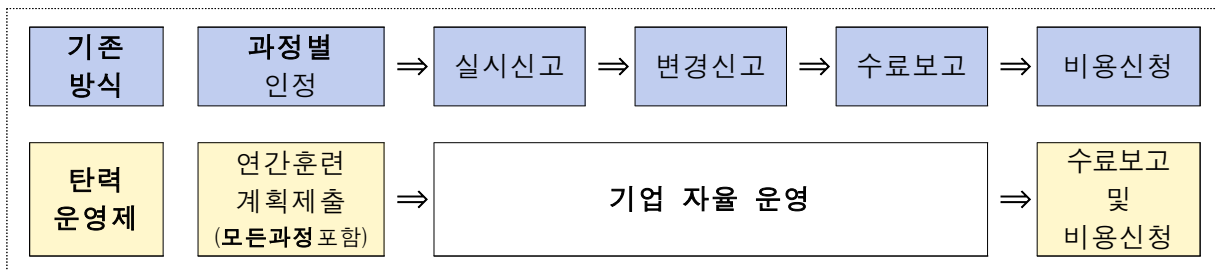
* 자료: 고용노동부

〈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혁신형 기업훈련’ 사업 계획안 편성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혁신형 기업훈련’ 사업은 기업훈련 절차 및 지원체계 개선으로 기업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최신 온라인 훈련 제공 등 양질의 기업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 신규 편성되었음.

또한, 이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탄력운영제’ 사업은 현행 사업주가 직업훈련과정을 과정마다 일일이 인정받는 방식에서 여러 과정을 한번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훈련과정 변경 시 현행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식에서 사후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주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안에 202억 8,7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탄력운영제 사업에 따른 절차]



*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도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사업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100
		당초(A)	2024. 7. 집행액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398,365	356,828	260,225	305,670	△51,158	△14.3
· 혁신형 기업훈련	-	-	-	53,867	53,867	(순증)
- 탄력운영제	-	-	-	20,287	20,287	(순증)
- 중소기업재직근로자 지원	-	-	-	11,600	11,600	(순증)
- 최신원격훈련	-	-	-	21,980	21,980	(순증)

*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동 내내역사업은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사업의 법적 근거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는 사업주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로 하여금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받도록 하고 있음.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사업의 근거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기자재를 설치·보수하는 등의 사업 5.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조사·연구,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의 개발·보급 등의 사업 6. 삭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3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직업능력개발단체”라 한다)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요건·내용 및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 등이 여러 개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정마다 일일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다수의 훈련과정을 한번에 신청하여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위와 같은 개정 내용을 담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126호)을 2024년 6월 24일 국회에 제출하였고, 2024년 9월 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현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임.

그러나 동 개정안은 다수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한번에 승인받

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기능대학의 설립·경영 추천자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는 내용, 기능대학의 분교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을 변경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가결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혁신형 기업훈련 사업의 탄력운영제는 법률 개정을 전제로 계획안을 편성한 것으로 법률안 개정 여부에 맞추어 사업 추진 여부 등 조정이 필요해 보임.

(4)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고용보험기금, 1155-350)

< 사업 개요 및 계획안 내역 >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사업(1998년~, 출연)은 국가 기간·전략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등 차세대 고부가가치산업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공급 및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2025년도 계획액은 전년(당초 기준, 552억 2,600만원) 대비 24억 6,300만원(4.5%) 증액된 576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사업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frac{(B-A)}{A} \times 100$
		당초(A)	2024. 7. 집행액			
■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52,284	55,226	43,920	57,689	2,463	4.5
· 전문기술과정	9,217	8,328	7,100	7,287	△1,041	12.5
· 신중년특화과정	4,798	4,932	4,200	5,532	600	12.2
· 하이테크과정	7,650	10,150	8,600	12,150	2,000	19.7
· 훈련장려금	3,800	4,163	2,960	4,284	121	2.9
· 기능장과정	625	625	470	603	△18	△2.9
· 소규모사업장 훈련	1,113	1,113	880	1,270	157	14.1
· 여성재취업훈련	4,756	4,756	3,800	4,756	0	(전년동)
· 교육훈련과정운영	2,315	1,544	1,100	1,488	△56	3.6
· 교과개발 및 교재발간	2,419	2,419	1,910	2,419	0	(전년동)
· 교육훈련직종개발	395	296	230	-	△296	(순감)

· 항공MRO글로벌과 정운영지원	250 [250]	-	-	-	-	-
· 신기술장비확충	12,886 [12,886]	11,700	10,000 [6,936]	11,700	0	(전년동)
· 학과신설 및 개편	2,060 [2,060]	3,000	1,320 [-]	4,000	1,000	33.3
· 이주배경 구직자 직 업훈련	-	2,200	1,350 [433]	2,200	0	(전년동)

* 자료: 고용노동부

〈 외국인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사업장훈련 사업의 철저한 준비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소규모사업장훈련’ 사업은 훈련시설이 미비하거나 훈련기관이 없는 지역 등 교육훈련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중소기업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당초 기준, 11억 1,300만원) 대비 1억 5,700만원(14.1%) 증액된 12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

동 내역사업은 훈련시설이 미비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 내 훈련시설이나 임차한 훈련시설 등에서 이동식 현장훈련이나 집체교육을 최대 60시간 시행하는 사업임.⁷²⁾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025년도 계획안에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이동식 현장훈련을 시범 운영하기 위하여 200명분에 해당하는 1억 5,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외국인근로자 대상 소규모사업장훈련 사업은 E-9 외국인근로자 도

72) 동 내역사업에서 의미하는 ‘소규모사업장’의 기준은 이동식 현장훈련의 경우 근로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장을 의미하고, 집체교육의 경우 일반 제조업은 근로자 수 300명 이하, 서비스업은 근로자 수 120명 이하인 사업장을 의미함.

입 확대에 발맞추어, 사업장 자체 훈련이 곤란한 소규모사업장 종사 외국인근로자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 대상 소규모사업장 훈련 사업의 내용]

사업목적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의 훈련 수요 및 특성을 고려한 특화 과정 개발 및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여 외국인 훈련지원 체계 마련		
사업내용	소규모사업장 참여 기업체 중 외국인 근로자		
기대효과	외국인 대상 특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맞춤형 훈련 지원을 통한 외국인 조기 근무 정착 지원 및 외국인 고용사업장 생산성 제고		
예산 산출내역	157백만원 = 200명 × 786천원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계	157	
	일반수용비	39	40개 과정 × 975천원
	여비 등	20	40개 과정 × 50천원 × 2명 × 5회
	운영수당	52	40개 과정 × 65천원 × 20h
	재료비·교재비	16	200명 × 4천원 × 20h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개발비	10	40개 과정 × 250천원
	통역서비스	20	40개 과정 × 200천원 × 2.5일
* 과정 수: 외국인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단위(5인) 훈련 인원으로 설정함			

*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소규모사업장은 사무인력 부족 등으로 동 내역사업의 혜택을 파악하지 못하여 신청이 적시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의사소통능력과 정책활용능력이 다소 미흡하여 사업주에게 사업 참여 의사 표시를 전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⁷³⁾

73) 한국폴리텍대학은 기존의 소규모사업장훈련 플랫폼을 그대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체 풀을 활용하여 수요조사와 함께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의견임.

따라서 고용노동부 및 한국폴리텍대학은 소규모사업장과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 한국어훈련과의 연계 등을 바탕으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수요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동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노동정책실]

(1) 상생협력 확산지원(일반회계, 2031-301)

<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

‘상생협력 확산지원’(2024년~, 민간위탁 및 자치단체보조 등)은 노·사 및 노·노 간의 상생 및 협력 등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4억 6,800만원(△59.3%) 감액한 85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내역사업인 ‘상생연대 형성지원(2024년 예산 50억원)’과 ‘취약근로자 참여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지원(2024년 예산 34억 1,200만원)’이 신규 편성된 세부사업인 ‘노동약자지원(일반회계, 2031-303)’에 이관 편성된 것에 기인함.

[2025년도 상생협력 확산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A)	집행액 (‘24.7)			
■ 상생협력 확산지원	-	21,010	10,261	8,542	△12,468	△59.3
· 상생임금 확산지원	-	9,725	6,184	5,918	△3,807	△39.1
· 상생연대 형성지원	-	5,000	100	-	△5,000	(순감)
· 상생의 노사문화구축	-	2,873	1,573	2,624	△249	△8.7
· 취약근로자 참여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지원	-	3,412	2,404	-	△3,412	(순감)

* 자료: 고용노동부

〈 사업수요 제고 및 적정 컨설팅 단가 설정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상생임금 확산지원’에 내내역사업으로 편성된 ‘임금체계 개편 지원’ 사업은 동일 업종 내에서 직무별 임금수준 등을 활용하여 유사한 기업 등에 대해 임금체계 개편을 동시에 지원하는 업종별 컨설팅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48억원이 편성되었음.

임금체계 개편 지원 사업은 2024년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이라는 사업명으로 60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고용노동부는 2024년 예산을 통해 업종별로 각각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컨설팅 기관 등을 통하여 참여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하고, 컨설팅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업종별 적용 가능한 표준모델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사업을 추진 중임.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자동차부품업, 석유화학업 등 3개 업종을 대상업종으로 하고, 각각의 업종별 위탁기관에 19억원의 사업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2024년 계획상 한 업종 당 약 20~30개의 참여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그러나 2024년 10월 기준 조선업 17개소, 자동차부품업 24개소, 석유화학업 17개소의 기업이 참여하여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신규사업으로서 사업 착수가 늦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업 수요가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됨.

[2024년 업종별 임금체계 컨설팅 사업 위탁 현황]

업종명	위탁기관	참여기업 수	위탁액
조선업	한국생산성본부	17개소	19억원
자동차부품업	에프엠어소시에이츠	24개소	19억원
석유화학업	KPMG	17개소	19억원

*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한편, 고용노동부의 2024년 사업 추진 현황에 따르면 개별 기업당 컨설팅 지원 단가는 약 7천만원에서 1억원 수준⁷⁴⁾이며, 2025년 동 사업 예산을 48억원으로 감액 편성하여 3개 업종별 각각 1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나 컨설팅 단가 계획은 2024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⁷⁵⁾

그러나 이와 같은 컨설팅 단가 수준은 임금체계 개선, 평가체계개선, 장시간근로개선, 평생학습체계구축 등의 영역별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인 ‘일터혁신 컨설팅’⁷⁶⁾ 사업이 각 영역별 컨설팅 단가로 설정하고 있는 850만원에 비해 높은 수준임.

이와 같은 높은 컨설팅 단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단순 임금체계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인사관리시스템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전 업종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확산이라는 사업 목적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함에 따라 컨

74) 고용노동부의 동 사업 운영기관 공고문에 따르면, 업종별 지원금액 19억원 중 3억원 이내에서 사업 운영비 및 표준모델안 마련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16억원에 대하여 기업별 컨설팅 사업비로 지출되는 구조임. 따라서 16억원을 참여기업 수로 나누면 평균적으로 기업에 지원되는 컨설팅 사업비가 도출됨.

75) 고용노동부는 물량 목표 달성 기준이 아닌 업종별 특색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의 필요 수요에 맞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2024년 지원 기업 수를 최소기준으로 하여 사업을 운영할 계획임.

76) 2024년 예산은 ‘노동시장 법제도 현장 안착 지원(일반회계, 1342-350)’의 내역사업으로 298억 2,400만원 편성, 2025년에는 타 컨설팅 사업들과 통합하여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일반회계, 2039-300)’ 사업비로 407억 5,600만원 편성.

설팅 단가를 높게 책정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고용노동부가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의 평균 단가와 동 사업의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의 평균 단가가 10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은 유사한 분야에 대한 컨설팅에 대한 단가 차이로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할 것임.

또한 고용노동부의 설명과 같이 높은 컨설팅 단가가 높은 컨설팅 수준에 기인한 것이라면 컨설팅의 내용 또한 기업의 기존 운영체계를 상당 부분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큰 바, 이는 기업들의 사업 참여에 대한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특히 고용노동부가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컨설팅을 이미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동 사업에 참여하기보다는 가벼운 수준의 컨설팅인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임.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의 영역별 지원 건수 추이]

구분	임금	평가	장시간	노사 파트너십	평생 학습	작업 조직	고용 문화	장년 고용	안전 일터
2021	342	354	506	162	238	335	177	161	209
2022	570	681	246	220	257	368	240	119	408
2023	623	723	212	281	254	316	312	95	387
2024.7.	644	772	230	246	258	623	371	190	-

*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즉, 이를 종합할 때 동 사업의 기업당 컨설팅 단가는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으로 보이므로,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 컨설팅 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높은 컨설팅 단가가 사업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음.

(2) 노동약자지원(일반회계, 2031-303)

〈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

‘노동약자지원’(2025년~, 민간보조 등)은 근로자로서 기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나 특고·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 등 기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기 어려운 일하는 사람 등 ‘노동약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주체가 되어 두텁게 보호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사업임.

동 사업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159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노동약자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A)	집행액 (’24.7)			
■ 노동약자지원	-	-	-	15,989	15,989	(순증)
· 노동약자 참여·소통 활성화 지원	-	-	-	4,446	4,446	(순증)
· 노동약자 일터개선지원	-	-	-	2,063	2,063	(순증)
· 노동약자 상생복지지원	-	-	-	6,632	6,632	(순증)
· 불법부당 노동관행 등 개선 지원	-	-	-	2,848	2,848	(순증)

*자료: 고용노동부

〈 분쟁조정협의회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성공수당의 합리적 집행기준 마련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노동약자 참여·소통 활성화 지원’(2025년 예산안 44억 4,600만원)은 노동약자를 위한 오프라인 지원 공간인 근로자 이음센터 운영 예산으로, 고용노동부는 동 내역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신설할 용도의 예산 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음.

고용노동부는 노무제공자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4년부터 노사발전재단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근로자이음센터’를 내방한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사전상담 실시 후 노무제공자가 정식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변호사·노무사·교수 등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의견 청취 및 조사를 수행하고 권고·조정안을 제시하여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충분히 보호되고 있지 못하는 노무제공자⁷⁷⁾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계획임.

동 사업의 2025년 예산안의 세부 내역은 근로자이음센터 10개소에 설치된 10개 분쟁조정협의회의 3명의 조정위원들을 대상으로, 협의회별 연 10회의 분쟁조정건수를 예상하여 위원별 회당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협의회별 연 5회의 분쟁조정 성공을 할 것으로 예상하여 위

77) 대법원은 노무제공의 실질에 나타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노무제공자 중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골프장 캐디 등의 근로자성은 부정하고 있고, 백화점 판매원, 일용 공사현장의 십장, 재택위탁집배원 등의 근로자성은 긍정하고 있음.

원별 회당 100만원의 성공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임.

[분쟁조정협의회 예산 세부 산출 내역]

- 조정위원 수당 : 6,000만원 = 20만원 × 3명 × 10회 × 10개소
- 성공수당 : 1억 5,000만원 = 100만원 × 3명 × 5회 × 10개소
- 협의회 운영비 : 2,500만원

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 과정에서 보수 미지급 등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등을 통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동 예산의 편성·집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첫째, 현재 분쟁조정협의회의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협의회 조정활동의 효과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는바 조속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2024년 6월말 기준 행정기관 소속 분쟁조정위원회는 2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⁷⁸⁾, 이외에도 공공기관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로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약관 분쟁조정협의회,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등이 있는바 이들 위원회·협

78) 정부24(<https://www.gov.kr/>) 공시자료 기준

의회는 모두 법률에 그 근거가 규정되어 있음.

이들 분쟁조정위원회·협의회의 근거법률은 해당 분야의 특수성에 따라 그 내용이 상이하나 대부분 조정의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을 명문화하고 있는바,⁷⁹⁾ 조정의 내용에 따른 집행력이 발생⁸⁰⁾⁸¹⁾하므로 분쟁의 당사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또한 이들 분쟁조정위원회·협의회의 근거법률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명문화함으로써⁸²⁾ 조정절차로 인하여 분쟁당사자의 권리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7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분쟁의 조정)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80) 「민사집행법」 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81) 다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⑦ 당사자 사이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조정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④ 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근로자이음센터에 설치 예정인 분쟁조정협의회의 경우 이러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조정의 내용에 따른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고 계약상의 효력만이 발생하는 「민법」상 화해⁸³⁾의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는 등 법적 근거가 있는 다른 분쟁조정위원회·협의회의 조정과 비교할 때 조정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노무제공자 등 노동약자를 위한 공제회 지원, 표준계약서 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칭)「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으로, 동 법률안에 분쟁조정협의회의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해당 법률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2025년에는 동 예산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바, 법적 근거 미비에 따른 협의회 운영의 효과성에 한계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노동부는 분쟁조정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 조정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분쟁조정협의회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노무제공자 중 일부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대상이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제도의

83)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중복성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45조제1항제6호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거래상 지위의 남용과 관련된 노무제공자에 대한 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하고 있음.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심사지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에서 규정하는 ‘노무제공자’⁸⁴⁾에 적용된다고 규정⁸⁵⁾하고 있으므로 예산안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의 대상인 노무제공자와 그 범위가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노무제공자 분쟁조정은 사업자가 노무제공자에 대해 계속적인 거래관계, 거래의존도 등이 인정되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⁸⁶⁾되므

8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는 ‘노무제공자’로서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자, 학습지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송인,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업자, 방문판매원,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자동차 운전자,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85)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심사지침」 3. 이 지침에서 노무제공자라 함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거나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 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아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6)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심사지침」 4. 이 지침은 사업자가 노무제공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경우 적용한다. ‘거래상 지위’는 ‘불공정거래 행위 심사지침’에 따라 판단한다.

「불공정거래 행위 심사지침」 V. 개별 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

로 근로자이음센터의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보다 폭넓은 분쟁 조정 지원이 가능하고,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서울 1개소에 위치한 반면 동 예산안의 분쟁조정협의회는 전국 10개소의 근로자이음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이므로 노동약자들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맞게 보다 중층적인 지원·보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예산안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의 대상 중 일부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3년 11월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169건, 2022년 199건, 2023년 9월말 200건의 노무제공자 관련 조정사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히기도 하였음.⁸⁷⁾

또한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것으로 조정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되며 분쟁 조정 절차 개시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이음센터의 분쟁조정협의회보다는 노무제공자에게 보다 유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3) 거래상 지위 여부

(가) 거래상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나) 거래상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또한,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여야 한다.

(다) 계속적 거래관계 및 거래의존도를 판단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수준이나 정도는 시장상황,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87) [노무제공자 조정사건 통계 (2023.9.기준, 단위:건)]

업 종	2021년	2022년	2023년 9월	합 계
보험설계사	91	122	115	328
화물자동차운전자	43	23	23	89
택배기사(배달라이더 포함)	25	18	24	67
건설기계 운전자	5	10	18	33
기타(대리운전기사 등)	5	26	20	51
연도별 합계	169	199	200	568

*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보도자료, 「노무제공자 관련 조정사건, 보험설계사 절반 이상 차지 - 주요 조정신청 이유: 사업자의 환수금 청구, 대금 미지급, 거래 거절 등-」, 2023.11.1.

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간 분쟁이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대상이 될 뿐 아니라 해당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대상이 됨.⁸⁸⁾ 다만 공정거래법은 조정과 시정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정신청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의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하고,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⁸⁹⁾

그러나 동 예산안에 따라 근로자이음센터에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

8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45조제2항 및 제47조의 경우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를 말한다)에게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금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0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제46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8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7조(조정 등)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행위 또는 사건이 제4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80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되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의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을 실시하는 경우 조정과 시정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임.

즉, 이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향후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회의 조정 절차도 따를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연계·협업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해당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다 폭넓은 권익 보호와 함께 조정과 시정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셋째, 고용노동부는 조정협회 참석수당 6,000만원 외 별도로 조정의 성공 횟수당 위원별 100만원의 성공수당을 별도로 계상하여 성공수당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한바, 타 분쟁조정위원회·협회의 사례, 분쟁조정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산 집행 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사례에 대하여 ‘참석 사례비’, ‘안전 검토비’와 함께 사전자료수집·회의안전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따른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한 과업의 성공에 따른 ‘성공수당’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⁹⁰⁾

이에 정부 소속 또는 공공기관 내에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협의회 관련 예산에서 이와 같은 성공수당 편성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바,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년 예산안(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일반회계)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6개 분쟁조정협의회⁹¹⁾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참석수당과 안전검토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⁹²⁾

한편, 성공수당 수준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분쟁조정 성공 1회당 100만원의 성공수당을 위원 3인에게 각각 지급하되, 각 지역별 근로자이음센터 1개소당 10회의 분쟁조정을 실시하여 이 중 절반이 성공하는 것을 가정하여 개소당 5회의 성공수당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노무제공자의 근로와 관련한 분쟁 중 금전이 대상이 되는 분쟁은 그 특성상 소액인 경우가 많다는 점과 관련하여 조정 성공 1회당 총 3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노무제공자와 관련한 분쟁조정을 포함한 공정거래분쟁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2022년과 2023년 조정금액 현황

90)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p.218)

□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 비상임위원의 위원회 참석비를 월정액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

91)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약관 분쟁조정협의회,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92) 총 1억 6,800만원

을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의 조정비율이 비금전적 합의를 포함한 전체 조정 건수의 약 33%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금전적 합의를 한 조정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100만원 미만의 조정비율은 전체의 약 51%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금액 구간별 비중]

(단위 : 건, %)

금 액	2022년		2023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0만 미만	31	7.3	35	7.4
10만 이상 100만 미만	106	25.1	122	25.7
100만 이상 1,000만 미만	77	18.2	86	18.1
1,000만 이상 1억 미만	38	9.0	44	9.3
1억 이상 10억 미만	12	2.8	14	2.9
10억 이상 100억 미만	3	0.7	4	0.8
100억 이상	-	-	-	-
비금전적 합의*	156	36.9	170	35.8
합 계	423	100.0	475	100.0

* 비금전적 합의란 계약해지 등 금전 지급 합의 이외의 합의를 의미함.

** 자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3년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현황』, 2024.4.

또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대상이 고용노동부가 계획하고 있는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보다 더 큰 규모의 기업간 분쟁도 포함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 예산안에 편성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규모는 상당수가 100만원 미만의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음.

다만, 근로자이음센터 내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조정 사건을 전담

조사하는 별도의 상근인력이 없어 위원이 직접 사건조사 및 안건작성 등 제반 업무를 하여야 하는바, 타 기관의 분쟁조정협의회와 다른 사정은 인정됨.

이를 종합할 때 노무제공자의 분쟁조정에 건당 300만원으로 편성된 성공수당은 타 분쟁조정협의회의 수당 등 지급사례와 함께 조정사건의 난이도, 분쟁조정 금액, 관련 행정 업무 제반 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사업으로의 통합 추진 필요 〉

고용노동부는 2024년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예산을 신규로 50억 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 중임. 동 사업은 원·하청 간 상생연대 및 협력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청 노·사의 기금 출연분에 대해 정부가 매칭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는 2025년 동 사업의 명칭을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여 2024년 대비 16억 3,200만원 증액된 66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음.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⁹³⁾에 대하여 사업주 기금 출연금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을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⁹⁴⁾는 근로복지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복리후생 증진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청과 간접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사(2·3차 협력사)의 소속 근로자의 경우 해당 협력사가 공동근로복지기금 등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복지사업의 혜택

93) 「근로복지 기본법」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제86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둘 이상의 사업주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94)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①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6.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고용노동부는 취약 근로자의 근로복지 개선을 위하여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동 사업을 신설하여 운영 중임.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목적		협력사 근로자 복지개선을 위한 노·사의 자율적인 재원 형성 촉진
사업 대상		간접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사 * 근로복지기금법인 참여가 어려운 경우 직접 거래관계 협력사 포함 가능
지원 내용	매칭 비율	사업주 출연분의 최대 100%, 근로자 출연분의 최대 200% 매칭 지원
	지원 한도	1개 업종당 최대 40억원, 1개 기업당 최대 15억원 * 특정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가 넘을 경우, 업종당 최대 한도 적용
복지사업 가능 범위		▲복지시설(구내식당, 공동화장실 등) 구입·설치·리모델링·운영 지원 ▲근로자 및 그 자녀의 장학금·입학금·학원수강료(학비 일부) 등 지원 ▲체육·문화 활동(동아리 활동비, 문화생활 지출비 등) 지원 ▲근로자의 의료비, 건강진단비, 보육료 등 지원 ▲특정 날짜·사건에 대한 기념품·선물·위로금 등 지급

* 자료: 2024년 상생연대 형성지원 시행지침 재구성

2024년 동 사업 예산 중 원청 노·사 출연에 대한 매칭 지원금으로 편성된 49억원은 모두 지원되었음. 지원 대상 참여기업은 현대차·기아, SK에너지, 동원F&B, 대상 등 4개 기업으로, 이 중 현대차·기아가 60억원을 출연하고 정부지원금 38억원을 수령하여 가장 큰 규모로 2·3차 협력사 복지재원을 마련하였음.

[2024년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사업 추진현황]

참여기업	출연금	정부지원금	주요 사업 내용
현대차·기아	사업주 60억원	38억원	화장실 등 복지시설 설치, 명절 선물
SK에너지	사업주 1억원 근로자 4.5억원	9.5억원	협력사 공동샤워장 신설
동원 F&B	사업주 1억원	1억원	복지시설 설치, 명절 선물, 문화활동 지원
대상	사업주 0.5억원	0.5억원	

*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다만, 동 사업의 2024년 집행액 중 대부분은 사업주가 60억원을 출연한 현대차·기아에 집중되었으며, 이를 제외한 다른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액의 재원을 출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2024년 집행 실적을 고려하고 2·3차 협력사 근로자와의 상생을 위한 복지재원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5년 동 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대규모 출연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출연 규모가 일반적일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경우 상당수의 기업이 참여하여야 편성된 예산을 충분히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2024년 사업 추진 시 많은 기업들이 당해연도 기부금 사용처가 확정된 상황에서 2024년 사업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2025년 사업 참여 문의가 많았으므로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바, 2025년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의 사업 참여 유인을 제고⁹⁵⁾할 수 있도록

95) 현행 제도 하에서 기업은 출연금에 대해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법인세 손금이 인정되고, 원청 근로자가 출연할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특별세액공제(기부금의 15%)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겠음.

한편, 동 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에 규정된 근로복지기금 용도보다 넓은 범위로 근로자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일반회계에서 민간보조사업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사업 효과 측면의 한계도 있다고 보임.

「근로복지기본법」에 규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에 규정된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은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므로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해당하는 ‘기타보전금(310-04목)’으로 집행되고 있으나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일반회계를 통해 ‘민간경상보조(320-01목)’으로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음.

민간경상보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적용받는 비목으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⁹⁶⁾ 동 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주는 지원금을 당해

가 허용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짐.

96)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연도에 모두 사용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 또한 이를 사업지침에 명시하고 있음.

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효과적일 것임. 이를 감안하여 「근로복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회계연도별 사업비에 대한 제한 규정⁹⁷⁾을 마련하여 기금 고갈로 인하여 복지사업이 단기에 그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그러나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사업에 따른 2·3차 협력사 지원의 경우 민간경상보조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주 등이 매년 지속적으로 사

-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정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97)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④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나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출연금”이라 한다)이 있으면 그 출연금에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가. 법 제62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100분의 80
 - 나. 법 제62조제2항제2호의 경우: 100분의 80. 다만,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출연금에서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된 금액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3.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된 금액 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업비를 출연하지 않는 한 복지사업이 단년도에 그치게 되는바, 복지시설 설치 등 자본적 사업을 제외한 장학금, 문화활동 지원과 같은 경상적 사업은 지속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할 것임.

이와 같은 동 사업의 추진 구조상의 한계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받는 원청 및 직접 거래관계 협력사와 달리 동 사업으로 지원받는 간접 거래관계 협력사의 경우 복지혜택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발생함.

이를 종합할 때 2·3차 협력사의 경우에도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바, 고용노동부는 향후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해 간접 거래관계 협력사의 지원 근거를 마련⁹⁸⁾하고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근로복지기금지원’ 사업으로 통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음.

98) 이와 관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임의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658호)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임.

(3) 근로조건개선지원(일반회계, 3031-302)

<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

‘근로조건개선지원’(2005년~, 직접) 사업은 사업장 감독 및 자율개선, 안내·교육·지원 등을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을 예방하고 노동시장 약자 보호 및 근로권익 향상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억 9,400만원(12.6%) 감액된 104억 200만원임.

[2025년도 근로조건개선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A)	집행액			
■ 근로조건개선지원	16,559	11,896	4,862	10,402	△1,494	△12.6
·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6,845	7,063	2,891	7,256	193	2.7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1,985	1,375	813	1,375	0	(전년동)
· 장시간근로개선 지원	3,116	983	114	424	△559	△56.9
· 최저임금 준수 지도·홍보	1,085	-	12	-	-	-
· 서면근로계약 확산 지원	172	-	-	-	-	-
·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1,596	1,613	874	933	△680	△42.2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지원	1,761	862	158	414	△448	△52.0

* 자료: 고용노동부

< 권리구제지원팀 노동권익지원관 역량 확보 방안 마련 >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사업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현장 경험
이 많은 노동권익지원관을 통해 임금체불 등 노동분쟁에 대한 신속한
상담 및 청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 등을 지
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9,300만원
(2.7%) 증액된 72억 5,600만원임.

[2025년도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063	○ 상용임금(110-03) : 5,748백만원 가. 변호사, 노무사, 노동권익지원관 인건비: 5,748백만원	7,256	○ 상용임금(110-03) : 5,907백만원 가. 변호사, 노무사, 노동권익지원관 인건비: 5,907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76백만원 가. 권리구제 교육자료 제작·배포 등: 76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76백만원 가. 권리구제 교육자료 제작·배포 등: 76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89백만원 가. 복지포인트 177명×50만원=89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92백만원 가. 복지포인트 185명×50만원=92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10백만원 가. 권리구제 지원 여비 177명×27.5천원×2회=10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10백만원 가. 권리구제 지원 여비 185명×27천원×2회=10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10백만원 가. 권리구제 지원 전문가 회의 등 177명×28.5천원×2회=10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10백만원 가. 권리구제 지원 전문가 회의 등 185명×27천원×2회=10백만원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포상금(310-03) : 5백만원 가. 권리구제지원팀 운영실적 우수기관 포상 10개소×50만원=5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3) 1,126만원 가. 사회보험료 647백만원 나. 퇴직충당금 479백만원		○ 포상금(310-03) : 5백만원 가. 권리구제지원팀 운영실적 우수기관 포상 10개소×50만원=5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3) 1,155만원 가. 사회보험료 663백만원 나. 퇴직충당금 492백만원

권리구제지원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공무직 근로자)로 채용된 변호사·노무사·노동권익지원관⁹⁹⁾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동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¹⁰⁰⁾,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노동법률에 관한 종합적인 상담과 체불청산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¹⁰¹⁾

[권리구제지원팀 주요 직무 내용]

구 분	주요 업무
노동변호사	신고사건처리 및 근로감독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에 대한 법률자문(산업안전 포함), 기관 대상 행정쟁송 지원 등
공인노무사	노동관계법 심층상담, 취업규칙 및 퇴직연금 규약 등 검토 수행, 노동법 교육·설명 등
노동권익지원관	임금체불 사건 청산지원 업무 전담, 전화·방문 민원인 초기·심층상담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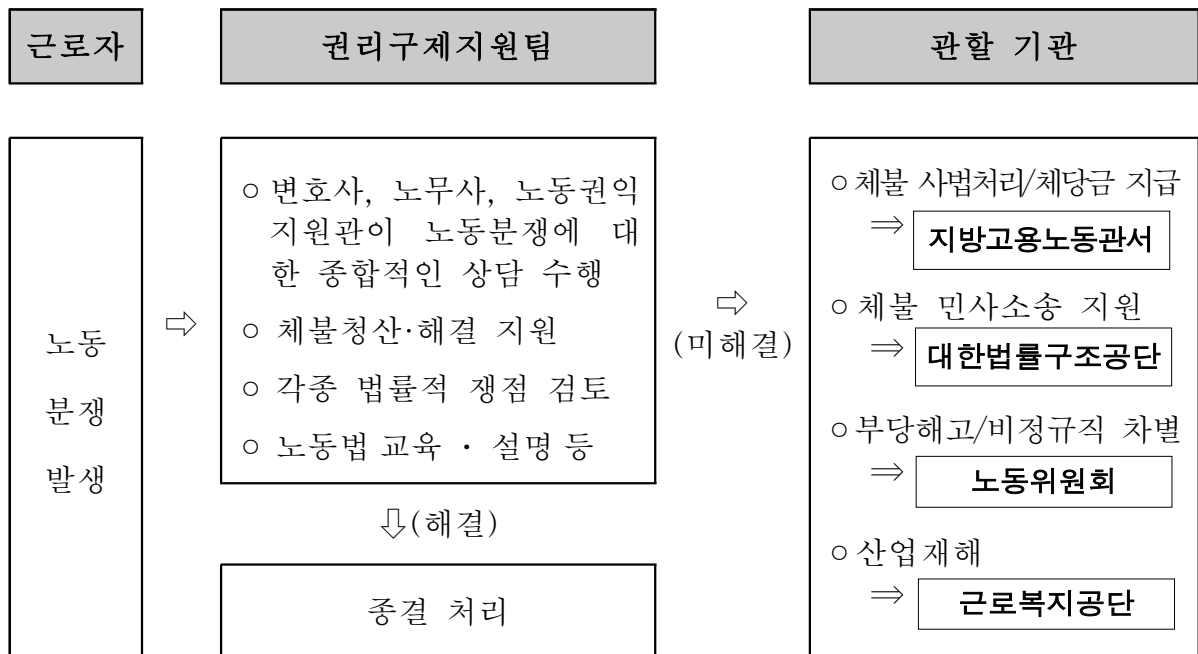
99) 별도의 자격요건을 두고 있지는 않음.

100) 변호사, 공인노무사

101) 상세한 직무 내용에 관하여는 【참고】 권리구제지원팀 직종별 업무 세부내용 참조

권리구제지원팀은 노동분쟁을 조기에 해소하여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간이한 노동분쟁을 근로감독관의 수사 이전에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근로감독 수요를 최소화함으로써 내실 있는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것임.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도식]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권리구제지원팀의 상담·청산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상담건수는 2019년 96만여건에서 2023년 135만여건으로 확대된 반면, 청산지원 건수는 2019년 51,000여건에서 2023년 39,000여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¹⁰²⁾ 같은 기간 전체 사건 수 대비 권리구제지원팀이 수행한 청산해결 사건 수의 비율도 정제되는 것으로 나타

102)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사건의 복잡·다양화로 청산지원 대상 사건이 감소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에 대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나고 있어 청산해결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권리구제지원팀 청산지원 실적]

(단위: 건,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체불신고사건 수(A)		403,023	364,355	314,308	285,390	350,318
청산지원 대상사건* 수(B)		95,150	80,989	67,748	55,652	52,739
청산해결사건 수(C)		51,184	40,302	39,625	35,503	38,967
청산해결비율	C/B	53.8	49.8	58.5	63.8	73.9
	C/A	12.7	11.1	12.6	12.4	11.1

* 사업주가 지급 능력·의지가 있어 조기 해결 가능성이 있고, 민원인이 청산지원을 동의하는 민원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권리구제지원팀 인력 구조개편을 전제로 마련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전문인력인 변호사 정원을 32명에서 22명으로 10명 감축하고, 주로 임금체불 청산지원 및 초기상담을 담당하는 노동권익지원관 정원을 111명에서 129명으로 18명 확충할 예정으로, 노동권익지원관을 중심으로 체불사건 해소 및 상담 대응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2025년도 권리구제지원팀 인력구조 개편안]

구분	2024년	⇒	2025년
인력	변호사 32명, 공인노무사 34명, 노동권익지원관 111명 (총 177명)		변호사 22명(△10명), 공인노무사 34명, 노동권익지원관 129명(+18명) (총 185명(+8명))
예산	총 6,962백만원 ▲(상용임금) 5,748백만원 ▲(고용부담금) 1,126백만원 ▲(복리후생비) 88백만원		총 7,154백만원 ▲(상용임금) 5,907백만원 ▲(고용부담금) 1,155백만원 ▲(복리후생비) 92백만원

고용노동부가 위와 같이 노동권익지원관을 중심으로 권리구제지원팀 운영을 개편할 경우, 노동권익지원관의 직무 역량을 확보하여 청산지원 및 상담서비스 제공 품질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임.

특히, 고용노동부 「권리구제지원팀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업주에게 지급능력·지불의사가 있어 조기 해결의 가능성이 있고, 민원인이 청산지원에 동의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청산지원을 실시하게 되는데, 임금채불 관련 진정 등 민원이 접수된 경우 현직 근로감독관인 권리구제지원팀장뿐만 아니라 노동권익지원관이 직접 상담하는 과정에서 청산지원 대상 사건의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바,¹⁰³⁾ 노동권익지원관의 사실탐지 및 상담 역량이 청산지원 사건의 선정 및 지원 실적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고 볼 것임.

노동권익지원관은 채용 시 전공이나 자격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채용 전에 노동관계법령이나 노동분쟁 처리 과정에 관한 지식과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노동부는 채용된 노동권익지원관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인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노동권익지원관 전문교육은 3일 이내의 단기간 집체교육에 그치고 있는 등 고용노동부가 노동권익지원관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수행하는 조치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103) 서면·온라인 접수 사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근로감독관인 권리구제지원팀장이 청산지원 대상 사건을 분류하고, 이후 노동권익지원관이 구체적인 전화상담 등을 통해 당사자 동의를 얻어 청산지원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며, 방문 접수 사건의 경우 노동권익지원관이 직접 상담하는 과정에서 청산지원 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노동권익지원관의 청산지원 및 노동관계법령
상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 고

권리구제지원팀 직종별 업무 세부내용

○ 노동변호사

- (법률자문) 신고사건 처리·근로감독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쟁점 자문(산안 포함)
- (심층상담) 전화 및 방문 민원의 노동분쟁 관련 민·형사 법률 심층상담
 - * 민·형사상 권리구제 절차 및 관계 법령, 사례 등 중심, 노동관계법 상담도 포함
- (소송 등 지원) 특이민원 대응 법률자문 및 기관 대상 행정쟁송* 자문·지원 수행, 기관 및 직원(근로감독관 등) 상대로 제기된 형사소송 등 자문
 - * (예시) 도산 등 사실인정,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노조설립인가 반려, 작업환경측정 기관 업무정지 등 우리 부 업무수행 상 발생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쟁송
- (교육) 형법·형사소송법 등 법률 이론 강의 및 교육
 - ☞ 변호사 배치 관서에서는 미배치 지청을 포함하여 위 업무 수행, 대표(지)청 권리구제지원팀장은 변호사 미배치 지청에서 자문 등 요청이 있는 경우 관내 변호사 자문 순서를 정하여 요청업무를 배정

○ 공인노무사

- (심층상담) 전화 및 방문 민원의 노동관계법* 심층상담
 - * 직장 내 괴롭힘, 근로시간, 근로자성, 불법파견, 차별, 집단 노사관계 등 임금체불 외 사안 또는 임금체불 포함 복합적 사안 중심 상담, 고용평등상담지원관 미배치 관서는 직장 내 성희롱 포함
- (인·허가 검토) 취업규칙, 퇴직연금 규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 등 인·허가 심사 및 검토
- (자문 및 교육) 근로감독관의 신고사건 처리·근로감독 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쟁점 검토 및 자문
 - 기관 내 요청 또는 교육과정 강의 요청 시 노동관계법 이론 및 실무 강의, 타 기관 및 사업장 요청 시 노동법 강의 및 교육

○ 노동권익지원관

- (초기상담) 전화 및 방문 민원의 노동관계법* 안내·초기상담 실시, 신고사건 및 청산 지원 절차 안내
 -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모성보호 등 포함(초기상담)
- (체불상담) 임금 및 퇴직금체불,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임금명세서 교부 등 관련 내용 권리구제 절차(신고사건, 대지급금 등) 및 상담 실시
- (청산지원) 체불 진정사건 중, 조기해결 가능성이 있으며, 진정인이 동의하는 사건에 한해 청산지원 실시
 - 진정사건 당사자에게 체불액, 체불 사유, 청산 계획 등을 확인하여 대상 민원 분류(2차 분류), 사실관계 등을 청산지원 시스템(노사누리) 조치
 - * 체불금액, 체불금품 지급계획 등 '사실확인정보'에 입력 철저, 유선확인 시 중요사항은 '전화 등 사실확인'에 기재
 - ** (2차 분류 및 동의 확인) 청산지원 민원은 처리절차, 기간 등에 대해 민원인에게 안내한 후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고, 동의와 관련한 사항은 철저히 관리(민원인 미동의 시 즉시 접수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신고사건 근로감독관에게 배정) → 권리구제지원팀장의 1차 분류된 민원의 상담 후 민원인 진행 동의 여부 확인

(4) 대지급금 지급(임금채권보장기금, 3051-300)

〈 사업 개요 및 계획안 내역 〉

‘대지급금 지급’(1998년~, 직접, 출연) 사업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지급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동 사업의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546억 1,300만원(11.5%) 증액된 5,293억 4,600만원임.

[2025년도 대지급금 지급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본예산 (A)	집행액			
■ 대지급금 지급	686,905	474,733	445,673	529,346	54,613	11.5
· 대지급금 지급	686,905	472,550	443,811	526,403	53,853	11.4
· 채권관리비용	-	2,183	1,862	2,943	760	34.8

* 자료: 고용노동부

〈 대지급금 지급 여력 확보 필요 〉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로, ①법원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기업의 파산 또는 도산을 인정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과 ②기업의 도산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확

인서를 받아 청구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됨.

[대지급금 제도 개요]

구분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재직자
지급 사유		▶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 지방관서의 도산등사실 인정	▶ 법원의 확정판결 ▶ 지방관서의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 등 확인	
지급요건	대상근로자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파산·회생·도산인정 신청일 등	▶ (확정판결)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 ▶ (체불확인서)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 (일용근로자 제외) ②3개월간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110% 미만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확정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체불확인서의 경우) 제기
	사업주기	① 산재보험 적용 사업 ②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③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사실인정	②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 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 영위 ③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등 확인	②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 영위
	지급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상한		최대 2,100만원 (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총 1,000만원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700만원
청구기한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확정판결일부 1년 이내 또는 체불확인서 최초 발급일부 6개월 이내	
횟수제한		-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	

*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도 대지급금 지급 사업의 기금운용계획안은 5,293억 4,600만원으로, 2024년 당초 계획액(4,747억 3,300만원)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546억 1,300만원(11.5%) 증액된 것으로 보이나, 2024년 9월 현재 계획현액(6,963억 6,800만원)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1,670억 2,200만원(24.0%) 감액된 것임.

[2025년도 대지급금 지급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2023년 결산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A)	수정		(B-A)	(B-A)/A
686,905	474,733	696,368	529,346	54,613	11.5

* 자료: 고용노동부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의 임금체불액 규모와 대지급금 지급 추이를 살펴보면, 대지급금 지급액은 2019년 4,599억원에서 2020년 5,797억원으로 증가한 이후 2023년에는 6,869억원까지 증가하였고, 2019년 대비 체불액 규모가 적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도 대지급금 지급액은 2019년 4,598억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9년 7월 간이대지급금 지급한도액 변동(400만원 → 1,000만원) 및 2021년 10월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 완화(법원의 확정판결 없는 대지급금 지급 허용) 등 대지급금 제도 변화가 대지급금 지급액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체불액이 일부 감소하더라도 2025년 대지급금 지급액은 기금운용계획안의 5,293억원보다 많을 여지가 있다고 보임.

[2019년~2024년 체불규모 및 대지급금 지급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임금체불액	1,721,703	1,583,014	1,350,452	1,347,209	1,784,530	1,369,986
대지급금지급액	459,880	579,690	546,571	536,864	686,905	498,450

* 2024년 8월을 기준으로 함.

**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도 정부가 편성한 대지급금 지급 계획액은 5,293억 원으로, 2020년 이후 대지급금을 가장 적게 지출한 2022년 대지급금 지급액(5,369억 원)보다 적은 금액이고, 2024년 8월을 기준으로 대지급금 지급액은 이미 5,000억 원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 대지급금 지급액은 상승 추세에 있고 대지급금 지급액은 체불액보다는 제도 구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계획액으로는 2025년 대지급금 지급 소요를 충족하기 곤란할 여지가 있다고 보임.

2025년 대지급금 지급 소요가 계획액을 초과하더라도 대지급금 지급은 법정의무 지출에 해당하는바,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재정법」에 따라 자체적인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대지급금 지급 곤란을 회피할 수는 있다고 볼 것이나,¹⁰⁴⁾

2019년부터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이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용계획에는 자금 조달을 위해 공

104)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지출금액

공자금관리기금 전입금 570억원이 수입액으로 편성되어 있는 등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인바, 계획액의 증액 변경이 동 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를 심화시킬 소지가 있음.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금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여유자금 규모	753,168	629,067	626,307	590,558	416,886	337,280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	200,000	2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
한국은행 예치금	5,609	4,965	4,188	4,980	3,601	11,467
계	958,777	834,032	730,494	695,537	520,487	398,747

* 2024년 8월까지의 자료임.

** 적립금 = 여유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한국은행 예치금

***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대지급금 환수 실적 제고를 통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수입액을 확보하여 대지급금 지급액을 조달할 여지도 있다고 볼 것이나, 채무자의 자력(資力)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대지급금 환수의 특성, 최근 대지급금 환수 실적은 1,500억원 내외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환수 실적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바, 기획재정부와 공공자금관리기금 전입금 확대를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등 대지급금 지급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입액 증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대지급금 환수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당해연도 대지급금지급분	459,880	579,690	546,571	536,864	686,905	498,450
당해연도 대지급금환수분	114,216	122,483	148,248	153,240	148,132	100,770
누적 대지급금지급분(A)	4,574,052	5,153,742	5,700,313	6,237,177	6,924,083	7,422,533
누적 대지급금환수분(B)*	1,567,381	1,689,864	1,838,112	1,991,353	2,139,485	2,240,255
누적 환수율(B/A)	34.3%	32.8%	32.2%	31.9%	30.9%	30.2%

* 2024년 8월 기준임.

**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대지급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생활안정자금(융자)(근로복지진흥기금, 3062-306)

< 사업 개요 및 계획안 내역 >

‘생활안정자금(융자)’(1996년~, 융자) 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필수자금 융자를 통해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융자 사업으로, 동 사업의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30억원(3.4%) 증액된 914억 6,200만원임.

[2025년도 대지급금 지급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본예산 (A)	집행액			
■ 생활안정자금(융자)	165,030	88,462	98,286	91,462	3,000	3.4
· 생활안정자금(융자)	165,030	88,462	98,286	88,462	0	(전년동)
·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	-	-	3,000	3,000	(순증)

* 자료: 고용노동부

< 융자제도 개편에 따른 취약계층 불이익 최소화 필요 >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저소득 근로자(비정규직, 특고, 1인 자영업자 포함)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융자목적은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 7종이고, 금리는 연 1.5%(신용보증료 0.9% 별도)이며,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월

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2/3 이하(3인 가구 기준, 2024년 기준 315만원)에 해당하여야 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개요]

구 분		대상 및 조건
융 자 대 상	①의료비 ②혼례비 ③장례비 ④부모요양비 ⑤자녀학자금 ⑥자녀양육비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의 2/3('24년 315만원) 이하 * 비정규직은 소득요건 비적용
	⑦소액생계비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휴업·휴직(개인사정, 경영상 이유), 사업 구조상 이유(계절사업, 공공근로)로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의 2/3('24년 315만원) 이하 * 비정규직은 소득요건 비적용
융 자 한 도	①의료비 ③장례비	• 1,000만원
	②혼례비	• 1,250만원
	④부모요양비	• 1천만원 한도 내 부모 1인당 연간 500만원
	⑤자녀학자금	• 1천만원 한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고등학교 재학에 한함)
	⑥자녀양육비	• 1천만원 한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만 7세미만 자녀)
	⑦소액생계비	• 200만원
	※ 2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	
금리	• 연 1.5% (신용보증료 연 0.9%)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도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계획안은 914억 6,200만원으로, 2024년 당초 계획액(884억 6,200만원)을 기준으로 30억원(3.4%) 증액된 것이나, 수정계획액(1,184억 6,200만원)을 기준으로 270억원(22.8%) 감액된 것임.

2025년도 동 사업 계획안은 소득에 따라 용자방식과 한도를 구분하는 제도 개편을 전제로 마련된 것으로, ①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1/2(2024년 기준 235만원) 이하인 신청인에 대하여는 기존 용자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②중위소득(2024년 기준 471만원) 이하인 신청인에 대하여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하되 용자 한도를 낮추어 용자하는 형태임.

[2025년도 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 용자모델 개편안]

구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생활안정자금(용자)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용자방식	금융기관 대하방식(기존)	이차보전방식(신규)
목적	결혼, 장례, 치료 등 목돈이 필요한 취약계층 근로자 생활 보호	좌 동
대상	중위소득 1/2이하 취약계층 근로자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조건	결혼, 장례, 치료, 자녀양육 등 생활필수 자금 소요가 확인되는 경우	좌 동
지원한도	종목당 1,000만원(혼례비 1,250만원) 1인당 2,000만원 한도	①중위소득 2/3이하 근로자: 1,000만원 이내 ②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500만원 이내
용자금리	1.5%(보증료율 연 0.9% 별도)	금융기관 고정금리에 3% 내 보전 * 개인 신용대출 금리(최저4.5%~최고9.5%)에서 3% 내 이차보전으로 신용도에 따라 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율은 최저1.5%~최고6.5% 수준
계획액	885억원	30억원
지원규모	16,818명	13,000명(용자재원 1,000억원 기준)
용자신청	근로복지공단	은행
심사기준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은행 대출심사기준
담보제공	공단 신용보증지원사업을 통한 신용보증	개별 신용대출

*중위소득 1/2 이하 취약계층 근로자의 경우 기존 방식 용자 계획액 소진 시 이차보전 방식을 통해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위와 같은 제도 개편은 지원 대상자의 범위(중위소득의 2/3 이하 근로자 등 →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등)와 지원자 수는 확대¹⁰⁵⁾하면서, 소요되는 정책자금 규모를 축소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것이나, 용자 수요가 상당할 수 있는 중위소득 1/2 초과부터 2/3 이하인 근로자 등으로서 용자한도가 최대 1/2까지 감액(복수 용자사유 시 최대 2,000만원 → 1,000만원)될 수 있다는 점, 용자대상자의 소득격차에 비해 용자방식에 따른 이율차가 상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¹⁰⁶⁾에서 기존 제도에 비해 불이익할 소지가 있다고 볼 것임.

특히, 복수의 생활안정자금 용자 사유가 있더라도 이차보전 방식의 용자에서는 기존 제도와 같이 용자한도액 증액을 할 수 없어 500만원 ~1,000만원 한도에서 용자가 이루어진다고 볼 것인바, 복수 용자 사유 등 용자한도액 상향에 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용자한도액을 상향할 수 있는 보정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이차보전 형태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복수 용자 사유에 관하여는 용자한도액을 조정하거나 소득 조건에 따라 보전되는 이율을 점층적으로 구성하는 등 저소득 근로자 및 취약계층이 제도 개편에 따라 받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05) 기존 방식으로는 2023년 1,650억원을 30,639명에게 용자하였으나, 2025년에 이차보전 방식이 도입되면서 해당 형태의 계획액 30억원을 13,000명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106) 대하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존 용자의 경우 최대 연 1.5% 이율이 적용되나 이차보전방식의 경우 개인의 신용대출금리에 3%를 감하는 형태로 용자가 이루어지므로 최대 연 6.5%의 이율을 감당하여야 할 수 있어 용자대상자의 소득 격차에 비해 이율 격차가 상당할 소지가 있음.

[산업안전보건본부]

(1) 산재병원 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051-350)

<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

‘산재병원 지원’(1995년~, 출연) 사업은 산재병원 노후시설 개선, 장비 현대화, 재활전문센터 및 산재병원본부 운영 지원, 울산병원 건립, 전북권 산재병원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468억 9,200만원(143.1%) 증액된 796억 5,400만원임.

[2025년도 산재병원 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실집행액]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본 예산 (A)	집행액 [실집행액]			
■ 산재병원 지원	32,421 [54,648]	32,762	23,249 [21,130]	79,654	46,892	143.1
· 노후시설개선	5,258 [5,258]	1,686	1,686 [45]	3,472	1,786	105.9
· 장비현대화	3,784 [3,784]	3,784	3,784 [3,706]	3,812	28	0.7
· 재활전문센터	4,491 [4,491]	6,938	3,855 [3,455]	4,228	△2,710	△39.1
· 산재병원본부	4,535 [4,535]	4,473	3,355 [3,355]	4,518	45	1.0
· 울산병원신축	14,353 [36,580]	15,681	10,483 [10,483]	63,624	47,943	305.7
· 전북권산재병원	-	200	86 [86]	-	△200	(순감)

* 자료: 고용노동부

〈 울산병원 신축 관련 정보화 사업 지연 방지 필요 〉

‘산재병원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울산병원 신축’ 사업은 산재의 료재활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울산에 공공병원인 산재병원을 건립하려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건축 관련 사업비 1,551억 8,100만원과 의료·연구 장비 투자비 및 정보시스템 구축비 519억 900만원 등 총 2,070억 9,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임.

[울산병원 신축 사업 연차별 사업비 지출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누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 공사비	35,813	10,774	56,139	38,182	140,908
○ 시설부대경비	7,990	2,288	2,401	1,594	14,273
설계비	6,060	-	-	-	6,060
감리비	1,779	2,215	2,328	1,581	7,903
시설부대비	151	73	73	13	310
○ 기타투자비	450	2,619	68,708	127,288	51,909
의료장비	-	-	-	31,909	31,909
연구장비	-	-	-	8,000	8,000
정보시스템구축	450	2,619	5,084	3,847	12,000
계	44,253	15,681	63,624	83,532	207,090

* 자료: 고용노동부

이 중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울산병원에서 주치의 진단·처방 등

의무기록 및 병상 가동 현황 등을 최첨단으로 관리하고 축적한 데이터를 재활수가 개선 등 연구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실시하였고 2024년에는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26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연차별 사업비 집행 계획은 다음과 같음.

[울산병원 신축 부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연차별 사업비 집행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누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정보시스템구축	450	2,619	5,084	3,847	12,000
개발비 ¹⁾	-	1,194	1,809	1,596	4,599
장비비 ²⁾	-	1,313	3,199	2,194	6,706
기 타 ³⁾	450	112	76	57	695*

* 1) 플랫폼 정보시스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개발비, 인건비)

2)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HW/SW 구입비

3) BPR/ISP, 개인정보 영향평가, 감리 등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의 ISP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산재환자 서비스 통합포털 구축, 스마트 진료 및 업무선도 모델 도입을 위한 분석 및 설계 등 2024년에 종료하여야 할 과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동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은 2024년 10월에 이루어져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지연될 소지가 있다고 볼 것임.

[울산병원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ISP 결과보고서에 따른 2024년 종료 과업]

(단위: 점, 백만원)

목 표	과 업	기능점수 ¹⁾	소요예산액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환자 서비스 제공	산재환자 서비스 통합 포털 구축	118.0	141
스마트 진료 및 업무 선도모델 도입	분석 및 설계 ²⁾	-	-
	의료사업 업무지원 포털 구축	139.9	168
산재병원 표준모델 개발	산재의료-산재보상 정보 연계 강화	113.8	136
	산재 특화서비스 표준 모듈 구축	150.6	180
시스템 연계 통합관리체계 구축	의료정보 연계 허브 구축	74.1	100
	내부시스템 연계 강화	69.9	78
	외부연계 확대	131.5	148
의료정보 통합관리 기준 강화	병원 DB 통합 구축	- ³⁾	103
	의료기준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61.5	65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구축	70.2	75
계		926.5	1,194

* 1)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기능의 규모를 측정하는 단위로 기능점수*단가 형태로 예산액을 산출함

2) 개발비 사업이 아님

3)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

동 사업은 2024년에 시작하여 다년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되는 정보화 사업에 해당하는데, 관련 용역계약 체결이 2024년 4분기에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인 사업 일정이 순연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울산병원 신축 관련 부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설계·분석할 필요가 있음.

(2) 연구기관 및 케어센터 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052-356)

<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

‘연구기관 및 케어센터 지원’(1995년~, 출연) 사업은 첨단 재활보조 기구의 개발·보급을 통해 산재장해인의 직업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재활공학연구소, 업무상 질병 판정관련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직업 병을 연구하는 직업환경연구원, 중증·고령·무의탁 산재 장애인에게 전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간병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케어센터의 운영지원을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동 사업의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8,200만원(0.6%) 감액된 126억 6,500만원임.

[2025년도 연구기관 및 케어센터 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본예산 (A)	집행액 [실집행액]			
■ 연구기관 및 케어센터	10,446	12,747	8,679 [8,479]	12,665	△82	△0.6
· 재활공학연구소	3,417	4,633	3,474 [3,474]	4,756	123	2.7
· 직업환경연구원	3,317	4,851	2,758 [2,558]	4,580	△271	△5.6
· 케어센터	3,712	3,263	2,447 [2,447]	3,329	66	2.0

* 자료: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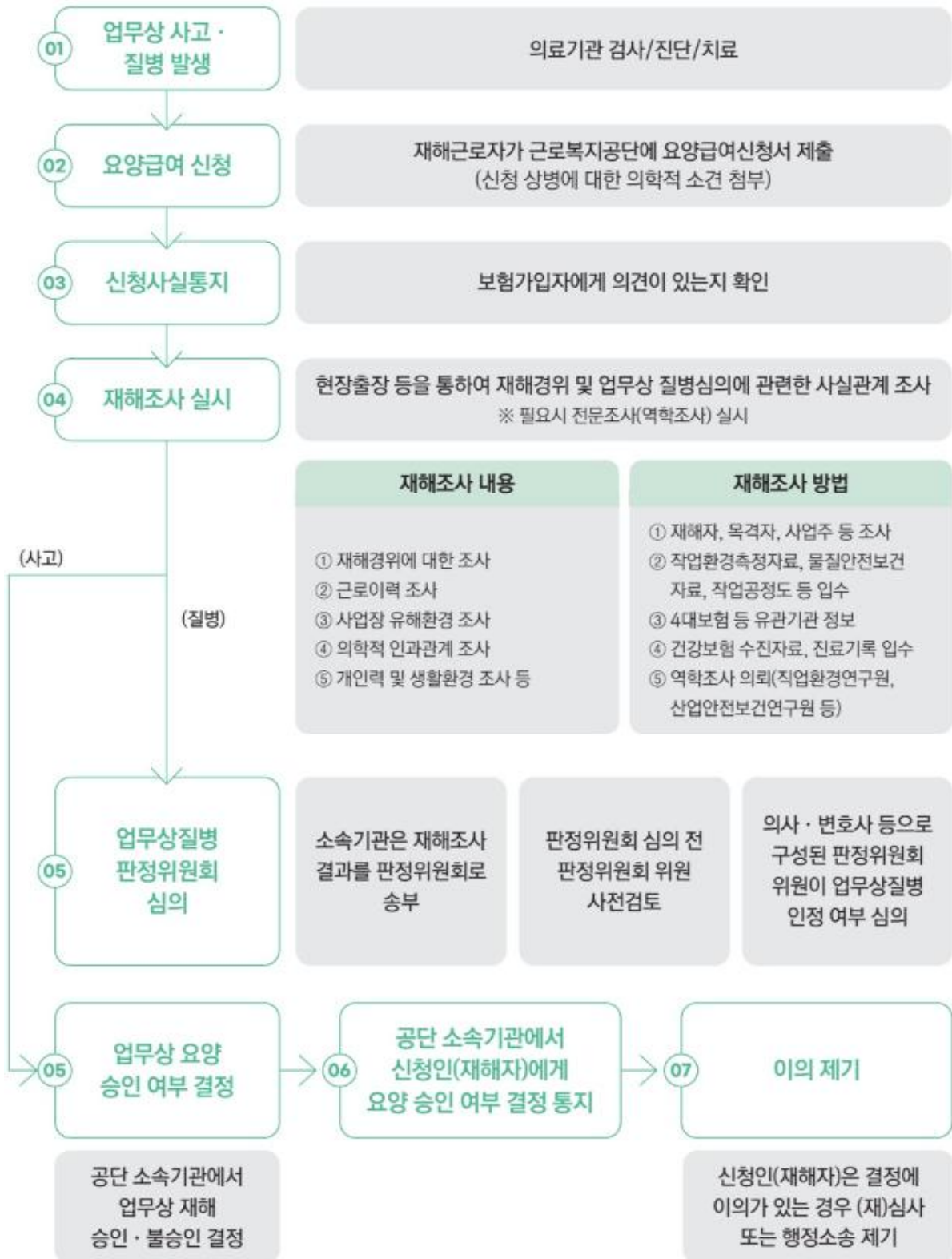
〈 역학조사 전문 인력 확충 필요 〉

업무상 재해 조사는 사고에 의한 경우와 질병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①업무상 사고의 경우 공단 직원이 관련자(사업주, 동료, 재해근로자 등) 진술서, 현장출장, 의료기록 확인을 통한 재해경위 조사 및 근로이력 확인 등의 ‘재해조사’를 실시한 뒤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요양 승인 여부를 바로 결정하나,

②업무상 질병의 경우 재해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인정여부를 심의·결정하게 되며, 새롭게 등장한 질병이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는 직업병 등에 대해서는 재해조사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또는 직업환경연구원(근로복지공단 소속)에 의뢰하여 작업환경측정, 시료분석, 문헌검토 등의 전문적인 조사인 역학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업무상 재해의 조사 절차]



직업환경연구원은 근로복지공단에 부설된 업무상질병 판정 관련 역학조사 및 직업병 관련 전문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 정원은 27명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¹⁰⁷⁾에 따라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음¹⁰⁸⁾

[직업환경연구원 개요]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내 용				
성 격	근로복지공단 부설기관, 전문연구기관				
인력 (현원/정원)	행정직	연구직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사	기타
	4/3	4/5	2/2	11/11	6/6
예·결산	2023년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안	
	결산	본예산	집행액		
	3,317	4,851	2,758	4,580	
주요업무	○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 수행 ○ 직업병 발병기전, 유해물질 노출평가 및 임상연구 과제 수행				

*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부설된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 정원은 136명이고 신종·대규모 발병 직업병의 역학조사, 작업환경측정, 석면조사, 화학물질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1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 공단이나 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질병과 유해·위험요인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그 밖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

108) 마찬가지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신규·회귀 직업병 및 대규모 역학조사를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상호 주된 역할이 상이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개요]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내 용				
성 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설기관, 전문연구기관				
인력 (현원기준)	행정직	연구직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사	기타
	19	2	5	44	65
예·결산 (직업병 역학조사 사업)	2023년 결산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안	
		본예산	집행액		
	1,660	1,755	1,071	1,755	
주요업무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련 기초·실용·정책연구 ○ 근로자 질환과 작업장 유해요인의 업무관련성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 특검·진폐, 작측 및 석면조사기관 등 민간기관의 분석능력 등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정도관리사업 ○ 국내 유통 화학물질 MSDS 내용 중 기업 영업비밀 등으로 인한 비공개 승인 심사 ○ 흡입노출 및 유해 우려가 높은 물질에 대한 흡입독성시험 및 평가				

역학조사는 신종 직업병이나 고도의 전문성으로 인해 재해근로자의 증명이 곤란한 직업병, 대규모로 발병하는 직업병의 인과관계를 밝힘으로써 재해근로자의 효율적인 구제를 도모하고 이들을 조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것인데,

역학조사 소요일수는 2019년 236.1일에서 2023년 635.0일로 늘어났고, 이 중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의뢰 사건의 소요일수는 같은 기간 517.6일에서 954.6일로, 직업환경연구원 의뢰 사건의 소요일수도 같은 기간 206.3일에서 588.1일로 늘어났는바, 역학조사 소요일수를 단축함으로써 재해근로자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임.

[2019년~2024년 역학조사 의뢰건수, 회신건수 및 소요일수]

(단위: 건, 일)

구분	전 체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원		
	의뢰	회신	소요일수	의뢰	회신	소요일수	의뢰	회신	소요일수
2019년	1,133	607(30)	236.1	183	59(1)	517.6	953	548(29)	206.3
2020년	1,133	561(37)	295.5	178	70(2)	441.4	958	491(35)	275.2
2021년	1,251	526(23)	405.4	191	69(5)	601.3	1,063	457(18)	371.5
2022년	1,200	456(23)	465.7	158	58(1)	659.8	1,044	398(22)	436.7
2023년	950	517(9)	635.0	130	66(1)	954.6	820	451(8)	588.1
2024년	558	267(5)	619.1	84	29(-)	735.1	474	238(5)	604.7

* 회신일 기준 자료

** 회신건수: 민원반려건이 포함된 전체건수, ()는 민원반려 등

*** 소요일수: 민원반려 등 제외하여 산출 4)2024년 자료는 9월까지의 자료임

**** 자료: 고용노동부

직업환경연구원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역학조사에 종사하는 인원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의료인¹⁰⁹⁾의 비중은 전체 종사 인원의 26.1%로 나타나고 있음.¹¹⁰⁾

[역학조사 종사 인원]

(단위: 명)

구분	직업환경연구원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의사	간호사	산업 위생사	기타	계	의사	간호사	산업 위생사	기타	계
2019년	6	-	8	1	15	4	-	5	-	9
2020년	4	1	8	1	14	4	-	6	-	10
2021년	4	2	8	1	15	3	-	6	-	9
2022년	4	2	8	2	16	3	-	6	-	9
2023년	4	2	8	1	15	3	-	6	-	9
2024년	4	1	9	2	16	1	-	6	-	7

* 산업위생사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 제한

** 자료: 고용노동부

109) 의사, 간호사 등을 말함.

110) 23명 중 6명(의사 5, 간호사 1)

2023년 기준 의료인 1인당 역학조사 의뢰건수는 105.6건이고, 특히 조사수행기관 중 직업환경연구원의 경우 의료인 1인당 역학조사 의뢰건수가 136.7건으로, 종사 의료인 대비 역학조사 의뢰건수가 과다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데, 의료인 조사 인력을 충원하여 역학조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사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임.

[역학조사 의뢰건수 대비 종사 인원]

(단위: 건, 일)

구분	전 체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원	
	의료인 1인당 의뢰건수	종사인원 대비 의뢰건수	의료인 1인당 의뢰건수	종사인원 대비 의뢰건수	의료인 1인당 의뢰건수	종사인원 대비 의뢰건수
2019년	113.3	47.2	45.8	20.3	158.8	63.5
2020년	125.9	47.2	44.5	17.8	191.6	68.4
2021년	139.0	52.1	63.7	21.2	177.2	70.9
2022년	133.3	48.0	52.7	17.6	174.0	65.3
2023년	105.6	39.6	43.3	14.4	136.7	54.7
2024년	93.0	24.3	84.0	12.0	94.8	29.6

* 의뢰건은 이월사건이 포함된 건수임.

** 2024년의 경우 9월까지의 자료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원활한 역학조사 수행과 조사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직업환경연구원 및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의료인 전문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태백케어센터 입소를 제고 필요 〉

케어센터는 장애 특성에 맞는 전문적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중증 산재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그 가족의 간병 부담을 완화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시설로, 현재 2개소가 근로복지공단 경기요양병원과 태백병원에 각각 부설되어 60세 이상으로서 산재장애등급 1~3등급에 해당하거나(경기), 진폐장애·진폐의증(疑症)·만성폐쇄성폐질환(COPD)¹¹¹⁾이 인정되는 산재급여 수급자(태백)가 입소 대상자임.

[케어센터 운영 현황]

구분		경기케어센터			태백케어센터		
위치		경기도 화성시			강원도 태백시		
건물규모(연면적)		12,082.32㎡(3,655평)			6,491㎡(1,963평)		
병상수		100병상 (1인 1실)			80병상 (1인1실 20개, 2인 1실 30개)		
입소자수(일평균)*		77명			55명		
인력현황 (명)	구분	행정직	의료직*	요양 ·보호직**	행정직	의료직	요양 ·보호직
	정원	13	7	28	14	8	7
	현원	12	6	26	8	5	7
	충원률	92.3	85.7	92.9	57.1	62.5	100.0

* 의사, 간호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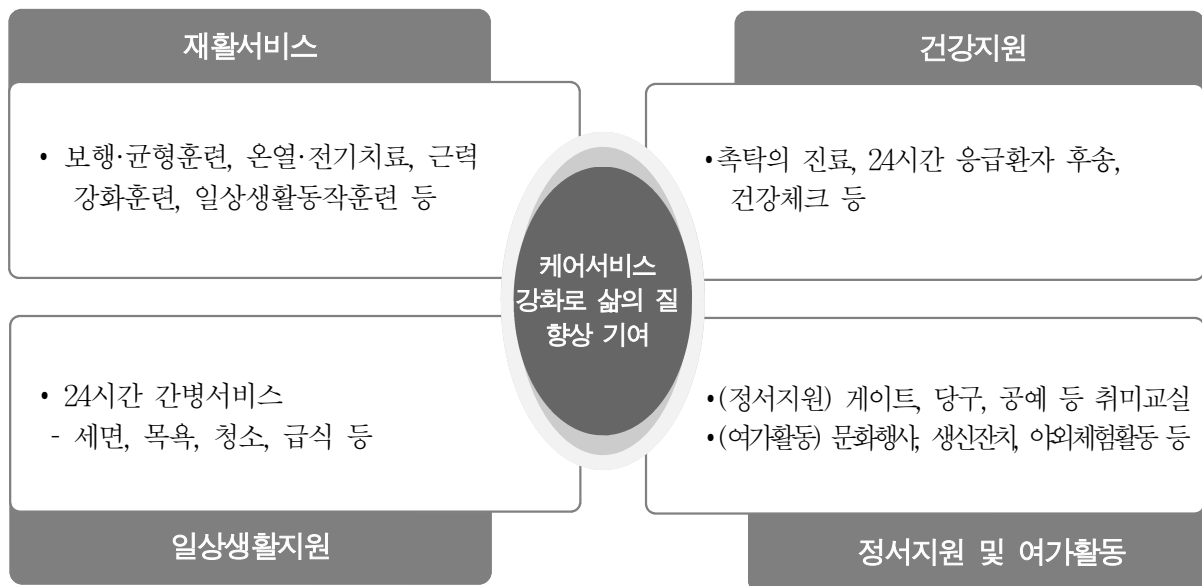
** 요양보호사

*** 2024년 기준

111) 담배, 대기오염 또는 독성흡입물질에 의해 기도에 염증이 지속돼 기도가 좁아지면서 서서히 기도폐쇄가 일어나는 질환을 의미함.

케어센터는 보행·균형훈련, 근력강화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등 재활 서비스 제공, 족탁의 진료 등 건강지원, 24시간 간병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 취미교실이나 문화행사 등 정서지원 및 여가활동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산재장해인의 생활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볼 것임.

[케어센터 프로그램 운영내용]



최근 케어센터 입소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태백케어센터의 일평균 입소자 수는 2019년 76명에서 2023년 55명으로 감소하여 정원의 73.3%를 유치하는데 그쳤는바,¹¹²⁾ 산재장해인의 생활 보조 및 그 가족의 간병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케어센터의 기능을 고려할 때 입소율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112) 2024년 9월 현재 49명 현원으로 유치율은 65.3%임.

[케어센터 입소자 수 추이]

(단위: 명,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경기	정원	100	100	100	100	100	100
	현원	92	91	87	81	77	81
	유치율	92.0	91.0	87.0	81.0	77.0	81.0
태백	정원	100	100	90	80	75	75
	현원	76	66	62	56	55	49
	유치율	76.0	66.0	68.9	70.0	73.3	65.3

* 2024년 9월까지 기준임.

** 자료: 고용노동부

태백케어센터의 입소율 제고와 관련하여 보건·의료·요양서비스 제공 역량과 입소대상자 기준을 살펴보고자 함.

먼저, 케어센터의 직원 충원률을 비교하면, 경기케어센터는 행정·의료·요양보호직군별 80% 이상 충원하고 있는 반면 태백케어센터의 행정·의료직 충원률은 각각 57.1%, 62.5%로 저조하다고 보이고, 요양·보호직 지원 1인당 입소자 수를 비교하면, 경기케어센터가 2.96명인 반면 태백케어센터는 7.8명으로 직원 1인당 담당 입소자 수가 많아 요양서비스 제공 품질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임.

보건·의료·요양서비스 제공 역량은 케어센터 입소자 유치율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데, 태백케어센터의 의료직 또는 요양·보호직 인원을 적극적으로 충원하고, 케어센터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 중인 산재병원에 부속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재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의료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임.

또한, 태백케어센터의 입소대상자는 일상생활의 지장이 없는 진폐장해인 및 비진폐장해인(진폐의증자,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제한되는데,¹¹³⁾ 경기케어센터가 장애의 유형에 관계없이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 고도의 장애가 있는 재해자의 요양을 보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입소대상자의 범위가 좁다고 보이는데, 위와 같은 보건·의료·요양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함께 입소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¹¹⁴⁾

고용노동부는 태백케어센터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진폐장해인 등이 입소하고 있어 요양보호직 충원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 센터 입지에 비추어볼 때, 의료인력의 채용이 곤란하여 충분한 의료역량을 전제로 하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산재장해인의 입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임.

다만, 케어센터의 설치 목적에는 산재장해인 가족의 간병 부담 경감이 포함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의료지원 역량이 담보되는 수준에서 입소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이고,¹¹⁵⁾

113) 「케어센터운영지침」(근로복지공단 내규) 제13조(입소대상) ① 입소 대상자는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60세 이상의 자로 경기케어센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요양종결 후 장애등급 결정 전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력이 있는 자, 태백케어센터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장해인 및 비진폐장해인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할 수 있다.

114) 일상생활의 곤란이 있는 산재장해인의 원활한 요양보조 및 간병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의료·요양서비스 품질 제고가 동반될 필요가 있고, 이를 전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입소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입소자의 삶의 질이 악화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요양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이 마련되는 것을 전제로 입소대상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15) 입소대상자의 장애유형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입소할 수 있는 장애유형을 추가하거나 장애유형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임.

입소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이에 수반하여 요양서비스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 거동·간병보조 등 의료적인 요양보조 외에도 정서지원 및 여가활동 지원 등 입소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요양보호직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태백케어센터 입소율 제고를 위해 인력 충원을 통한 의료·요양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태백케어센터의 입소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일반회계, 4135-300)

<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 사업(2023년 ~, 직접)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산업안전감독관 직무교육),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수사에 필요한 디지털자료 분석장비 도입과 분석실 설치(중대재해수사의 과학화), 중대재해 예방 및 수사 등 산업재해 예방 강화와 기업자율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산업안전감독관에게 지급하기 위한 특수보호장비¹¹⁶⁾ 구입비 1억 5,800만원과 중대재해 수사 지원 인력 증원에 따른 제반비용¹¹⁷⁾ 15억 300만원, 총 16억 4,800만원이 증액된 39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116) 방독·방진마스크, 절연장갑, 보호복 등 구입비용 33백만원과 복합가스 측정기,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보호장비함 등 구입비용 125백만원

117) 2024년 수시직제 결과 6과 신설되고 총 75명 증원되어 이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부서운영 및 증거확보활동 지원에 8.200만원, 부동산 중개 수수료 2,400만원, 사무실 임차료 3억 7,400백만원, 임차사무실 관리비 1억5,000만원, 임차사무실 경비용역 10.00만원, 임차사무실 공사비 4억 7,200만원, 사무가구·전산장비 등 구매 1억 4,100만원, 임차사무실 보증금 2억 5,000만원 등 사무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한 비용임

[2025년도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집행액 ('23.7)			
▪ 산업안전감독 역량강화	4,406	2,282	1,063	3,930	1,648	72.2
▪ 산업안전감독관 직무교육	412	408	179	408	0	(전년동)
▪ 중대재해 수사 과학화	2,418	986	432	986	0	(전년동)
▪ 중대재해 예방 및 수사 지원	1,576	888	452	875	△13	△1.5
▪ 산업안전감독관 특수보호장비	-	-	-	158	158	(순증)
▪ 증원 수사인력 지원	-	-	-	1,503	1,503	(순증)

* 자료: 고용노동부

< 수사지원 차량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 필요 >

내역사업인 중대재해 예방 및 수사 지원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산업안전감독관들의 현장 수사에 수반되는 비용¹¹⁸⁾ 총 8억 7,500만원이 예산안 편성되었고, 여기에는 수사지원 차량을 구매·제작·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2억 4,900만원과 차량 운영을 위한 유류비 1,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현재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감독과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하여 총

118) 사업장 감독 및 수사를 위한 국내여비 5억원, 수사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 9,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20만원 등

19대의 긴급자동차(패트롤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별¹¹⁹⁾ 긴급자동차 운영 현황]

(단위: 대수)

지방 관서	서울	중부	의정부	경기	성남	강원	부산	창원	대구	포항	광주	전주	제주	대전	천안
보유	2	2	1	2	1	1	2	1	1	1	1	1	1	1	1

* 자료: 고용노동부

여기에 더하여 수사지원 차량 6기를 별도 제작하여 운행하고 있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재해 발생 시 현장에서 목격자 진술 확보¹²⁰⁾ 등을 위하여 사업주와 분리될 수 있는 독립공간이나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하여 조사에 수사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산업재해 현장의 환경이 열악하여 이러한 공간 확보가 어렵고 긴급자동차 또한 5~7인승 승용차로서 초기 대응에 필요한 공간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의견에 따라 현장에서 바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 사고조사 장비 등이 탑재되어 이동식 수사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 대형 밴을 2023년 4대, 2024년 2대를 구매·제작하여 별도의 수사지원 차량으로 운영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119) 서울,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청/ 의정부, 경기, 성남, 강원, 창원, 포항, 전주, 천안: 지청/ 제주: 팀

120) 특히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협조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움

그런데 실제 수사지원 차량이 도입 취지에 맞게 재해조사나 사건조사에 운행된 실적을 보면 평균 월 1.3회에 그쳐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남.

[2023 회계연도 월별 지방관서 수사지원 차량 운행 횟수]

지방관서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평균 ¹²¹⁾
경기	1	2	1	-	-	0.8
중부	-	3	1	-	-	1
대전	-	3	1	-	1	1.25
부산	1	-	-	2	2	1

*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재구성

[2024 회계연도 월별 지방관서 수사지원 차량 운행 횟수]

지방관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월평균 ¹²²⁾
경기	6	1	1	-	-	-	-	-	-	1.33
광주	-	-	-	-	1	1	-	2	-	
중부	1	1	-	-	-	-	-	-	-	1.78
강원	-	-	-	6	-	5	-	1	2	
대전	-	1	2	3	3	2	1	-	-	1.33
부산	5	3	-	2	3	-	4	1	1	2.1
대구	-	-	-	-	-	-	-	-	1	0.3
포항	-	-	-	-	-	-	1	3	3	2.3

*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재구성

121) 경기지청과 부산청은 8월에 차량이 인도되었고, 중부청과 대전청은 9월에 인도되어 각각 5개월과 4개월로 나누어 계산함

122) 월평균 운행횟수는 신규 제작한 대구청과 포항지청은 차량 제작이 완료되어 지방노동관서에 인계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을 운행기간으로 계산하였고, 경기지청과 중부청의 수사지원 차량은 운행 저조나 운행 여건의 어려움 등으로 각각 광주청과 강원지청으로 이전하여 운영한 바, 월평균 이용실적은 이전 전후의 이용실적을 합산하여 계산하였음

이러한 운행 부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수사지원 차량이 통상 운행하는 차량보다 차량 높이 및 길이가 커서 산업안전감독관들의 운전 부담이 높을 뿐 아니라 산업재해 발생 현장 주변 주차에도 어려움이 커서 현장에서의 실제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2025년부터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차량의 모델을 대형 밴에서 일반승합차로 변경하여 운행률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함. 그러나 이러한 차종의 변경은 당초 도입한 대형밴의 실용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가 사업을 면밀하게 계획하지 못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임.

또한 2024년에는 운행률 제고를 위하여 경기지청과 중부청이 보유한 수사지원 차량을 각각 광주청과 강원지청으로 이전하여 운행하기도 하였음에도, 경기지청-광주청의 월평균 운행횟수가 1.33회, 중부지청-강원지청의 등 월평균 운행횟수가 1.78회로서 2023년에 비해 운행률 제고에는 큰 영향이 없었음. 오히려 운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긴급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검찰 업무협이나 근거리 이동 등에 대형 수사지원 차량을 사용하여 유류비 등의 예산낭비를 초래한 경우도 파악됨.

결국 수사지원 차량의 운행률 저조의 원인은 독립된 수사공간이 필요할 정도의 중대재해 발생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는바, 월 1.3회 정도의 사용을 위하여 1대 당 1억 3,000만원에서 8,300만원에 이르는 차량을 제작하는 것은¹²³⁾ 자산의

123)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구매·제작된 수사지원 차량 모델은 대형 밴인 쉐라티이고 2025년 예

감가상각 등을 고려했을 때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보임.

아리셀 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감독관들의 초기 현장대응을 위하여 독립된 수사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고용노동부는 2027년도까지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중대재해 수사가 이루어지는 15개 지방관서에 수사지원 차량을 모두 배치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으나, 모든 지청이 운행 빈도가 낮은 고가의 수사지원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모든 지방관서에 수사지원 차량을 배치하기보다 기존에 배치된 차량과 2025년에 구매할 예정인 차량을 인접한 지방고용노동관서 간에 공동으로 운행하는 등 효율적 운행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산안에 편성된 수사지원 차량의 모델은 스타리아임.

(4)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1-350)

< 사업 개요 및 계획안 내역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2001년~, 출연) 사업은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상시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50억원미만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시설 개선 및 노후·위험공정 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00억(2.1%) 증가한 4,817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안(B)	증감	
		계획액(A)	집행액 (’23.7)		(B-A)	(B-A)/A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458,237	471,792	283,564	481,792	10,000	2.1
·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108,348	95,707	44,834	-	△95,707	(순감)
· 스마트안전장치보급확산	12,569	35,000	14,448	-	△35,000	(순감)
· 안전일터조성지원	-	-	-	110,707	110,707	(순증)
· 안전동행 지원사업	296,339	322,000	214,395	332,000	10,000	3.1
· 건강일터조성지원	36,940	15,825	7,892	35,825	20,000	126.4
· 클린사업장 사후관리 및 사업수행경비	4,041	3,260	1,995	3,260	0	(전년동)

* 자료: 고용노동부

〈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사업 : 적합성평가 등 정부 인증제도에 대한 전수 조사 필요 〉

스마트안전장비 보급·확산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민간에서 개발·활용 중인 스마트 안전장치·설비를 발굴하여 재해 예방 효과를 확인한 후 중소기업장에 대한 재정지원 품목으로 지정하고, 지정품목 중 각 사업장(사업주)이 선정한 지원 희망 제품을 투자 계획 확인 단계에서 품목별 보조금 지급기준 및 최소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판단 금액의 80%를 지원함으로써, 재정적인 영세성과 신기술 정보습득 한계, 기존 작업방식의 관성으로 인하여 스마트 안전장치·설비 도입 및 활용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중소기업장에서¹²⁴⁾ 스마트 안전장비의 사용이 확산되도록 하려는 사업임.

이 사업은 올해까지는 독립된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2025년부

124)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제38조(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①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현장은 제외한다)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3.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2.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3. 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4.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5.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자[영 제71조 별표 21 각 호(제1호 및 제25호 중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은 제외한다)에 따른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한다]

터 새로 계획된 내역사업인 안전일터조성지원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2025년도 계획액은 2024년도와 동일하게 350억원임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에¹²⁵⁾ 따라 2023년에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 시스템 등 총 31종의 스마트 안전장비 품목을 발굴·지정하여 이중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등 11종의 품목¹²⁶⁾ 총 1,548건의 사업장 시설 개선 신청에 대하여 지원하였고, 2024년에는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화학물질 노출정보 모니터링 기기 1종을 지원품목으로 추가 발굴·지정하였으며¹²⁷⁾,

사업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지원 품목의 균형을 제고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지원품목을 선택·신청이 가능한 ‘자율신청품목’제도를 새로 도입하여¹²⁸⁾ 다음과 같이 총 6종 품목의 사업장

125)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이란 인공지능, 로봇공학,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안전보건장비 등(이하 "스마트 안전장비"라 한다)을 중소기업장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9조(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점검, 감독 또는 공단의 기술지원 등에 따라 개선해야 할 사항 중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단이 따로 정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2. 사고사망 감축 및 자율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단이 따로 정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3.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스마트 안전장비로서 공단이 스마트 신기술을 적용하여 산업재해 예방기능을 인정하는 품목
4. 그 밖에 사업장의 안전시설·작업환경·작업공정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단이 따로 정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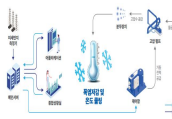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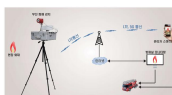
126) 고정식 AI기반인체감지시스템, 이동식 AI기반인체감지시스템,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고위험기계설비 스마트통합안전시스템, 차량계 건설·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고정식 화학사고예방 통합모니터링시스템, AI화재감지기, 근력보조 슈트,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보조장치, 스마트 안전보건 개인보호구

127) [별첨1] 스마트 안전장비 지정품목 참조

128) [자율신청 품목 보조금 지급기준]

지원 신청에 대하여 지원 결정을 하였음.

[2024년 지원 결정된 자율신청 품목]

연번	품목명	설 명	참고 사진
1	산업용 청소로봇	맵핑방식, 라이다 센서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방식으로 미끄러짐, 근골격계 질환 등의 건강장해 위험예방	
2	운반로봇	반사테이프 인식 자동주행방식, TAG를 통한 명령어 입력방식으로 바닥라인을 따라 정해진 구간 자동운반 또는 사람을 인식하여 사람을 따라오는 기술 등으로 제품 운반하여 근골격계질환 등 예방	
3	추락보호 에어백	사다리 및 외벽 작업 시 추락감지센서가 내장되어 있는 산업용 추락보호 에어백을 도입하여 떨어짐 부상 방지	
4	쿨링포그 시스템	미세먼지 및 폭염저감을 위한 스마트 IoT쿨링포그시스템으로 미세먼지, 비산먼지, 폭염 등 건강장해 예방	
5	레벨 측정레이저 센서 일체	비접촉식 사일로 재고 측정장치로 레이더센서 사용하여 현장작업 최소화를 위한 안전사고 사전방지	
6	불꽃감지기	IoT기반 LTE통신 무선 CAM형 불꽃감지기로 실시간 영상 확인 및 화재발생 즉시 화재알람 생성으로 화재원인분석과 신속한 대처 가능	

그런데 올해 지정 지원품목 중 차량계 건설 및 하역운반 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카메라센서형 충돌방지 장치의 특정 모델 중¹²⁹⁾ 「전파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적합인증¹³⁰⁾ 받은 사항에 대하여 같은

- 산업재해 예방 또는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확보를 위한 제품
 - 인공지능·로봇공학·정보통신·사물인터넷·센서기술 중 1개 이상이 적용된 제품
 - 국가 및 정부부처 등의 스마트·신기술·혁신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
- * 혁신제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기술(NET 등)인증 등

129) ㈜세이프엠이 수입하는 AI 사각지대 경고장치인 세이프 1004

130)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 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또는 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제37조 및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2.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3.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
5.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제68조·제69조에 따른 기술기준
6.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기술기준
7.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②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를 스스로 시험하거나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 가능한 기관의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이하 “자기적합확인”이라 한다)하거나 적합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여야 한다.

⑧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보관·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 또는 포장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이하 “적합성평가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평가표시와는 별도로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관리한 사실을 기자재에 대한 설명서 등에 표시(이하 “자기적합확인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의 제조·수입·판매를 허용(이하 “잠정인증”이라고 한다)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망의 침해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망 이용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2. 전파에 혼신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전파이용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3. 이용자의 인명, 재산 등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등 기자재 이용상 위해가 없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거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내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⑪ 잠정인증을 받은 자가 제10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인증의 효력은 소멸한다.

조 제6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파생 제품이¹³¹⁾ 18개 사업장에 총 77개가 설치되어 동 내역사업 예산에서 7,400만원이 지원되었음. 해당 사안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접수된 고발로¹³²⁾ 인지된 것으로 현재 적합성평가 주체인 국립전파연구원이¹³³⁾ 관련 법률 위반으로 제품 수입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¹³⁴⁾ 변경 신고 이행을 명령하였음.¹³⁵⁾ 해당 제품은 2024년 10월 30일 적합등록을 완료하여 정상적인 수입·판매가 가능한 상태이긴 하나 향후 유사사태가 발생하여 제품의 인증기관이 적합성평가를 취소하거나, 제품을 수거, 철거, 파기할 수 있으며, 제품의 수입·판매·사용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¹³⁶⁾ 경우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한 보조금을 사업장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기준과 적합성평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 방법, 절차, 자기적합확인 사실의 서면 관리 및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1) 세이프1004-4BW

132) '24년도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부정수급 고발(2024-00006, 2024. 07. 26.)

1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직무) 국립전파연구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0. 정보통신·방송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134) 제9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5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5) 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거나 개선, 시정, 수거, 철거, 파기 또는 생산중지, 수입중지, 판매중지,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3.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의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8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허위로 지정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적합성평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다.

136) 위의 제58조의4제1항 참조

으로부터 환수를 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들은 근로자의 안전과 직접 연결되고, 특히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는 그 성능이나 안전성에 있어 검증 기간이 짧기에 정부는 개별법령에 성능이나 안전성의 기준을 정하여 이러한 장비를 수입·생산·판매를 하는 자로 하여금 성능과 안전에 관한 인증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¹³⁷⁾ 제품의 안정적인 성능과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있음.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동 사안에 대하여 2024년부터 품목별 최소성능기준에 「전파법」에 의한 적합인증¹³⁸⁾을 포함시킨다는 방안을 표명하였으나, 올해 도입한 자율신청 품목 제도로 사업장이 신청하는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유사 사례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인 인증을 추가하는 점증적인 제도개선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임.

또한 보조금 환수조치는 지원 사업장이 자부담한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여 사업장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보조금 환수 과정에서 행정력이 추가로 소모될 뿐 아니라 계획액 집행의 차질 등으로 인한 타 사업장의 피해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유사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함.

137) [별첨3] 제품의 성능 및 안전 인증 의무 관련 법률 참조

138) KC 전파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동 사업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수요를 창출하여 해당 안전장비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기존 보조사업 대비 지원 비율이 80%이고, 최대 지원금액도 3,000만원으로¹³⁹⁾ 높기 때문에 스마트 안전장비 생산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여 사업추진에 있어 적법성과 특별히 높은 수준의 공정함 등이 요구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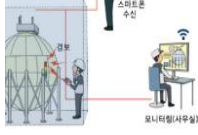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개별법령에 규정된 산업 장비의 성능과 안전 인증 관련 제도를 전수조사하여 최소성능기준에 포함시키는 등의 제도개선을 하여 수입·제조·판매 등에 있어 법률상 하자가 없는 제품이 지원되도록 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도모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시장 확대에 있어서도 법률을 준수하면서 정책 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139)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천만원까지이나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한함),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지정 사업장,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 등 6개의 고위험업종일 경우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하여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별첨 1

스마트 안전장비 지정품목(32종) 상세

번호	품목명		설 명	관련 그림
1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 시스템	고정식	인공지능(AI)모델 기반으로 카메라 또는 센서(Lidar 등)를 통해 위험영역·행동, 사고발생 등을 인지하여 경보 또는 조치를 수행하는 시스템	
2		이동식	인공지능(AI)기반 모델 및 이동통신기술이 적용된 카메라를 통해 근로자가 상시 이동하는 작업(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행동·상황 등을 인지하여 모니터링 및 경보를 해주는 장비	
3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 시스템	ILO	고위험 기계설비에 센서와 제어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접근 및 행동에 따라 설비의 전원차단 및 정지하는 시스템	
4		인공지능	고위험 기계설비에 센서 및 인공지능(AI)와 제어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접근 및 행동에 따라 설비의 전원차단 및 정지하는 시스템	
5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이동형 설비에 센서와 제어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 등 충돌위험시 서행·정지하는 시스템	
6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		고소작업대와 천장 사이에 거리(높이)를 센서로 측정하여 위험 높이인 경우, 자동정지하는 장치	
7	인공지능(AI)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 장치	기본	크레인에 인공지능(AI)기반 모델과 카메라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낙하물로 인한 깔림 위험구역에 근접하는 경우, 경보 및 정지하는 시스템	
8		흔들림 방지장치 (옵션)	크레인이 물건을 인양·이동시 발생하는 흔들림을 제거하여 물건의 떨어짐 사고를 예방	
9	차량계 건설 및 하역운반 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무선 ICT, 센서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 안전장치로서 다음을 말함		
10		전도예방 장치	하역운반기계가 중량물 운반시 무게와 중심을 감지하여 전도 등을 예방하는 장치	
11		충돌방지 장치(카메라·센서형)	카메라·센서를 통해 하역운반차량이 주변 근로자와 충돌 위험을 경보장치로 알려 예방하는 장치	
12		자동 서행 및 정지장치	무선장치 및 태크(tag) 등을 통해 전동지게차 및 근로자가 접근하여 충돌위험이 있을 경우, 거리 별로 서행 및 정지하는 장치	
13		부착형 충돌방지 장치	중장비에 자석 등으로 모니터, 카메라, 경보기 등을 부착하여 사람을 인식하여 접근 시 경보발생	
14	스마트 통합전도 방지시스템	이동식크레인	각 설비에 센서 및 전도방지장치 등을 설치하여 전도를 예방하고, 무선통신을 통해 전도의 상태 및 위험 등을 스마트 폰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15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연번	품목명		설 명	관련 그림
16	화학 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고정식	인화성가스·액체를 취급하는 장소에 감지기, 수신반 등을 설치하여, 가스누출상황을 무선통신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모니터링·경보 할 수 있는 시스템	
17		이동식	인화성가스·액체를 취급하는 장소에 이동식 감지기, 수신반 등을 휴대 및 상시 비치하여 가스누출상황을 무선통신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모니터링·경보 할 수 있는 시스템	
18		인공지능(AI)화재 감지기	인공지능(AI), IoT 또는 그 밖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불꽃 등을 초기에 인지·반응하여 화재·폭발재해를 예방하는 장비	
19		인공지능(AI)계측 장치	시카메라를 통해 아날로그(바늘, 막대, 숫자형 등) 계측기의 측정값을 변환하여 서버 및 관리자에게 전송하는 장치	
20		화학물질 누출 방지형	검출대상물질(유해화학물질 등)과 일반 액체(빗물 등)를 선택적으로 감별할 수 있는 기술이 접목된 누액감지 센서 및 모니터링 시스템	
21		방폭정전기측정기(옵션)	인화성가스·액체를 취급하는 장소에 방폭 안전인증을 받은 정전기 측정기를 통하여 안전하게 점검하고, 이를 무선통신으로 스마트폰 등과 연결하여 작업관리자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비	
22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이륜차 운전자가 충돌 등으로 자리에서 이탈하는 경우, 조끼와 이륜차에 연결된 고리가 풀리면서 에어백이 작동	
23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전기사고 예방장치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전력사용에 대한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전력 이상* 발생 시 알림 및 조치하여 전기 관련 재해를 예방하는 장치 *전력 이상 과부하, 누전 이상주파수, 과전압 전원궤잡 온도상승(화재) 등	
24		아크제거 장치	센서 등을 통해 수배전반에 발생하는 전기아크를 감지하여 순간적으로 제거하는 스마트 안전장치	
25	근력보조 슈트		고정자세, 중량물 취급 등 신체 부담이 되는 작업을 인공골격·근육, 센서 및 동력을 통해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줄여주는 슈트	
26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사람이 취급하기에 무겁고 다양한 중량물을 일정한 힘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장치	
27	스마트 안전보 건 개인 보호구	귀마개	전파 및 그 밖에 스마트 기술 등을 통해 소음을 제거하는 귀마개	
28		방진 마스크	호흡과 연동된 센서를 통하여 공급 유량을 자동으로 조절이 가능한 전동식 방진마스크	

29	스마트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장비		무선통신(IoT) 또는 그 밖의 신기술을 통해 공간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밀폐 작업상황 을 모니터링하여 질식·중독재해를 예방 하는 장비	
30	유 해 물 질 통합 안 전 예 방 관 리 시스템	환기설비 통합 시스템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ICT) 또는 그 밖의 신기술을 통해 유해물질의 사용량, 정보, 노출량 등 사용정보와 환기장치의 모니터링·통제 등 통합관리가 가능한 시 스템	
31		화학물질 노출정보 모니터링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감지기로 화학 물질 노출수준 통합관리 프로그램이 적 용된 스마트폰(또는 웨어러블기기) 및 컴퓨터 등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상황 을 경보하는 시스템	<'24년 신규품목>
32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무선, ICT, 센서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 한 인체감지 충돌예방장치가 설치된 전 동지게차로서 충돌 위험 시 경보장치로 위험을 알리고, 무선통신으로 관리자 등 에게 알려 조치할 수 있는 장비	

별첨 2

지정품목(32종) 스마트 안전장비 정의 부합 요약

연번	품목명		스마트 안전장비 정의 부합 요약	
			산재예방분야	주요적용기술
1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고정식	끼임·부딪힘, 화재 등	인공지능, 정보통신
2		이동식	끼임·부딪힘, 화재 등	인공지능, 정보통신
3	고위험 기계설비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ILO	끼임·부딪힘	센서기술
4		인공지능	끼임·부딪힘	인공지능, 정보통신
5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끼임·부딪힘	센서기술
6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		끼임	센서기술
7	인공지능(AI)스마트 크레인충돌방지장치	기본	끼임·부딪힘	인공지능, 정보통신
8		기본+흔들림방지장치(옵션)	끼임·부딪힘	인공지능, 정보통신
9	차량계 건설 및 하역운반기계스마트 안전장치	전도방지	깔림	정보통신, 센서기술
10		충돌방지	끼임·부딪힘	정보통신, 센서기술
11		자동·서행 및 방지	끼임·부딪힘	정보통신, 센서기술
12		부착형 충돌방지	끼임·부딪힘	정보통신, 센서기술
13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이동식크레인	물체에 깔림·부딪힘	정보통신, 센서기술
1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물체에 깔림·떨어짐·부딪힘	정보통신, 센서기술
15		이삿짐운반용리프트	물체에 깔림·부딪힘	정보통신, 센서기술
16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고정식	화재·폭발	정보통신, 센서기술
17		이동식	화재·폭발	정보통신, 센서기술
18		인공지능(AI)화재감지기	화재·폭발	인공지능, 정보통신, 센서기술
19		인공지능(AI)계측장치	화재·폭발	인공지능, 정보통신
20		화학물질누출방지형	화재·폭발	정보통신, 센서기술
21		방폭정전기측정기(옵션)	화재·폭발	정보통신, 센서기술
22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넘어짐·충돌	센서기술
23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전기사고예방장치	전기화재·누전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24		아크제거장치	전기화재·누전	정보통신, 센서기술
25	근력보조 슈트		근골격계질환	센서기술
26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근골격계질환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센서기술
27	스마트 안전보건개인보호구	귀마개	소음성난청	센서기술
28		방진마스크	호흡기질환	센서기술
29	스마트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장비		질식	사물인터넷, 센서기술
30	유해물질통합안전예방 관리시스템	환기설비 통합 시스템	유해물질 노출·폭발	센서기술
		화학물질 노출정보 모니터링	유해물질 노출·중독	정보통신, 센서기술
31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끼임·부딪힘	정보통신, 센서기술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4(건설기계부품 인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그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이하 “부품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이 부품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장착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에 대하여는 부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누구든지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건설기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고용주는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건설기계에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4(안전설비의 인증) ① 안전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안전설비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정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안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에 대하여는 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할 안전설비로서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제작차의 소음이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군용·소방용 등 공용의 목적 또는 연구·전시목적 등으로 사용하려는 자동차 또는 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 중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작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해당 인증·변경인증의 배기소음(배기가스가 배기구로 배출될 때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결과 값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방법과 절차, 인증의 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제8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③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검사(이하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절차 및 수수료

2. 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

3.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주기

4.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수수료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① 승강기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승강기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이하 “부품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변경사항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는 경우 부품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고시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1. 승강기안전부품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하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이라 한다)

2.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기준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각 기자재별 적용범위

2.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 기준·방법 및 절차

3.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성능 측정방법

4.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우수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한다)의 인증 표시

5. 그 밖에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하려면 해당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고효율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측정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해당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할 수 없다.

⑥ ~ ⑧ (생략)

〈 건강일터조성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사업 수요 증가
대비와 사전 수요조사·예측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사업 준비 필요 〉

내역사업인 건강일터조성지원사업은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 설비를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는 총 158억 2,500만원의 계획액으로 근로자가 화학물질 또는 조리흡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¹⁴⁰⁾ 최대 5,000만원까지¹⁴¹⁾ 작업장 내 유해물질을 포집하여 배출하는 국소배기장치¹⁴²⁾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2025년부터는 지원물류센터(창고)나 생활폐기물 사업장 등 환기장치가 열악하거나 불량하여 근로자들이 온열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실내 작업 사업장에 실내 작업장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환기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에 폭염 재난 예방 대책 설비 및 시설 구입 비용을 지원하며, 10,000개의 사업장에 온열질환 응급 키트(Kit)를¹⁴³⁾ 지원하려는 계획으로 다음과 같이 200억원을 증액(126.4%)하여 총 358억 2,500만원의 계획액을 편성함.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해마다 증가하는 등 소규모, 건설 사업장 중심으로 폭염에 대한 근로환경의 취약성이 사회

140) 유해성이 매우 높은 허가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허용기준 설정물질 등 취급사업장인 경우 최대 5,000만원, 조리흡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은 70%, 50인 이상 사업장은 50%까지 지원

141) 5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5,000만원, 설치비용의 70%까지 지원하고, 50인 이상 사업장은 유해성이 매우 높은 허가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허용기준 설정물질을 취급하거나 조리흡에 노출되는 경우에 한해 최대 5,000만원, 설치비용의 50%까지 지원

142) 작업장 내에 유해물질이 확산되거나 근로자에게 노출되기 전에 포집하여 배출하는 장치로서, 후드·덕트·공기정화장치·송풍구·배출구로 구성되며, 시장가격은 300~500CMM기준 6~9천만원 수준임

143) 구성품 예시 : 쿨매트, 쿨링액, 머리 냉찜질 세트, 식염포도당 등

적 이슈로 부각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폭염 대책 설비·시설·물품을 지원하는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다고 사업의 추진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온열질환¹⁴⁴⁾ 산업재해신청 승인¹⁴⁵⁾ 현황]

(단위: 건, 괄호 안은 사망사고 건수)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9
산재신청승인	13(2)	19(1)	23(5)	31(4)	25(1)

* 자료: 근로복지공단

새로 편성된 사업은 매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이라는 직접적인 효과를 제고할 수 있고, 폭염에 노출된 근로환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충실히 취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의의가 있음.

해당 사업은 사업의 내용에 따라 ①폭염에 따른 작업장 체감온도의 상승을 감소시켜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설비·시설 지원사업과 ②작업장의 체감온도 상승이 근로자의 온열질환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장에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온열질환용 응급 키트

144) 직업병코드(대) “09(일사병, 열사병, 화상, 동상)”, 상병분류코드 “열사병 및 일사병(T67*)” 해당 자료

145) 근로복지공단 최초요양신청서 1회차 처리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해발생일과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통계(통계청 승인 통계)와 다를 수 있음

<Kit>를 배분하는 물품지원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고,

설비·시설 지원 사업은 지원 사업장의 수와 지원 금액의 정도에 따라 ①소수의 사업장에 최대 5,000만원이라는 비교적 많은 금액을 집중 지원함으로써¹⁴⁶⁾ 사업주가 폭염에 노출된 작업장 온도 상승을 구조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대형 설비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환기설비 설치 지원 사업과 ②그늘막·이동식 에어컨·휴식공간 등 폭염으로부터 일시적으로 근로자의 체온을 유지할 수 시설을 최대 3,000만원까지 비교적 많은 사업장에서 구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¹⁴⁷⁾으로 분류할 수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의 계획액을 산출하면서 개별 사업에 대한 사업주의 수요 파악 등 지원 사업장의 수와 적정한 지원 금액 산출을 위한 사전 준비가 부족하였고, 내내역 사업 간 계획액 비율 등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면밀한 고려 없이 다음과 같이 200억원을 증액한다는 계획으로, 내내역 사업별 최대 지원 금액과 지원비율만 정하여 역으로 예상되는 지원 사업장의 수를 산출하였음.

146) 최대 5, 000만원 한도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설치비용의 70%까지, 50인 이상 사업장은 설치비용의 50%까지

147) 설치비용의 70%까지 지원하며,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당 평균지원금액은 315만원으로 추산하여 지원사업장의 수를 5,400개로 예상하고 있음

**[건강일터조성 지원사업 중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신규 지원사업
계획(안) 산출내역]**

(단위: 만원)

사업 내용	계획액	최대 지원금액	지원 사업장 수
환기설비 설치 지원	200,000	5,000	40
폭염 재난 예방 대책 설비 및 시설 구입 비용 지원	1,701,000	3,000	5,400
온열질환 예방 응급 키트(Kit) 지원	100,000	10	10,000

* 자료: 고용노동부

이러한 사업규모 계획은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과정에서 정부 요구액이 일부만 반영되어 신규사업의 계획액이 결정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최근 하절기 기상여건을 고려할 때 폭염은 일상적인 기상 상황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신규 지원사업의 계획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한 후 구체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계획액 규모의 적정성이나 내역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 간 비중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계획안을 다시 설정하여 사업 시행 첫해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

첫째, 지난 10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폭염에 장시간 작업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위반

한 사업주에게는 5년에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¹⁴⁸⁾ 따라서 지금까지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포함하여 폭염에 취약한 작업환경을 개선하는데 미온적이었던 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 사업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특히, 계획액이 사업장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이 다수 발생할 수 있고 지원을 받지 못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사업장 간 지원 여부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둘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환기설비는 면적이 넓고 개방형 구조로 되어 있어 냉방기기를 설치하지 않는 실내 작업장에 설치되기 때문에 해당 설비의 설치 지원의 대상이 되는 업종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처리 업체나 물류센터(창고) 등으로 제한됨.¹⁴⁹⁾ 또한 사업장에 지원되는 금액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내내역사업 중 가장 큰 최대 5,000만원으로 고용노동부는 매년 40여 곳의 사업장에 집중 지

148)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49) 고용노동부는 고열·노출 제조업 및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소규모 택배운수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온열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인 국소배기장치, 제트팬, 썰링팬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함

원한다는 계획임.¹⁵⁰⁾

그런데 온열질환 발생 취약 사업장은 건설업, 택배·운수 관련 업종, 환경미화 등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고열’ 노출 제조업, 도소매 및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에 분포하고 있고, 다양한 업종 중에서도 옥외작업으로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건설업에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건설업이 제외된 일부 업종의 특정 형태 사업장에만 최대 5,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나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¹⁵¹⁾

150) 고용노동부는 총 200개소에 대해 연차 지원한다는 계획임(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p.324 참조)

151)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2023년 11월 현재 ‘고정식 산업용 냉풍기+제트팬 또는 실링팬’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실제 사업장당 지원금액이 5,000만원보다 적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지원 사업장의 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함

지원설비	주요 구성품	제작·설치 예상금액	지원예상금액 (소요금액 70% 기준)
고정식 산업용냉풍기	냉풍기 본체, 덕트, 디퓨즈 등	평균단가: 5백만원 (공사비 별도 :1백만원/m)	평균 8.4백만원 (덕트 등 공사비 포함)
		작업장 규모(50인 미만)에 따라 평균 2대 필요 예상*	
JET 팬	제트팬 본체	평균단가: 3백만원/대	평균 2.1백만원
		작업장 규모(50인 미만)에 따라 최소 1대 이상 필요 예상	
실링팬	실링팬 본체	평균단가: 4백만원/대	최소 2.8백만원
		작업장 규모(50인 미만)에 따라 최소 1대 이상 필요 예상	

[업종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현황]

(단위: 건, 괄호 안은 사망자 건수)

구분	계	건설업	제조업	국가·지자체	시설관리·사업지원	도소매·음식·숙박	농·림업	운수·창고·통신	기타
계	115(12)	60(10)	13(1)	21	11	5	5	4	4
2019	20(2)	11(2)	3	3	-	-	2	1	-
2020	18(2)	9(2)	3	4	2	-	-	-	-
2021	25(3)	11(2)	2	3	3	1	1	1	3(1)
2022	24(4)	15(4)	2	-	3	2	-	2	-
2023	28(1)	14	3(1)	3	3	2	2		1

* 기타: 개인맞가사서비스업(2명, 사망1명 부상1명), 건설업본사(2명), 골프장(1명), 기타과학기술서비스(1명) 등

** 자료: 고용노동부

셋째, 200억원이라는 한정된 금액으로 수백만 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¹⁵²⁾ 온열질환 관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좀 더 많은 사업장에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대상 사업장의 범위와 개별 사업장이 처한 환경에서 사업주의 선호 등 가장 효율적인 지원형태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필요한 지원 항목과 물량 등 해당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설정하여 사업의 효과성이나 경제성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¹⁵²⁾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 발생 취약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건설업(건설업 본사) 37만개소, 택배·운수 관련 업종 9.9만개소,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환경미화 등) 11만개소, ‘고열’ 노출 제조업 약 2만개소, 도소매 및 음식업 약 150만개소 등 총 210만개소로 추정하고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급격한 수요 증가 등의 상황에 대비하고, 한정된 재원이 많은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며, 지원의 정도가 일부 사업장에 집중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사를 통한 근거를 바탕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실제 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적 요인들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사전에 준비하여 신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5) 업종별 재해예방(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2-350)

〈 사업 개요 및 계획안 내역 〉

‘업종별 재해예방’(1988년~, 출연)은 사고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중 사고사망 고위험 사업장을¹⁵³⁾ 선정하여 공단이 직접 산업안전을 저해하는 핵심위험 요인을 제거하도록 지도하거나 민간전문기관¹⁵⁴⁾을 활용하여 기술지도·지원을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확인과¹⁵⁵⁾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

153) 공단직접시행: 제조·서비스업 50인 미만,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

민간재해예방기관 위탁: 제조 50인 미만 사업장, 1억원 미만 건설현장

154)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산업안전지도사(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48조, 제142조)

155)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또는 건설공사를 중지하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스로 심사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① 제42조제4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발 및 보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임. 2025년도 계획안에는 전년도 계획 대비 117억 9,700만원(7.5%) 증가한 1,700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안(B)	증감	
		당초(A)	집행액 ('23.7)		(B-A)	(B-A)/A
▪ 업종별재해예방	126,104	158,255	98,411	170,052	11,797	7.5
· 사고성재해 집중관리(공단)	26,845	12,151	6,017	13,386	1,235	10.2
·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44,653	45,023	33,033	51,323	6,300	14
· 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	4,052	2,620	1,421	2,620	0	(전년동)
·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50,554	98,461	57,940	102,723	4,262	4.3

* 자료: 고용노동부

②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설공사 중에 근로자가 사망(교통사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확인 결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로서 제5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기존사업과 유사·사업 간 중복 편성된 신규사업의 추진 여부 검토 등 〉

내역사업인 사고성재해집중관리(공단)에는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이 4억원의 계획액으로 새로 편성되었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08년 이후부터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에도,¹⁵⁶⁾ 최근 5년간 노무제공자의 사고사망자가 6배나 증가하는¹⁵⁷⁾ 등 사업장을 단위로 지도와 점검이 이루어지는 기존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사업으로는 직종별 다양한 사고 원인으로 인하여 개별 사업장을 특정할 수 없는 노무제공자들의 사고성재해를 예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매년 초 노무제공자와 밀착해 있는 플랫폼 운영사, 직종별 협회 및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노무제공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사고 원인과 이를 토대로 한 교육, 설문조사, 물품지원 등의 활동계획을 공모하여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선정 후 사업비의 50%에서 최대 10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함.¹⁵⁸⁾ 동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156)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현황>

(08.7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12.5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16.7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19.1월) 전체 건설기계종사자(덤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 27개)
(20.7월) 방문판매원, 대여제품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시멘트, 컨테이너, 철강대, 위험물 운송)
(21.7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22.7월)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23.7월) 전체 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157) 2019년 14명 → 2020년 28명 → 2021년 36명 → 2022년 63명 → 2023년 83명

1월 11일에 개최한 「이륜자동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서 배달종사자 100여 명의 이륜자동차를 무상으로 점검한 것을 계기로 이를 예산 지원 사업의 형태로 확대한 것임.

다른 내역사업인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에는 업종별 협회·단체 네트워크 지원 사업이 8억 8,600만원의 계획액으로 새로 편성되었음.

해당 사업은 각종 협회·단체 중심으로 업종 특성 등을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운영하려는 취지로 사업주 단체 등이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어 대학, 업종별 협회·단체, 민간 재해예방기관, 전문 컨설팅 업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운영하여 안전보건가이드·매뉴얼을 제작하고, 민간 재해예방기관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업종별·공정별 전문 교육을 실시하며, 업종별 산재예방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재예방 사업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고, 업종별 협회·단체 담당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됨.

고용노동부는 개별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문기관의 점검과 지도로 지원되던 기존 사업의 체계와 달리 업종별 단체 등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직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체계를 정착하는 것이 두 사업의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새로 편성된 사업들은 다음의

158) 고용노동부는 비영리단체의 경우 전액 지원하고, 플랫폼 운영사 등 영리기업에 대해서는 소요비용의 50%를 매칭하여 지원하는 등 지원대상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함

관점에서 그 실시 여부를 검토하거나 사업 추진체계를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세부사업인 업종별 재해예방은 공단을 포함한 산업재해 예방 전문기관이 고위험 사업장을 개별 방문하여 위험요인들을 점검하고 위험요인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지도하며, 더 나아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자기규율의 예방체계 구축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임.

따라서 사업시행 주체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전문성과 장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사업주의 이해관계나 근로자의 편의적 관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롯이 안전·보건의 관점에서 근로 환경을 점검·지도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함. 그런데 두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서 사업을 시행하는 플랫폼 운영사, 직·업종별 협회·단체 등은 사업주 및 직·업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단체로서 산업안전보건분야 전문성이나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업주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근로 여건의 안전·보건 문제에 있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음. 특히 업종별 협회·단체 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주로 사업주 단체가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공모사업 운영을 총괄하기 때문에 동 사업에서 제작·제공되는 안전보건가이드 및 매뉴얼이나 민간 재해예방기관 컨설턴트 교육이 근로자 안전의 관점에서 업종·작업 공정 등의 특성만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산

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정부가 예상·제시하는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 공모 사업의 내용 또한 교육, 설문조사, 물품지원 등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별 위험요소의 점검과 인지, 방법론의 습득과 같은 기존 사업의 내용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

[정부가 제시하는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공모 예시]

	공모사업
1	‘이륜자동차의 점검·정비 요령 안내’, ‘안전운전 실습 교육’ 등 안전관리 역량향상 지원
2	업무용 app을 활용한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u>캠페인</u> 추진
3	휴게소, 터미널 등 화물차들이 운집하는 장소에서의 차량 정비 안내, <u>안전캠페인</u>
4	일정 거리(1만km 등) 내 안전운행 시 인센티브 지원 등 참여형 안전 <u>이벤트</u> 실시

* 자료: 고용노동부

해당 사업은 업종에 특화된 산업재해 예방사업이라기 보다는 같은 업종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캠페인 등 1회성 안전보건문화 정착 사업에 더 가까울 것으로 보임. 실제 2023년까지 다른 세부사업인 안전보건문화정착(4154-350)에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이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다음과 같이 업종별 협회·단체가 공모한 사업에 대하여 총 5억 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국고 보조금 사업의 재정비 및 건전재정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와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주요 기능과의 유사성 등의 이유로 2024년부터 동 사업이 폐지된 점을 고려한다면 새로 편성된 사업들은 실제로는

폐지된 사업을 사업명만 변경하여 다른 세부사업에 다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됨.

[2023년도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 중 업종별 협회·단체 등 지원 현황¹⁵⁹⁾]

(단위: 천원)

	공모단체	공모사업	지원금액
1	(사)대한영양사협회	「조리실 안전 지키기 Never stop!」 캠페인	20,000
2	(사)대한영양사협회	「조리실 안전 지키기 Never stop!」 캠페인	20,000
3	(사)한국직업건강 간호협회	마음건강 서포터즈단 운영 및 상호존중 교육과 홍보 "하이파이프 캠페인"	50,000
4	재단법인 피플	2023년도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디지털 기반의 자기규율 산재예방체계 확립)	25,000
5	(사)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미래근로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모전 및 중소기업 안전문화 조성 세미나	60,000
6	대전광역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산재예방 활동	25,000
7	라이더유니온	도시물류거점 플랫폼배달노동자 근골격계 및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20,000
8	(사)퀵서비스협회	특고종사자(퀵서비스) 치명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보건 캠페인	25,000
9	(재)한국플랫폼프리 랜서노동공제회	플랫폼·비정형노동종사자 안전환경 자율개선 지원사업	35,000
10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남지회	지역별·업종별 특화 예방사업	30,000
11	대한산업안전협회 충북지역본부	지역별·업종별 특화 예방사업	50,000
12	전라북도 안전보건네트워크	전라북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안전문화 활동	20,000
13	충주상공회의소	산업재해 ZERO - 안전한 충주 만들기	20,000
14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	부천시 및 김포시와 함께 하는 산업재해 예방문화 조성사업	45,000
15	한국제지연합회	제지·펄프업종 특화 중대재해 예방 사업	20,000
16	(사)퀵서비스협회	특고종사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운전 문화 확산 캠페인	33,000
17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	경기도와 함께하는 산업재해 예방문화 조성사업	20,000
지원금 합계			518,000

* 자료: 고용노동부

159) 해당 공모사업에는 총 56개의 언론사 및 협회·단체에 총 21억 2,0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여기에서는 언론사는 제외함.

셋째, 고용노동부는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이 노무제공자의 직종 및 업무적 특성으로 기존의 정부 주도의 지도·점검 방식을 통한 사고예방의 한계 노출로 신규로 계획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노무제공자 중 산재 발생률이 높아 동 사업의 대상 직종으로 제시한 퀵서비스기사와 화물차주의 경우 이들에게 발생한 대부분의 산재가 일반 교통사고에 의한 것으로서 사업장 단위로 실시되는 재해예방 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무제공자’의 근로환경에 기인하기보다는 운전이 주 업무인 특정 직종에서 발생하는 결과로 보임.

[최근 5년간 퀵서비스기사의 사고사망자 발생형태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총 계	9	15	18	39	38
끼임	1	0	0	0	0
교통사고	8	15	18	39	38

* 자료: 고용노동부

[최근 5년간 화물차주의 사고사망자 발생형태 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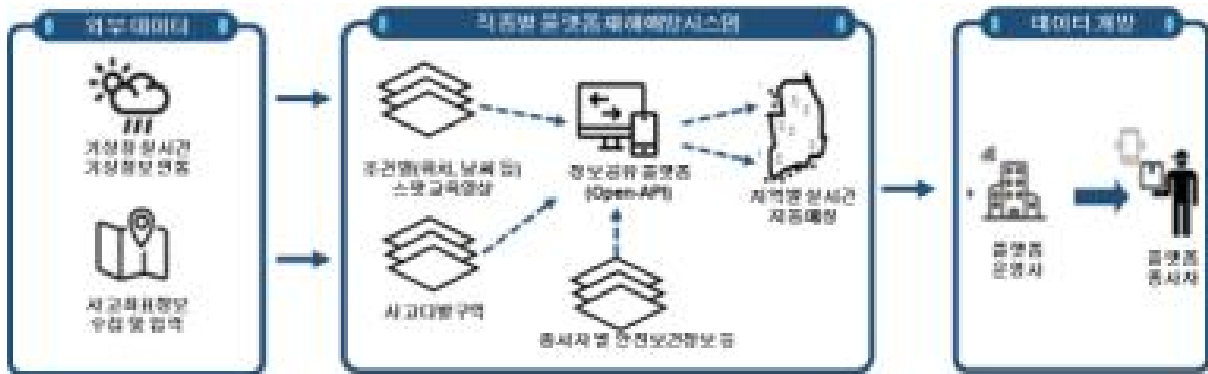
구 분	2020	2021	2022	2023
총 계	1	9	7	22
교통사고	1	6	5	12
떨어짐	0	0	1	4
무너짐	0	1	1	1
부딪힘	0	1	0	1
물체에 맞음	0	1	0	1
넘어짐	0	0	0	1
끼임	0	0	0	1
화학물질 누출·접촉	0	0	0	1

* 자료: 고용노동부

특히 고용노동부가 앞서 제시한 ‘업무용 app을 활용한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캠페인 추진’¹⁶⁰⁾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2022년부터 매년 3억 5천만원을 들여 플랫폼을 통해서 단독·이동 노동하는 종사자의 근로특성을 고려하여 종사자가 이용하는 종사자용 어플리케이션에 직종별 재해예방·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여 이륜차 배달종사자, 택배기사, 방문점검원, 대리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노무제공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직종별 재해예방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160) 표 [정부가 제시하는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공모 예시] 2번 참조

[직종별 재해예방 플랫폼 시스템 작동 프로세스]



	제공내용
추천영상	종사자 위치에 따른 실시간 기상(기상청 날씨정보 연동)을 반영하여 안전보건사항, 건강관리 등 스팟영상 제공 '23년(150종), '24년(175종 예정)
사고다발구역	이륜차 배달종사자가 사고다발구역 통과 시 경고·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찰청 협업을으로 사고다발구역 반영을 최신헌

종합하건데, 새로 편성된 두 사업은 사업장의 위험요소 점검과 지도 이행여부 확인과 안전보건관리 체제의 정착 등 업종별 재해예방이라는 세부사업의 내용과 맞지 않고,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폐지된 기존 사업 및 현행 사업과의 유사·중복의 소지가 있어 사업 시행의 필요성이나 효과성에 또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들의 추진 체계나 필요성 등을 다시 검토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이 그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6) 안전보건문화정착(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4-350)

〈 사업 개요 및 계획안 내역 〉

‘안전보건문화정착’(1988년 ~, 출연) 사업은 ①계층별로 수준에 맞는 다양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공급하며(안전보건교육 및 미디어개발), ②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종사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법정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전문교육과정 운영), ③안전의식 확산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의 달 운영 등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방송·언론매체 등에 산재예방 캠페인을 추진(안전보건문화 선진화)하는 사업으로,¹⁶¹⁾ 2025년도 계획안에는 전년도 계획 대비 27억 4,900만원(8.3%) 증가한 356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A)	집행액 (‘23.7)			
▪ 안전보건문화정착	32,357	32,925	17,361	35,674	2,749	8.3
· 안전보건교육 및 미디어개발	19,133	20,112	11,082	22,040	1,928	9.6
· 전문교육과정운영	4,058	4,313	2,637	5,134	821	19
· 안전보건문화 선진화	6,890	8,500	3,642	8,500	-	-
· 민간재해예방 활동지원	2,276	-	-	-	-	-

* 자료: 고용노동부

161) 민간재해예방 활동지원은 2024년부터 폐지되었음

〈 외국인 근로자 서포터즈 사업 추진체계 수정 필요 〉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 중 ‘안전보건교육 및 미디어개발’은 ①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며, ②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기초안전보건교육비를 지원하고, ③숏폼이나 메타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안전보건 콘텐츠를 개발·보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안에는 19억 2,800만원이 증액된 220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외국인 근로자 안전서포트라는 내내역 사업이 새로 계획된 데에 따른 것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안전서포트 사업은 최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¹⁶²⁾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배치 전 전반적인 안전의식 제고 등을 위해 취업교육기관에서 받은 산업안전교육 시간이 기존 3 ~ 5 시간에서 5시간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시간 연장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강사료나 출장비, 취업 중 강화교육의¹⁶³⁾ 증가분 등 6억 1,300만원과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송출 국가 언어로 제작된 안전보건교육 미디어를 개발하는 비용 17억 4,900만원을 증액할 계획이라고 있다고 설명함.

최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로 인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

16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49호, 2024. 7. 30., 일부개정, 2024년 8월 5일 시행

163)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외국인 고용 사업주 대상의 고용관리교육과정에 안전보건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주교육(1H)과, 외국인 고용 사업장, 외국인 밀집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동영상, VR 등 시청각 중심의 알기 쉬운 안전보건교육(2H)을 말함

발생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난 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반영되어 이들의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특화된 산업안전보건교육 미디어를 개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됨. 다만, 해당 사업 중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을 위하여 증액되는 계획액 부분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의 내용이나 추진체계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외국인 취업교육은 「외국인 구직자 명부 작성 - 사용자의 구직자 선택 및 고용허가 - 근로계약 체결 - 외국인 근로자 입국 - 취업교육 - 사업장 인도」라는 외국인 고용허가 제도의 진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필수절차로서 해당 교육 비용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¹⁶⁴⁾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¹⁶⁵⁾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함. 실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제14조¹⁶⁶⁾ 따라 취업교육기관

164)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周知)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취업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과 내용, 그 밖에 외국인 취업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65)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내용 등) ③ 외국인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66) 제7조(교육과정 운영기준 등)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외국인 취업교육의 교과목별 교육내용 및 시간, 강사자격, 학습편성 및 교재 등 각종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의 기준에 따른다.

제14조(취업교육비) ①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취업교육비는 별표 7과 같다.

② 장관은 매 2년마다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취업교육비의 적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은 다음과 같이 소양교과 2과목 및 전공교과 2과목 총 16시간 교육에
 책정된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받아 취업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비에는 강사료, 교재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나 공간
 임차료 등의 운영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외국인 취업교육 교과목별 교육내용 및 과정 시간 기준¹⁶⁷⁾]

과 목	주요 교육내용	교육시간
한국의 직장문화	직장생활, 직장예절 및 기숙사 생활 등	1시간
관계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및 기초생활법률	5시간
고충상담절차 등	고충처리 및 상담절차(기관 안내)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모성보호 교육	3시간
산업안전보건	안전표지, 안전일반 및 작업안전(업종별)	5시간
기초기능	업종별 기초기능	2시간

[외국인 취업교육 교과목별 교육내용 및 과정 시간 기준¹⁶⁸⁾]

업종	취업교육기관	취업교육비
제조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중소기업중앙회, 노사발전재단, 한국생산성본부	234,000원
농업, 축산업	농협	260,000원
어업	수협	258,000원
건설업	대한건설협회	280,000원

167)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3]

168)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7]

둘째, 업종별 기초기능 교육 시간을 줄이면서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이 늘어났을 뿐 전체 교육시간 16시간은 이전과 같고, 농협을 제외한 취업교육기관의 교육은 기존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이 5시간으로 변화가 없을 뿐 아니라 농협이 실시하는 취업교육의 대상인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 비중은 전체에서 10%에도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¹⁶⁹⁾ 현행 책정된 취업교육비에서 추가로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취업교육기관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교육비 대부분이 교육생 숙박비·인건비 등으로 투입됨에 따라 공단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2023년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미 안전보건교육 내내역사업에서 노사발전재단과 중소기업중앙회, 농협이 실시하는 취업교육에 각각 2023년에 1억 2,290만원과 8,210만원, 5,79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음에 반하여 대한건설협회는¹⁷⁰⁾ 이러한 지원 없이 오롯이 취업교육비로 안전보건교육 5시간을 운영하여 해당 의견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오히려 취업교육기관 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지원 여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한바, 기금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사업 실시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169) 2024년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143,530명 중 농축산업은 약 14,030명임

170) 한국생산성본부는 2024년 8월 신규 지정된 취업교육기관임.

[안전보건교육 내내역 사업 내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기관 지원 내역]

취업교육기관	2023		2024.8월	
	교육인원(명)	예산(백만원)	교육인원(명)	예산(백만원)
노사발전재단	8,423	122.9	10,852	158.4
중소기업중앙회	5,628	82.1	5,683	82.9
농협	3,974	57.9	1,633	23.8
수협	-	-	671	9.8

안전보건교육 내내역사업에서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법률이 외국인근로자 사용자에게 부과한 취업교육의 의무를 법령상의 근거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서 일부 지출되도록 한다는 문제가 있고, 취업교육기관이 이미 책정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비에 사업비를 중복 계상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회계의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와도¹⁷¹⁾ 부합되지 않을

171) 제15조(회계의 투명성 유지) 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을 독립회계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분야와 구분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법 제27조의2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취업교육업무와 대행업무의 수입과 지출을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로부터 받는 취업교육비는 취업교육 및 그와 관련된 업무가 아닌 용도에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취업교육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 발생 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의서 및 전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지출 장부에 계정과목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음. 따라서 교육비가 부족하여 취업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다면 우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에¹⁷²⁾ 따라 취업교육비를 조정하는 것이 현행 법률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계획안과 같이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적정 취업교육비에 대한 취업교육기관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관련 부서 간¹⁷³⁾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기금에 의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적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에 의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외 모든 외국인 근로자(92만명)의 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해 각종 지원 프로그램에 산업안전교육을 추가하고, 산업안전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체험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한바,¹⁷⁴⁾

안전보건교육 내역사업에서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을 지원하던 관행에 단순히 지원 취업교육기관만을 확대한 등 사업의 시행 여부를 재

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월별 합계잔액시산표 및 사업연도결산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72) 제14조② 장관은 매 2년마다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취업교육비의 적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173)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본부는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협력관실과의 협의 과정 없이 취업교육기관의 요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내역사업비로 취업교육기관에 지원하였음

174)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모든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 의무적 실시 신속 대피 위한 시설 개선 등에 최대 1억 원 지원”(2024. 8. 13)

검토하고, 취업교육 중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특별히 강화하고자 한다면 명시적으로 산업안전보건 과목의 교육 시간을 늘려 해당 부분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또한, 실제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바로 체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취업 중 강화교육에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특화 교육을 신설하거나 외국인근로자가 밀집한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교육인프라 공간을 마련하는 등 현행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노동위원회]

(1) 노동위원회인건비(일반회계, 7002-104)

<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

‘노동위원회인건비’는 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억 1,600만원(3.9%) 증액된 299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노동위원회인건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A)	집행액 (‘24.7)			
■ 노동위원회인건비	27,545	28,841	17,551	29,957	1,116	3.9

*자료: 고용노동부

< 심판사건 조사관 증원 필요 >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노·사·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합의제 분쟁해결 종합행정기관으로, 1953년 「노동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노동쟁의 조정 업무를 시작으로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차별시정,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고용상 성차별 시정 등으로 업무가 확장되어 왔음.¹⁷⁵⁾

175) 노동위원회의 판정 및 조정·중재 업무가 규정된 노동 관계 법률은 다음의 총 8개 법률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현

노동위원회의 심판 및 조정 등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나, 동 업무를 처리하는데 수반되는 조사 및 심문·판정·조정회의 관리, 조사보고서·판정서·조정안의 작성 및 통보 등의 업무는 노동위원회에 소속된 조사관들의 업무로서 수행되고 있음.

노동위원회는 2024년 현재 총 379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조정 및 심판을 담당하는 조사관은 총 245명이고, 그 중에서도 심판을 담당하는 인원은 196.2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노동위원회 정원 현황]

(2024.3.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중앙	서울	부산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총 정원	379	92	69	23	48	20	20	25	19	16	10	12	11	14
조사관	245	49	52	13	38	14	12	17	11	11	6	7	6	9
심판담당	196.2	40	44	11	31	10	8	13	8	8.8	4.8	5.6	4.8	7.2

* 5개 지노위(인천·울산·강원·충북·전북)는 부서(조정과·심판과)가 별도로 분과 되어 있지 않아 전체 조사관의 80%를 심판사건 조사관으로 산정

** 지노위 전체 사건(조정+심판)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중에서 심판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80% 비중을 차지

***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기준정원)

이와 같은 노동위원회의 조사관 수는 2020년 사건 수 증가를 반영하여 227명에서 246명으로 8.4% 증원 조정된 이후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노동위원회 사건 수는 2018년 15,722건에서 2023년 21,394건으로 36.1%가 증가한바, 특히 전체 사건 중 심판사건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노동위원회 접수사건 수 추이]

(단위: 건)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9.
전체사건	15,722	19,120	18,962	17,583	17,927	21,394	18,571
조정사건	1,182	1,325	1,014	1,257	1,240	1,141	774
심판사건	14,540	17,795	17,948	16,326	16,687	20,253	17,797
중노위	2,218	2,698	2,873	2,704	2,543	2,783	2,477
지노위	12,322	15,097	15,075	13,622	14,144	17,470	15,320

* 제주 제외

**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이와 같은 심판사건 증가는 주로 개별적 고용 관련 분쟁사건의 증가에 기인하는바,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권리의식 증가에 따라 과거 주로 해고 관련이었던 분쟁의 원인이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차별 등 다양해지고 그 내용도 복잡해진 것에 따른 것임.

이와 같이 심판건수 접수의 증가에 따라 심판업무를 수행하는 조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바 매년 조사관 1인당 사건 접수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중앙 및 각 지방노동위원회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서울·경기·충남·전남·경남·인천 등의 조사관 1인당 심판 접수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경기·전남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2023년 조사관 1인당 심판 접수건수가 150건을 상회하는 등 조사관 업무에 부담이 높은 상황임.

[심판사건 조사관 1인당 접수 현황]

(단위: 건, 명)

구분	접수사건수			조사관 정원			1인당 접수건수		
	'21년	'22년	'23년	'21년	'22년	'23년	'21년	'22년	'23년
중앙	2,704	2,543	2,783	41	41	40	66.0	62.0	69.6
서울	3,388	3,589	4,404	46	46	44	73.7	78.0	100.1
부산	865	736	902	11	11	11	78.6	66.9	82.0
경기	3,387	3,720	4,837	31	31	31	109.3	120.0	156.0
충남	991	1,119	1,393	10	10	10	99.1	111.9	139.3
전남	738	891	1,246	8	8	8	92.3	111.4	155.8
경북	1,005	954	1,156	13	13	13	77.3	73.4	88.9
경남	647	648	821	8	8	8	80.9	81.0	102.6
인천	887	883	1,098	8.8	8.8	8.8	100.8	100.3	124.8
울산	302	321	330	4.8	4.8	4.8	62.9	66.9	68.8
강원	374	336	390	5.6	5.6	5.6	66.8	60.0	69.6
충북	508	499	463	4.8	4.8	4.8	105.8	104.0	96.5
전북	530	448	430	7.2	7.2	7.2	73.6	62.2	59.7
합계	16,326	16,687	20,253	199.2	199.2	196.2	82.0	83.8	103.2

*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조사관의 업무량 증가는 사건 1건에 투입되는 조사관의 업무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이는 사건에 대한 조사업무의 부실로 이어져 노동위원회 판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저하되고 이로 인하여 노동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짐에 따라 사회갈등 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을 업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충분히 확보하되, 화해회의 확대 운용, 전자송달시스템 구축 등 노동위원회 업무 효율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노동위원회 조사업무의 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노동위원회 전문성강화(일반회계, 7039-309)

<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

‘노동위원회 전문성강화’(2005년~, 직접)는 노동위원회 위원과 조사관의 전문성 및 분쟁조정 기능 강화 등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고, 조정·심판·차별시정 등 부문별위원회의 차질 없는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900만원(0.5%) 증액한 88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노동위원회 전문성강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A)	집행액 (‘24.7)			
■ 노동위원회 전문성강화	8,206	8,849	4,875	8,898	49	0.5
· 위원조사관 역량강화	291	675	279	398	△277	△41.0
· 부문별위원회운영	6,808	6,987	3,825	7,013	26	0.4
· 체계적인 노사분쟁 조정기능 지원	295	485	162	785	300	61.9
· 송무수행·이행강제금	700	700	610	700	0	0.0

* 자료: 고용노동부

〈 ADR 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교육생 자부담 확대 필요 〉

동 세부사업 중 ‘체계적인 노사분쟁 조정 지원’ 내역사업은 노사분쟁에 대한 조정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와 조정위원 사례비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 7억 8,500만원 중 5억원은 내내역사업인 ‘ADR 전문가 육성’ 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었음.

‘ADR(대안적 분쟁 해결,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란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하는 모든 방식을 말하며, 화해, 조정, 중재 등의 방식을 포함함.

고용노동부는 2024년 ADR 전문가 육성 사업을 신규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기초과정과 기초과정 수료자 중 선발된 자에 대하여 3일간의 집체교육으로 심화과정을 각각 수행한 바, 10월 25일 기준 2,537명의 인원이 기초과정을 수료하였고, 153명의 인원이 심화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4년 ADR 교육 과정 추진 현황(10.25. 기준)]

구 분	교육대상	교육방법	교육시간	참여인원	수료자
기초과정	전 국민	온라인	8시간	4,739명	2,537명
심화과정	기초과정 수료자	집체	3일	210명	153명

* 주: 심화과정의 경우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48명 교육 예정임.

**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한편,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2025년 예산을 2024년 대비 2배 증액한 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예산상 한계로 기초과정 수료

자 중 일부에게만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바, 심화과정에 대한 높은 경쟁률¹⁷⁶⁾을 반영하고, 2024년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의 2개 과정만을 운영하던 것을 2025년 고급과정과 마이스터과정의 추가 심화 과정을 실시할 계획으로 인한 것으로 밝히고 있음.

[2025년 ADR 교육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구 분	계획인원	교과목 구성(예시)	구성	소요예산
기초교육 (레벨Ⅰ)	-	▲협상의 기초 ▲화해, 조정, 중재 ▲의사소통의 기초 ▲노동법 기초	이론 (온라인)	3,800만원
심화교육 (레벨Ⅱ)	500명	▲고용갈등의 의사소통 ▲고용갈등과 협상 ▲고용분쟁과 화해의 활용 ▲직장인 고충해결과 의사소통 ▲단체교섭의 성공원리 ▲노동분쟁 조정과 중재 ▲개별적 노동법 ▲집단적 노동법	이론 및 실습 (집체)	1억 4,700만원
고급과정 (레벨Ⅲ)	100명	▲의사소통·협상·갈등관리·단체교섭·조정·중재· 상담심리·대화기법·노동법 심화 및 실습 ▲노동분쟁 해결 사례 실습, 응용 및 현장실습	이론 및 실습 (집체)	2억 5,800만원
마이스터 (레벨Ⅳ)	10명	▲연구, 컨설팅 등 지도자 역량 개발 ▲연구발표, 해외연수를 통한 강의	이론·실습 및 분쟁해결 실적	500만원

* 주: 사업예산 5억원 중 5,200만원은 전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인건비 예산임.

**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을 통해 파업, 해고, 차별, 괴롭힘 등 노동분쟁 영역 모두를 협상·조정 등으로 해결할 능력을 갖춘 ADR 전문가 양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다만, 동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176) 1차~4차 과정 모집 경쟁률 8.7:1(102명 모집 892명 지원), 5차~8차과정 모집 경쟁률 7:1(108명 모집 752명 지원), 9차~10차 과정 모집 경쟁률 8.9:1(48명 모집 429명 지원)

첫째, 현재 공공·민간 분야의 ADR 전문가의 활동과 관련한 법적 근거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변호사법」에 따라 민간 ADR 전문가의 활동 범위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노동위원회는 판정·결정 등 심판사건을 위주로 업무를 수행¹⁷⁷⁾하고 있는바 이는 노동 관계법령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집단적 노동분쟁과 관련한 법률에만 조정·중재 등과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며,¹⁷⁸⁾ 이외의 「근로기준법」 등 여러 노동 관계 법령은 조정과 같은 자발적 분쟁해결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바, 노동 관련 갈등과 관련한 공적 해결은 대부분 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 구조임.

또한 민간 분야의 조정과 관련한 규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사적 조정·중재에 관한 규정¹⁷⁹⁾ 외에는 찾기 어려운데, 동

177) 2023년 총 처리건수 18,946건 중 심판건수가 16,984건으로 89.6%를 차지함

178)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調停)·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노동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

17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사적 조정·중재) ① 제2절 및 제3절의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른 조정 또는 중재방법(이하 이 조에서 “사적조정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노동관계 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규정은 사적 조정·중재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과 조정·중재의 법적 효력을 명시하고 있음.

다만, 이와 같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분야에 대해서도 ADR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공공·민간 ADR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나, 동 전문가의 자격과 능력에 대한 기준과 조정·중재 등의 효력이 법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사업장 내 노사당사자¹⁸⁰⁾ 외의 외부 ADR 전문가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변호사법」 제109조¹⁸¹⁾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기타 이익을 받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중재·화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1.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제45조제2항 및 제54조의 규정. 이 경우 조정 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2.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제63조의 규정. 이 경우 쟁의행위의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 사적조정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위원회법」 제8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이 경우 사적조정 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180) 사업장 노사관계자가 ADR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노동분쟁을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181)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변호사가 아닌 일반 국민의 경우 동 교육을 수료하고 ADR 관련 전문 지식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사적 조정·중재¹⁸²⁾ 외에는 비영리활동만을 수행할 수 있어 교육 수료생의 활동 범위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할 것임.

즉, ADR 전문가의 자격기준과 조정·중재 등의 법적 효력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부 ADR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현행 법률 체계상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ADR 전문가의 영리활동이 제한되어 있어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ADR 전문가를 양성하더라도 활동 분야가 제한적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2024년 대비 예산을 2배 증액하고 교육 규모를 확대할 계획인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ADR 전문가의 자격 및 ADR 전문가의 활동 범위, 비용 수수 등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¹⁸³⁾

둘째, 고용노동부는 교육비의 대부분을 국가 예산을 통해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동 교육은 교육생의 직업활동과 관련한 교육으로, 교육생이 ADR 전문가 교육을 통해 분쟁해결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그 편익은 교육 수료생 개인에게 귀속되는 점을

18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사적 조정·중재) ⑤ 사적조정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위원회법」 제8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이 경우 사적조정 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183) 현재 중앙노동위원회는 ADR 관련 근거법 제정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있음.

감안하여 교육생의 자부담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2024년 동 교육사업을 전액 국비로 부담하여 추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ADR 저변 확대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숙박비·식비·다과비 등 실비 일부에 대해 교육생이 부담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동 교육의 목적은 ADR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궁극적으로 노동 관련 분쟁의 현장에서 ADR 전문가의 활동을 통해 조정·화해 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인바 교육 수료생의 직업영역을 확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임.

즉, 동 교육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단순한 소양교육이 아닌 업무와 관련한 교육으로, 특히 민간 전문가의 경우 교육 수료를 통한 영리활동영역이 확대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일정 수준의 교육비용을 교육생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ADR 관련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타 기관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11만원, 분쟁조정 담당자 및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55만원의 교육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행정연구원의 경우 교육과정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향후 ADR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

어 이를 고려하여 교육생 부담 수준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ADR 관련 타 기관 교육과정 현황]

기관명	과정명	교육대상자	교육방식	교육비
대한상사 중재원	ADR기본과정	ADR에 관심있는 자	온라인 (4과목)	11만원 (자부담 100%)
	조정전문가 심화과정	분쟁조정 관련 담당자 및 변호사 등	집체 (2일)	55만원 (자부담 100%)
한국행정 연구원	갈등연구교육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집체 (기본과정 2일 심화과정 4일)	무료

*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및 기관별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